
碩士學位論文

製造物責任의 立法化 方向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of Products Liability



金 相 明

1997年 12月

碩士學位 請求論文

製造物責任의 立法化 方向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of Products Liability

指導教授 韓 三 寅


金 相 明

위 論文을 法學 碩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金相明의 法學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金亨澤
委員 金亨澤
委員 韓三寅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7年 12月

**A Study on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of Products Liability**

Kim, Sang-Myung

(Supervised by professor Han, Sam-I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LAW**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7. 12.

目 次

第 1 章 序 論	1
第 1 節 問題提起 및 研究目的	1
第 2 節 研究方法 및 研究範圍	6
第 2 章 製造物責任의 法理	9
第 1 節 製造物責任의 概念	9
第 2 節 製造物責任의 法理構成	10
1. 契約當事者關係(privy of contract)	11
2. 過失責任(negligence) · 保證責任(warranty)	12
3. 不法行爲法上의 嚴格責任(strict liability in tort)	14
第 3 節 우리나라 判例上의 製造物責任法理	15
第 4 節 우리나라 製造物責任의 法理構成과 그 限界	21
1. 契約責任에 의한 法理構成	22
2. 不法行爲責任에 의한 法理構成	25
3. 法理構成의 限界에 대한 檢討	26
第 3 章 製造物責任에 관한 各國의 立法動向	28
第 1 節 美國의 製造物責任制度	29
1. 製造物責任의 法理構成	29
2. 美國의 製造物責任法의 危機	32
3. 聯邦製造物責任立法의 經過와 爭點	36

4. 諸理論의 檢討	39
第 2 節 獨逸의 製造物責任制度	40
1. 製造物責任의 法理構成	40
2. 製造者의 責任	51
3. 損 害 賠 償	57
4. 使用者 · 供給者 · 第3者	57
5. 諸理論의 檢討	60
第 3 節 日本의 製造物責任制度	61
1. 製造物責任立法의 經過	61
2. 製造物責任法의 內容	64
3. 諸理論의 檢討	69
第 4 節 기타 國家의 立法動向	70
1. EU 會員國의 立法動向	70
2. EFTA會員國의 立法動向	82
第 4 章 우리나라 製造物責任의 立法化 方向	87
第 1 節 製造物責任 立法化의 當爲性	87
1. 一般의인 當爲性	87
2. 國際的 調和의 必要性 增加	91
3. 製造物責任法制化의 理論의 根據 · 政策의 背景	92
第 2 節 立法 性格 및 形式	96
1. 立法性格	96
2. 立法形式	97
第 3 節 製造物責任의 立法化方向과 課題	99
1. 製造物의 缺陷	99

2. 製造物の 適用範圍	106
3. 責任主體 · 複數의 責任主體의 關係	114
4. 損害賠償의 對象과 範圍	120
5. 開發危險의 抗辯	125
6. 責任制限	129
7. 責任期間	131
8. 過失相計	133
9. 履行確保	135
10. 訴訟節次上の 立證責任	135
第 5 章 結 論	147
參 考 文 獻	150



SUMMARY

A Study on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of Products Liability

Kim, Sang-Myung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a society characterized by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the unexpected hazards arising to users and consumers of defective products have been increasing daily.

In case users of products or third ones were damaged on their bodies or their properties by defective products, they were compensated from manufacturers or sellers of the defective products on the basis of liability in contract or tort.

In recent days, the casualty and property damages experienced by the consumers from defective products have been extended to a wide - range of products. The problem has become rather serious and it has amounted to a problem of society as a whole.

We refer to "Product Liability" as the legal liability of producers and sellers of defective products to the consumers who have been the victim of

the injuries and damages caused by these defective products.

With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economy, goods are freely exchanged between countries. While domestic consumers cannot call on the liability of foreign producers for their defective products, domestic producers are often called on to compensate foreign consumers for defective products and sometimes without due cause. This is not an equitable situation for domestic consumers.

However under the modern society system with complicated distribution, because producers have highly developed technology and monopolized information victims of the injuries and damages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have much difficulty in receiving compensation from responsible producers because of absence of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producers or failure in proof of the producers fault. To relieve this difficulty of injured persons product liability law has been newly devised.

Now injured persons can claim that producers should give them the compensation for their damages without the need to prove a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producers and their faults about the defects of products when products don't provide the safety which a person is entitled to expect, that is, products are defective.

First, this study deals with the question whether we are to adopt product liability rule or not. Subsequently, this study deals with the question whether we are to legislate product liability law or not. On these questions, this study proposes that we legislate product liability law to overcome the limit of our Civil Law in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and harmonize with foreign countries which have already legislated product liability law.

And this study deals with the individual views on product liability law, including its type, its direction, liability rule, products, producers, defects,

damages, united responsibility, defences, fault offset, exclusion clauses, limitation period and burden of proof.

Here this study proposes that we legislate product liability law for more injured persons to claim their compensations for more products more easily. Because the injured persons don't have equal power against the producers about the product liability this should be kept in mind, From this position, the study proposes that strict liability be adopted, product liability be applied to all movables and real estate except land((ex) house, building,···), producers cover manufacturers by putting their names on products, importers and sellers of products, plural producers be subjected to united responsibility, "development risk" defence be dismissed, exclusion clauses on damages on body and private property be invalid and burden of proof be lessened.

And this study also proposes that product liability law be a special one on tort of civil law as well as one of the important laws for consumers protection. From this position, this study proposes that traders as well as consumers be protected by product liability law, product liability law be applied to damages on business property, fault offset of Civil Law be adopted as it is, and the time period of three years and the overall time limit of ten years be imposed.

In chapter 2, I have reviewed the theory of product liability in the U. S., Britain, Germany, EU, Japan and Korea using the comparative method.

In chapter 3, I have reviewed a trend of legisl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in the U.S, Germany, EU, Japan, etc.

In chapter 4, which is the main part of this thesis, I have reviewed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for product liability in the U. S., and in Europe as Japan and Korea.

This study is as follows :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liability rule without the establishment of fault of the producer instead of the current liability rule based on the "defects" that create a hazard and which may produce a hazard. It should be all that is necessary on the part of the consumer, that is, strict liability

Liability should be applied to all movable objects but only immovable objects are excluded. It should cover all primary agricultural products with the exception of those produced on a small scale by the individual farmer.

The "Producer" means the manufacturer of a finished product, the producer of any raw material, and the manufacturer of a component part and anyone who by putting his name, trademark or other distinguishing feature on the product, presents himself as a producer. The "Producer" also covers any person who imports goods from abroad.

A product is deemed to be defective when it does not provide the safety which a user is entitled to expect, taking all circumstances into account, including the presentation of the product or the use which it is reasonably expected to be put into.

"Damages" mean the damages which cause death or personal injury and damage to or destruction of property : The punitive damages that are recognized in the U. S. are not included.

The burden of proof is shifted from the plaintiff to the defendant by accepting the presumption of defect and the causal relationship by the provision in the law in order to alleviate the burden on the plaintiff.

The producer may be liable for the product, even if at the time of its introduction, under the then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the defect was not discovered. The plea of "development risk" by the producer is dismissed in favor of the protection of the consumer.

This study was done as a proposal for product liability legislation and it is

imperative that such legislation is enacted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ensure the right of consumers to receive an equitable relief on injuries suffered from defective products and to be justly compensated as well as to ensure the safety of products.

As a conclusion of this study, I have proposed the enactment of a new law on product liability ensure the efficient relief of injuries suffered by consumers.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for product liability to provide efficient relief for injuries of consumers from defective products and to be adapted to the changing conditions from the development of trade with other countries.



第 1 章 序 論

第 1 節 問題提起 및 研究目的

製造物責任(Product Liability; Produkthaftung)¹⁾이란 상품의 생산·유통·판매·소비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그 물건의 결함에 의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 등에 생긴 손해를 최종소비자나 제3자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²⁾ 그런데 현대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상품의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시대를 맞아 우리 생활 주변에는 가전제품·자동차·약·의류·식료품·화장품·장난감 등 다종다양한 제품이 범람하고 있는 사회구조에서 우리들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제품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산업의 발전과 과학기술이 고도화되고 유통과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최신의 첨단과학기술을 사용한 보다 편리한 제품이 계속 시장에 출현되게 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제품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제조자 등에게 지나치게 편재되어 있어 소비자로서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가 제품의 안전성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조차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쉽고, 비록 알았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법이론이나 소송제도 자체로서는 소비자가 구제받기 매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품의 결함에 의한 피해자의 법적 구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製造

-
- 1) Product Liability; Produkthaftung이라는 해석에 있어서, '製造品責任', '製造者責任', '生産物責任', '製造物責任' 등으로 불리고 있으나 대다수 학자들은 '製造物責任'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製造物責任'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 2) 小林秀之, 「製造物責任法」, 新世社, 1995, p. 1 ; 이치영, "제조물책임입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p. 13-14; 植木哲, 「製造物責任」 "消費者保護의 法律問題", 勁草書房, 1994, P. 346

物責任의 문제이다.

오늘날 상품거래가 전세계적인 규모로 행해지게 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필두로 製造物責任制度가 각국에서 정비되어 가고 있다. 일찍이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판례에 의해 製造者의 過失을 요건으로 하던 과실책임 대신에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無過失責任³⁾의 법원칙이 확립된 이래 製造物責任訴訟의 급증과 배상액의 고액화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과 인수를 거부하거나, 일부 품목의 생산중지 등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중반에 두 차례의 製造物責任危險(보험위기)을 겪으면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도한 운용에 대해 제동을 걸려는 미연방제조물책임법의 제정 및 사법제도의 개혁을 포함하는 연방차원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기본원리를 변경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⁴⁾

한편, 미국법률협회(ALI: American Law Institute) 에서도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Second) of Torts)의 제조물책임조항(제402 A조)⁵⁾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EC(European Communities, 유럽공동체)에서도 EC의 시장통합을 목표로 적절한 소비자보호의 확립과 경쟁요건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한 EC각료이사회 지령⁶⁾이 1985년 7월에 채택됨에 따라 1997년 8월 현재 프랑스와 스페인의 경

- 3) 이를 영미법상의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이라고 한다. 한봉희, 「제조물책임법론」, 대왕사, 1997, pp. 51-64.
- 4) W. Page Keaton, David G. Owen, John E. Montgomery, Michael D. Green, Case and Statutory Supplement to Products Liability and Safety(Case and Materials, 2nd), The Foundation Press, Inc. 1993; 미국에서의 연방제조물책임법의 제출은 포드대통령 제지시 「제조물책임에 관한 특별조사 위원회(Federal Interagency Task Force on Product Liability), 레이건 대통령시 「불법행위정책작업부회(The Tort Policy Working Group), 부시대통령시 「연방민사사법제도개혁작업부회(Federal Civil Justice Reform Working Group)」 등의 노력이 있었다.
- 5) 이용자 또는 소비자의 유형적 손해에 대한 제품판매자의 특별책임(Special Liability of Seller of Physical Harm to User or Consumer): 제402조 A는 제조물 이용자·소비자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결함을 갖는 제조물을 판매한 자는 제조물의 판매를 업으로 하거나, 제조물이 판매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변경을 하지 않고, 이용자·소비자의 신체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제조물을 판매한 자가 그 제조물을 제조·판매할 때에 모든 주의를 다 기울이고 있거나, 또는 이용자·소비자가 매도인으로부터 그 제품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매도인과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었던 경우라도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규정이다.
- 6) 정식명칭은 「결합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가맹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규정의 조정에 관한

우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스위스의 경우는 1992년 제정하였으나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⁷⁾ 그 외 모든 가맹국에서 결함제품에 의한 無過失責任을 인정하는 製造物責任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의 가맹국 모두와 헝가리에서도 입법이 완료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 북구제국(노르웨이, 핀란드)은 보험강제에 의한 이행확보 혹은 의약품사고에 대해서는 의약품보험에 의해 구제를 도모하는 등 피해자 구제의 면에서는 EC제국보다 전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⁸⁾.

그 외에도 브라질·러시아·오스트레일리아·중화인민공화국 등에서도 입법이 종료되었으며 뉴질랜드에서는 1972년 사고보상법(Accident Compensation Act)을 제정하여 제품사고로 인한 인신사고에 한하여 사회보장에 의해 포괄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입법이 이루어져 (1994년 7월 1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95년 7월 1일 부터 시행⁹⁾을 보게 되었다. 無過失責任을 원칙으로 하는 製造物責任法의 제정은 세계적인 추세로 되어 우리나라로서도 입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¹⁰⁾.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民事責任理論에 의해 契約責任과 不法行爲責任을 묻는 것이 가능한 했지만 실제로는 EC각료이사회 지령」(Council Directive of 25 July 1985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Member States concerning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이다.

7)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필요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1996. 8. 31, 제96-15(통권 제43호).

8) 이치영, 전개논문, p. 4.

9)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의 입법경위와 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加藤雅信, 「製造物責任法總覽」, 社團法人 商社法務研究會, pp. 3-58. 참조.

일본에서는 1994년 4월 12일 제129국회에 제조물책임법안이 제출되어 동년 6월 16일 중의원에서 동월 22일 참의원에서 각각 원안대로 전원일치로 가결되어 성립되었다. 제조물책임법은 동년 7월 1일 공포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0)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보호원을 선두로 하여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의 입법방향”, 정책세미나자료 제94-01, 1994.

거의 불법행위에 의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¹¹⁾. 그러한 경우에도 실제로 소송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그것은 결합제품으로 인한 사고는 한번 발생하고 난 다음에 쉽게 잊혀지는 단발적인 사고이거나 소액인 경우가 많고 설사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권리의식이나 안전의식 또는 공동체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당사자 이외의 타인의 관심을 끌기가 어려워 자칫 사후의 대책 마련에 소홀해지기 쉬운 항간의 사정이나 피해자들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그냥 넘어가거나, 시간·비용의 제약 혹은 전문성의 결여 등 때문에 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 받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참고 지내는 소비자가 대다수인 경우와, 기타 사회적 신용의 실추를 두려워한 제조자 등이 적극적인 자세에 의해 대충 타협해 버리고 마는 소비자들이 많았던 사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사회·경제적인 사회의 여건도 많이 달라져가고 있다. 물자부족의 시대를 벗어나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기인한 최근 우리에게 크게 문제점을 시사한 사건만도 헬리콥터 공중폭발사고¹²⁾, 군용기추락사고¹³⁾, 녹즙기 투입구에 어린아이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¹⁴⁾, 라면우지사건, 수혈에 의한 에이즈 바이러스나 C형간염감염사고, 뇌염백신 예방접종사고¹⁵⁾, 녹즙기에 의한 착즙시 증금속이 나오는데 그것이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¹⁶⁾ 등이다. 그리고 실리콘 젤을 사용한 젓가슴 확대수술의 후유증 사고, 고엽제사고¹⁷⁾, 이러한 사건·사고는 국제적으로 문제

-
- 11) 우리 나라 判例에서도 過失責任의 수정을 가하고 있다. 대법원, 1992. 11. 24, 92다 18139.
 - 12) 1994년도 국정감사 시에 공군참모총장이 탑승한 헬리콥터가 공중 폭발하는 사건에 대하여 撰 縦士의 운전실수라고 당국은 발표했지만 일부의원은 이에 의문(항공기의 결합)을 제기하였다.
 - 13) 1997. 9. 18. 충남 서산 상공에서 추락한 KF16 전투기의 사고원인은 미국 엔진제작업체인 프랫 앤드 휘트니사가 납품한 「연료도관」의 파열로 잠정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東亞日報, 1997. 10. 15, PP. 1-2 참조
 - 14) 中央日報, 1994年 2月 15日 .
 - 15) 韓國日報, 1970年 7月 9日; MBC 저녁 9시 뉴스, 1994年 6月 1日
 - 16) 世界日報, 1994. 8. 9.
 - 17) 이에 관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1997. 11. 18,에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법적용 대상자는 보건처장관에게 직접 등록신

가 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사례 중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사례를 분석한 자료¹⁸⁾에 의하면 가정용전기제품, 자동차, 보일러, 식품, 의약품, 화장품, 운동기구, 가구, 농기구, 완구, 가스기기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제품에 대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와 같은 경우에 대부분 소비자들은 제조자를 상대로 하여 책임을 묻고 있고 製造者는 過失有無에 별로 개입치 않고 제품에 결함이 있으면 고객관리 차원에서 책임에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의 변화에 대응한 소비자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와 국제화의 진전에 대응한 제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製造物責任制度에 관한 立法化와 그에 대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본 상황하에 대처하기 위해 그 동안의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기준으로 삼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규정¹⁹⁾을 제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있는데, 일반원칙 제11조 5항에서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제품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나 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피해에 대한 損害賠償責任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⁰⁾

그러나 이러한 일반원칙은 法律이 아닌 告示의 형식으로 법률의 규정이 없거나 또는 법률의 규정과 다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법이론상 곤란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²¹⁾.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문제는 소비자이익의 옹호·증진을 위한 소비자시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행정쇄신위원회²²⁾에서는 제품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無過失責任原則

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동아일보, 1997. 11. 19.

18) 이상정·박인섭, “제조물책임의 입법방향”, 한국소비자보호원 7주년 개원기념 정책세미나자료, 1994, pp. 26-47.

19) 消費者保護法 第12條 第2項 및 同法施行令 第10條 參照.

20) 이 규정은 행정쇄신위원회의 현금환불제 도입 건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1994년 7월 16일 제3차 개정예 의해 신설된 조항이다.

21) 이치영, 전계논문, , pp. 5-7

22) 1993. 12. 행정쇄신위원회는 소비자보호제도 개선방안을 기획.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실무위원

에 입각한 製造物責任法을 제정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하여 우리 나라에서 공청회와 여론을 통해 곧 입법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製造物責任의 입법화가 이루어 질 것을 전제로 해서, 먼저 製造物責任의 세계각국 입법동향을 통한 우리의 立法化 方向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논의된 미국을 비롯한 EC가맹국 및 일본의 입법자료를 모아 정리·검토 비교하고, 아울러 製造物責任의 입법시에 다루어야 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개인적 견해를 밝혀 그 입법작용 및 학술연구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消費者保護와 우리기업의 國際競爭力을 향상시키는데 그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다.

第 2 節 研究方法 및 研究範圍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製造物責任法을 제정할 경우에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의 입법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것이 缺陷製造物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보다 더 유리하고 동시에 우리기업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²³⁾. 그리고 제품의 품질의 개선·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가치가 있는 우리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회에서 계속 검토하다가, 1994. 9. 23. 제1차 심의에서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韓國經濟新聞, 1994. 9. 24. 행정쇄신위원회 안전 150. 100, 행정쇄신기획연구과제추진계획안-소비자보호제도 개선방안), 그러나 1994. 11. 11. 최종심의에서 위원간 다소 의견의 대립으로 인하여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입법을 건의하기로 확정되었다. 다만, 시행시기는 추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도입될 제조물책임제도에서는 농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공산품은 물론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과 같은 대량공급주택 등도 결함으로 인한 것만 입증되면 제조자의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도록 했다(東亞日報,1994.11.12).

- 23) 현재의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제조물책임의 입법화의 필요성에 주안을 두고있어 그 적용대상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일면만을 크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나, 미국에서 처럼 제조물책임의 위기론(특히 보험확보방안)이 대두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전의 준비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정확한 실태의 파악이 중요하나 안전의식이 나 제도가 너무나도 미흡하여 제대로 된 통계자료 조차 존재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므로, 현 단계에서는 소비자피해의 실상이나 소비자피해의 방지·구제에 대한 대응 등 모든 현상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製造物責任制度의 도입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원래 제조물책임은 기본적으로는 제품사고에 의한 민사책임의 기본원칙에 관한 문제이지만, 사전·사후의 방지대책 그리고 구제대책 등이 제품사고 대책 전반과 관련한 주변의 여러가지 제도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문제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제조물책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인식 위에 우선 제조물책임의 입법화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모아 정리하여 제조물책임의 입법을 위한 작업에 기초자료로서 기여하고 제조물책임의 입법에서 다루어져야 할 개별적·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그 입법작업에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범위를 정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으로서 현대의 製造物責任이 문제되는 일반적 사회현상과 세계적인 입법의 동향 및 제조물책임 문제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실태를 개관한 다음, 본 논문의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최근에 학계에서 논의 되어지고 있는 製造物責任의 法理를 탐구하여 立法化의 方向을 제시하는 기초이론의 정립을 위한 일반적으로 논하여지는 법이론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각종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피해 구제의 判例 法理를 검토하여 이론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현재의 법리구성으로 缺陷製造物로 인한 피해의 구제가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고 製造物責任法理의 方向을 찾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최근에 새로운 責任法理에 입각한 製造物責任法의 제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그 전제로 되는 배경으로서 먼저 세계각국의 製造物責任制度 중 미국, 독일, 일본등의 製造物責任制度의 동향과 그 법리를 통한 製造物責任法의 비교법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특히 미국(엄격책임론과 보험위기론)과 EU 중 독일을 중심으로 보다 심도있게 그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하며, 또한 우리와 인접한 일본의 製造物責任法의 제정에 따른 쟁점 등을 검토하여 비교법적 고찰을 한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으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여, 製造物責任의 立法化 필요성에 따른 이론적·정책적 배경을 검토하고, 또한 세계각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검토하여 製造物責任의 法制化 方向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의 핵심으로 여기에서는 입법의 형식과 성격문제, 책임의 법리, 제조물의 결함문제, 제조물의 범위, 책임주체에 관련된 문제, 손해범위의 문제, 연대책임의 문제, 제조업자 등의 면책사유, 책임감경사유 등 개발항변사유, 집단소송의 문제, 책임제한특약, 책임기간, 이행확보의 문제, 입증책임의 문제 순으로 외국의 입법예와 일본의 입법예를 검토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다.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지금까지 연구, 검토해 본 제문제점을 요약·정리하고 본 논문을 통한 製造物責任 立法化의 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 2 章 製造物責任의 法理

第 1 節 製造物責任의 概念

제품의 안전성을 결한 제품이 시장에 출하되어 판매된 경우 이를 구입한 사람들은 그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게 되기 쉽다. 이러한 피해자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구제하기 위해 과실이 없이도 결함만에 의해 제조자나 유통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책임법리에 의한 製造物責任法을 제정하자는 기운이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製造物責任이라는 용어는 자주 등장하고 있다. 과거 수공업 위주로 제품이 생산되고 있었던 초기자본주의시대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못한 개념이었던 것이 기술혁신과 자본축적의 진전에 의해 상품이 대량생산·대량소비됨에 따라 생활이 편리해지고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온 반면, 결함에 의한 제품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되어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다. 공업·산업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처음 생겨난 개념으로서 미국에서는 「Product Liability」라고 불리우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보급되고 있는 개념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소비자는 대량생산·판매되는 공업제품을 일상생활의 각방면에서 사용·소비하고 있으며, 이때 소비자의 일반생활에서의 안전성은 소비자에게도 의존하지만, 제품을 설계·제조하는 제조자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성을 결한 제품이 시장에 나온 경우, 소비자로서는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받기 쉬운 입장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제조자 등과 소비자 사이의 관계가 인식되어 소비자피해의 구제를 위해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안전성을 결한 제조물로부터 생긴 손해의 배상책임을 제조자 등에게 부담시켜야 된다고 하는 製造物責任法理論이 등장했다.²⁴⁾

24) 한봉희, “제조물책임의 접근법리-미국법을 중심으로-”, 고시연구, 1992.7. p14 ; 과학기술의 발달과 유통과정의 복잡화에 따라 상품생산시스템과 시장구조가 변화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대등한 관계가 상실되고 실질적으로 약한 입장에 놓여있는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넓은 의미에서의 제조물책임에는 당사자 대등의 입장을 전제로 하는 過失責任의 原則²⁵⁾이 적용되고 있었지만, 그 후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여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損害賠償責任을 제조자 등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²⁶⁾가 많은 나라에 도입되어, 최근에는 거의 보편적으로 후자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製造物責任이란 제품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제품을 제조한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어떠한 경우에 얼마만큼의 손해에 관해 청구할 수 있는가를 취급하는 법이론이다.

第 2 節 製造物責任의 法理構成

제조물책임은 제품사고의 분야에서 전통적인 법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성립·발전해온 것으로서 관념적·추상적인 법리가 아니라 실천적인 법리이다. 製造物責任의 내용은 실제의 사건에 있어서 전통적인 법리에 의한 해결이 부정적·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태를 회피하기 위해 법적인 갈등을 통해 생성·발전해 온 것이다. 따라서 製造物責任은 역사적·실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제조물책임은 미국에서 생겨난 법리로서 주로 미국의 판례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요청이 생김에 따라 종래 과실책임의 기초를 이루고 있던 「매수인이 주의하라(caveat emptor)」는 원칙이 「매도인이 주의하라(제5조 1항)」는 원칙으로 전환된 것을 말한다.

- 25)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던 경우에 제조업자가 그것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민법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의 특성에 착안하여 일종의 가해유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 26) 결함있는 제조물의 경우에 미국의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엄격책임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책임유형으로서의 엄격책임을 과하려고 하는 것이다.

1 . 契約當事者關係(privy of contract)

영미법에 있어서는 결함제품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을 청구하는 경우, 그 요건으로서 가해자의 注意義務違反이 필요한데, 그 注意義務違反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사이에 契約當事者關係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로 되었다²⁷⁾. 최초의 선례로서 영국의 판례에 등장한 사안은 우편마차의 사고로서, 우편마차의 제조업자가 우체국에 마차를 제공하여, 어느 날 그 마차를 마부가 운전하고 있었던 바, 마차의 결함에 의해 마부가 도로에 내동댕이쳐져 부상당했기 때문에 마부가 마차의 제조업자(마부와 제조업자와의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관계가 없다)를 피고로 하여 過失責任(不法行爲法上の negligence)에 기해 損害賠償을 청구한 것이다. 판결은 注意義務違反에 기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관계의 당사자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 판결은 본 건에서 구제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의 책임을 무한정 인정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여 직접의 계약관계있는 상대에게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契約當事者關係의 法理가 형성된 이유는, 당시의 법원이 발전해 가고 있는 산업의 육성을 중요시하여, 기업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배상을 곤란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후 과실이라고 하는 불법행위가 독립의 불법행위유형으로서 성립한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이었다.

다만 이 경우에 契約當事者關係의 法理는 不法行爲責任 확대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영미법에 있어서는 과실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사이에 契約當事者關係가 필요하여, 피해자의 구제가 계약관계에 있는 범위의 피해자에 한정되어 상당히 좁게 되기 때문에 契約當事者關係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법리의 극복이 과제로 되었다.

契約當事者關係의 法理의 선례로 된 Winterbottom v. Wright 사건은 영국의 판례이다. 그렇지만 契約當事者關係의 法理는 미국의 법원에서도 바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본래적으로 위험한 제품(inherently dangerous) 또는

27) 피해자가 물건의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직접의 계약당사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으로서, 이것 자체 또한 판례법상으로 형성된 법리이다.

급박한 위험(imminent danger)을 수반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직접의 契約當事者關係의 존재를 요하지 않는다는 예외사례가 나타났다²⁸⁾. 이 판결은 과실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當事者間에 契約關係가 존재하는 것이 요건으로서 필요한 것이 원칙이지만, 독물처럼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미치게 하는 물건에 관해서는 그 위험이 최종소비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물건을 판매하는 자는 직접의 구입자 뿐만 아니라 契約當事者關係가 없는 자에 대해서도 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판시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중대한 위험을 미치게 하는 물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2. 過失責任(negligence) · 保證責任(warranty)

결합제품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일반이 구제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제품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미치게 하는 물건인가 아닌가가 문제로 되었다. 이에 관한 판례로서, 자동차를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운전 중인 자가, 차 바퀴가 파손되어 차밖으로 내동댕이쳐져 부상당했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없는 자동차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과실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되었다. 이 판결은 契約當事者關係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법리의 예외를 확대하여, 독물·폭발물 등에 한정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제조되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미치게 하는 것이 확실하게 예견되는 것과 같은 물건에 대해서도 契約當事者關係의 유무를 묻지 않고, 자동차의 제조업자는 注意義務를 부담한다고 판시²⁹⁾한 것이다. 이 판결은 과실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사이의 契約當事者關係의 존재를 요구하는 법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³⁰⁾.

28) 가장 유명한 예는 1852년의 뉴욕주 대법원의 판결로서, 피해자의 남편이 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독물이 잘못 표시되어 약제로서 제조·판매되고 있었다)를 피해자가 복용하여 중대한 부작용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계약당사자관계가 없는 약제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과실책임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약제의 제조판매업자가 계약당사자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부담하는가 어떤가가 문제로 되었다

29) Macpherson v. Buick Motor, 111 N.E. 1050(N.Y.1916)

30) 이진용, “제조물책임의 비교법적 고찰”,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p. 81-86.

이들 판례에 의해 제조업자가 상당히 광범위한 제품의 이용자에 대하여, 契約當事者關係의 유무를 묻지 않고 損害賠償責任을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의 損害賠償責任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의 극복이 문제로 되었다. 불법행위법상의 과실책임의 극복은 無過失責任, 嚴格責任의 채용에 의할 뿐만 아니라, 과실의 추정에 의할 수도 있고, 계약책임의 확대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다³¹⁾

미국에 있어서의 제조물책임의 발전과정에서도, 먼저 과실의 추정이 문제로 되었다. 레스토랑의 종업원이 코카콜라병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병이 파열하여 부상했기 때문에 Coca Cola Bottling(코카콜라를 병속에 넣는 것)에 대하여 과실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판결은 피고가 사고원인으로 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 사고가 피고에게 과실이 없는 때에는 통상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것이 증명된 때에는 事實의 推定則(res ipsa loquitur = The thing speaks for itself)에 의해 과실이 추정된다고 하고, 본 건에 있어서도 이 추정칙이 적용되어, 파열사고의 원인이 병속 가스의 압력이 지나치게 높거나, 병에 결함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그 어느 경우도 피고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판시한 것이다³²⁾. 또한 契約責任(묵시의 보증책임)을 契約關係가 없는 피해자의 구제에 이용할 수 있는가 어떤가가 문제가 된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남편이 제조업자가 제조하고 판매업자가 판매한 자동차를 보증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이 붙여진 계약서에 의해 구입하여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전중, 핸들을 놓쳐 도로표지 등에 충돌하여 부상했기 때문에 제조업자·판매업자에 대하여 保證責任·過失責任에 기한 損害賠償을 청구한 사건이 어떤가, 責任制限特約이 유효한가가 어떤가가 문제로 되었지만 이 판결은, 제조업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자에 의해 제품이 이용되는 상황에서 결함있는 제품이 제조되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미친 때에는 제품의 제조업자는 묵시의 보증책임을 계약관계가 없는 자에 대해서도 부담한다고 하고, 保

31) 결함자동차에 관해 過失責任이 아니라 계약법상의 保證責任을 인정한 판결로서 Baxter v. Ford Motor Co.사건의 판결이 워싱턴주의 법원에서 1932년에 선고되었다. 이는 明示的 保證責任을 말한다.

32) 이 판결의 보충의견으로서, 제품의 제조자는 제품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하여 손상을 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절대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견해가 표명되고 있다.

證責任의 제한특약은 契約當事者間的 힘의 관계가 불균형인 때에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현재는 통일상법전에서 人身損害에 대한 면책사항은 비양심적인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³³⁾.

3. 不法行爲法上の 嚴格責任(strict liability in tort)

이 판결에 의해 契約責任인 默示의 保證責任(엄격책임)이 契約當事者關係가 없는 자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든 것이지만, 保證責任에는 保證違反을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면책되는 등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嚴格責任을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어떤가에 관해서는 다음 판례법의 발전이 필요했었다

이 분야에서 선례로 된 것은 1963년 캘리포니아주 법원판결인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처가 구입한 전동목공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공작업을 하고 있었던 바, 도구에 붙어있던 나무조각이 날아와 얼굴에 부딪혀 부상당했기 때문에, 전동목공도구의 제조업자·판매업자에 대하여 保證責任·過失責任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본 건에서는 보증책임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보증위반의 사실을 통지해 둘 필요가 있었던 바, 통지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보증위반의 통지를 합리적 기간내에 행하지 않으면 제조업자는 損害賠償責任을 부담하지 않는가 어떤가가 문제로 되어, 판결은 의도된 용도로 이용 중에, 의도된 용도의 경우에 위험한 것과 같은 제품의 설계, 제조상의 결함에 의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엄격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보증위반의 통지를 했는가 아닌가는 嚴格責任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嚴格責任을 계약책임의 제약으로부터 해방한 것이다. 이것에 의해 과실의 유무, 契約當事者關係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품의 결함에 의한 법리가 판례법상 탄생한 것이다. 이 판결에서 앞서의 *Escola*사건에서 보증의견을 낸 바 있는 *Traynor* 판사는 제조자가 제품을 시장에 출하하여, 검사되지 않고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내용의 결함에 의해 인신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不法行爲法上の 嚴格責任(strict liability in tort)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³⁴⁾

33) 이진용, “제조물책임의 비교법적 고찰”,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p. 86-88.

34) 이 判決은 製造物 책임분야에서 嚴格責任의 이론을 최초로 도입한 선구적인 判決로서의 意義

미국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선례법의 전개에 의해 製造業者의 嚴格責任이 피해자와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방향과, 과실책임으로부터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은 嚴格責任으로 변동되는 방향의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여, 현재의 製造物責任의 法理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판례법의 발전은 미국의 사법제도가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시 전 미국에 있어서의 보급이 필요했었다.

Greenman사건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 이론이 제2차 불법행위법Restatement 제402 A조³⁵⁾에 製造物責任의 기본적 원리로서 받아들여진 이후 미국에서는 製造物責任을 둘러싼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不法行爲法上の 嚴格責任의 법원칙을 허용하는 수가 급속히 증가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에만 그치지 않고 유럽 등을 중심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第 3 節 우리나라 判例上의 製造物責任法理

판례는 제조물책임의 사례에서 모두 이를 不法行爲責任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이는 제조자와 피해자와의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변호사들이 소송수행상의 편의 때문에 그냥 안이하게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損害賠償請求訴訟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소송에 이르는 경우도 별로 없고 사건수가 적다는 것은 실제로 제품피해가 적게 발생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액피해인 경우가 많고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보호원, 행정기관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거나 사회적 신용의 실추를 두려워한 제조자 등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많은 것과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것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본다.

(1) 살충제 事件

대구지법의 판결은 「제조물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비자인 원고측에서 제조물의 결함의 존재와 발생시점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

를 갖는 것이다.

35) 이진용, “제조물책임의 비교법적 고찰”,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p 91-92.

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인 원고측에서는 그 제조물을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던 사실만 입증하면 그 제조물에는 결함이 있다고 추정된다」고 하여 제조물분야의 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여 결함의 존재의 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사실을 입증하면 되는가를 적시한 다음에, 「적용대상작물이 “오이”로 명시된 살충제를 수박에 사용하였다면 그것은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수박의 성장이 정지된 것이 위 살충제의 약효로 인한 것이라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 살충제의 결함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살충제 제조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³⁶⁾

(2) 선박건조계약 事件

본 판결은 「피고가 선박주기관을 제작함에 있어 가이스링거 커플링에 오리피스 플러그를 장치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그 기관이 설치된 선박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모르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엔진 자체의 기능이 저하됨에 불과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될 엔진의 수리비용이라든가 그 객관적 가치감소 등과 같은 상품자체에 관한 손해(harm to product itself)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영업상의 손실(economic of commercial loss)에 대하여까지 製造物責任論을 확대적용할 수 없으며 이는 瑕疵擔保責任의 대상이 될 뿐이다」라고 판시하여 製造物責任의 損害賠償의 범위에서 수리비용이나 가치감소와 같은 상품자체에 생긴 손해와 그 밖에 경제적 손실인 영업상의 손실을 제외하고 있고 그것은 오로지 瑕疵擔保責任의 대상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또한 동 판결에서는 「이른바 製造物責任이라 함은 일용 상품의 제조자가 그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그 소비자 또는 최종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손해에 관한 직접 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상품의 대량생산 및 다단계적 유통구조를 통한 대량소비·판매로 특징지워지는 현대산업 사회에 있어서 상품의 판매로 인하여 이윤을 얻는 제조자에게 상품의 안전성에 관

36) 대구지법 1987. 11. 11 선고, 86가합1388 판결.

하여 고도의 嚴格한 注意義務를 부담케 함으로써 제조물책임의 본질을 一般不法行爲責任으로 이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관하여 소비자가 부담하는 製造者의 過失·因果關係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거나 그 부담을 경감케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며, 연역적으로 먼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음식료품·의약품 및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하여 발전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이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유통과정에 놓인 모든 물건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고³⁷⁾ 하여 제조물책임의 의의·연혁·특수취급의 필요성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3) 세원 飼料事件

본 건에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양계업자인 원고에게 패소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판결은 양계업자인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배합사료를 매입하여 종전방식에 따라 곡류·어분 등을 첨가 배합하여 자기 양계에 급식하자 아무 이상 없던 닭들이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키더니 약 500수 이상의 닭이 계속 죽어버린 사안에서 닭의 폐사원인을 사육환경이나 사료의 품질 및 어떤 질병의 후차적인 증상이 발병원인으로서 주로 단백질이나 칼슘성분의 함량이 너무 높은 사료를 지나치게 많이 급여하거나 비타민 A의 결핍으로 곰팡이 독소를 초래하는 변질된 사료를 먹일 때 발생하는 요산침착증이라고 밝혀 낸 다음, 피고회사 제조의 배합사료가 단백질·칼슘성분은 함유하고 있으나 비타민 A성분은 아예 함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그 배합사료를 검사한 결과 그 일부가 농수산부에서 정한 성분규격에 미달된 것이 있어 단백질이나 칼슘성분이 과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이상 피고회사의 配合飼料 製造·販賣行爲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폐사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판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原告勝訴判決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다.³⁸⁾

유사한 사안의 경우에도 법원의 상황인식 여하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음을

37) 서울민사지법 1987. 11. 11 선고, 86가합3459 판결.

38) 대판 1983. 5. 24 선고, 82다290, 82다카 924판결, 법원공보, 제708호,

보여주는 사례이다. 양 사건 모두 쟁점은 결함을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에 관한 것이다.

(4) 정상飼料事件

본 건은 사료를 매입하여 자기 양계에 급식한지 2, 3, 4일후부터 닭들이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키면서 산란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급기야 약 10일이 경과한 무렵에는 산란율이 30%이하로 떨어져 양계의 경제성을 완전 상실하여 폐기처분하기에 이르렀다는 사건이다. 본 건에서 판결은 감정인의 사양시험결과도 똑같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다른 양계업자들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울러 급식방법이나 계사관리·사료보관에도 이상이 없고 사양시험에 제공했던 사료들이 변질되거나 부패한 것도 아니고 또 사료를 급식할 무렵 닭들에게 예방주사를 시주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주방법이나 약품에 아무런 하자도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 한 닭들이 난소협착증을 일으키게 되고 산란율을 현저하게 저하케 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어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육하던 닭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는 因果關係는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라고³⁹⁾ 판시하고 있다.⁴⁰⁾

- 39) 大判 1977. 1. 25 선고, 77다2092 판결 - 「대법원판례집」 제25권 1집, 1977, pp. 21-32 이에 관하여 더 상세하게는 이정식,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과 입법론”,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p. 254-256 참조; 김준호, 「民法判例100選」-事實·判決理由 및 解説-, 法文社, p. 426: 본 판결은 모든 사실을 직접 입증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간접사실의 입증을 통해 사료에 불순물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밖에 제조자의 과실과(결함과 손해사이) 因果關係도 모두 연쇄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본 것이다. 이 점에서 이 판결은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제조자의 과실을 사실상 추정하고 피해자의 인과관계입증을 경감시킨 판례로서 그 지도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양창수, 「민법연구」, 제3권, 박영사, 1995, pp. 310-311.
- 40) 김형배,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의 개념과 책임귀속”, 손해배상법의 제문제, 황적인박사회갑기념, 박영사, 1990, P. 419. 위 판결은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여러가지 사실을 들어 결함을 인정하고, 제조자의 과실을 사실상 추정하고, 개연성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인과관계입증을 경감시킨 대표적인 판례이다.

본 판결은 製造物責任에 관하여 여러 가지 사실을 들어 결함을 인정하고 나서 바로 제조자의 과실을 사실상 추정하고, 개연성에 입각하여 피해자의 인과관계입증을 경감시킨 대표적인 판례로서 평가되고 있다.

(5) 질소통 事件

질소통의 도색과 글씨가 외관상 산소통으로 오인될 수 있게끔 병원에 공급되었고 병원도 고압가스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기관실 책임자에게 질소통의 압력만을 검사하게 하여 인수하였으며 질소통을 직접 환자에게 사용한 마취의사도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외양만 경신하여 산소로 생각하고 사용하여 환자가 질소가스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제조회사와 병원측에 共同不法行爲로서 連帶責任을 인정한 사건이다.⁴¹⁾ 본 판결은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6) 불량 장난감주사기 事件

본 건은 만6세의 어린이가 문반구점에서 구입한 주사기를 가지고 놀다가 주사기의 바늘구멍이 막히자 주사기를 왼쪽 눈앞에 들이대고 주사기를 압축하는 순간 공기압력에 의하여 평하고 바늘이 튕겨 나와 왼쪽 눈이 좌안동자폐쇄증에 걸려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판결은 「피고가 제조판매하고 있던 교재용 또는 완구용 주사기는 주사침을 주사기 몸통에 부착시키는 합성수지부분이 견고하지 못하고 영성하여 이를 몸통에 부착시켜 공기를 압축할 때는 경우에 따라 주사침 부분이 쉽게 주사기 몸통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이는 주사기 재료가 저질일 뿐 아니라 제조상의 잘못으로 인한 제품의 현저한 결함이며 또 동 결함은 외부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이를 제조한 피고가 동 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정도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결함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 동 주사기의 사용에 수반되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었고, …… 이 제품이 관계검사소에서 하자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번복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⁴²⁾

41) 대판 1979. 3. 27 선고, 78다2221 판결.

42) 대판 1979. 12. 26 선고, 76다1722 판결.

본 판결은 외관상의 제품상태에 의해 바로 製造者의 危險防止義務違反을 인정하여 注意義務의 고도화를 기하고 있고, 일정한 형식이나 검사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언제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점에 의의가 있다.

(7) 냉장고 병꽂이 事件

본 건은 원고가 토닉워터 1병을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 착탈식으로 되어 있는 냉장고 문 안쪽 병꽂이 선반에 넣는 순간 그 선반이 오른쪽 부착부위가 떨어지며 선반과 그 선반이 부착되었던 냉장고 문부분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넣어두었던 토닉워터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졌고 깨진 유리조각이 원고의 눈에 튀어 부상을 입어 제조회사에 不法行爲에 의한 損害賠償을 청구한 사건이다⁴³⁾.

법원은 피고가 냉장고의 병꽂이 선반에는 주로 유리제품인 병이 놓여지고 불의에 병꽂이 선반이 냉장고에서 이탈되는 경우에는 병이 깨어져 냉장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위 병꽂이 선반의 냉장고에서 불의에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조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보고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현장재현 실험결과 냉장고의 설치장소로 미루어 볼 때 원고가 쪼그리고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신체의 일부분으로 선반을 건드린 과실이 사고발생에 일조를 하였다고 보아 60/100의 과실상계를 하고 있다.

본 판결 이후에 제조회사에서는 착탈식 선반이 부착된 냉장고의 생산을 포기하여 제조물책임의 발전이 안전한 제품의 생산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8) 변압변류기(MOF) 폭발 事件

본 건은 변압변류기의 폭발사고로 종업원이 중화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건이다. 광업소측은 제조자에게 위 변압변류기의 내부구조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판결은 위 변압변류기에 구조 또는 제조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 주장 및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주장을 배척하였다.⁴⁴⁾

43) 대전지법 1987. 9. 17 선고, 85가합828 판결.

4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 1990 11. 18, 90 가합 64.에서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판결, 1992. 4. 8, 90 나 52212.에서는 원고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결함의 개념, 開發危險의 抗辯, 缺陷의 判斷基準, 製造物責任의 不法行爲의 성격과 契約責任과의 請求權競合을 인정하는 등 제조물책임분야에 관하여 폭넓게 언급하고 있다. 특히 결함개념을 최초로 본래 도입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판결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본 건의 경우에 만일 점진적인 전열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한 방법으로 전열열화를 최소화한 경우에 최소한의 내구년한이 사용기간인 2년 2개월을 초과한다면, 그 내구연한 전에 발생한 전열과피는 위와 같은 전열열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은 구조 내지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⁴⁵⁾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판례는 지금 無過失責任에 의한 製造物責任制度를 도입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로 대부분의 사례에서 상당부분 원고의 證明責任轉換을 시도하여 製造者의 責任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일정한 법률의 규정⁴⁶⁾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건의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판결만으로는 법적 불안정성·불명확성을 회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缺陷製造物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새로운 입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第 4 節 우리나라 製造物責任의 法理構成과 그 限界

우리 민법에 의하면 제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제조물책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현행법구조하에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어 契約責任과 不法行爲責任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피해자가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때에는 瑕疵擔保責任(민법 제580조)이나 債務不履行責任(민법 제390條)과 같은 契約責任

45) 大法院 1992. 11. 24. 24 宣告, 92다 18139 判決, 大法院判例集 제40권 3집(1992) 민 pp 158-165.

을 근거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⁴⁶⁾,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에게는 不法行爲責任을 추급할 수 밖에 없다.

1. 契約責任에 의한 法理構成

(1) 契約責任에 의한 救濟

매수인이 제품의 결함에 기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는 제품의 매도인은 직접의 매수인에 대하여 瑕疵擔保責任이나 債務不履行責任에 기한 損害賠償義務을 부담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약책임을 추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사이에 계약관계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구제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몇가지 이론구성이 시도되었다. 예를 들면, 소매점이 제조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債務不履行에 기한 損害賠償請求權을 소비자가 代位行使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신의칙상의 의무를 널리 인정하는 경우⁴⁷⁾, 상품책임분야에 있어서의 契約의 連鎖의 理論⁴⁸⁾ 제조자를 실질적인 매도인이라고 하거나, 판매업자를 제조자의 이행 보조자로서 구성하는 입장 또는 제조자와 판매업자 사이에 대리점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대리인으로 보는 입장 등이 있다.⁴⁹⁾ 그러나 지나치게 의제적이거나,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가능하지 일반화하기 어렵다거나, 면책특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직 이론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이 중에서 품질보증책임법리는 明示의 保證으로서 제품의 계약서·표시·선전 등에 의해 일정한 품질이 보증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묵시의 보증으로서 제조자의 품질·성능에 대한 默示의 保證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합의위반을 이유로 손

46)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외에도 대금의 감액이나 수리·교환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47)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유사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었다고 보아, 그 부수의무로서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보지의무의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

48) 결함이 있는 상품이 매매과정·유통과정을 통하여 이동되어 제조자와 피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 제조자를 매도인으로 보고 이론구성을 하기도 한다

49) 이러한 입장은 제조물의 결함을 하자담보책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고, 제조자를 매도인과 동일시함으로써 하자담보책임으로 구성하려고 한다.

해배상을 인정하려는 이론이다. 아직 충분히 성숙한 법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현대 제품·판매과정의 실태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실무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리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⁵⁰⁾

(2) 瑕疵擔保責任

우리 민법상 瑕疵擔保責任은 제품의 매매계약 외에도 賃貸借契約 등의 有償契約 일반에 적용된다(민법 제567조). 그리고 都給契約에는 특약이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667조). 원래 瑕疵擔保責任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학설로서는 신뢰이익설, 이행이익설, 대가적제한설, 대금감액설이 있으나 어느 설에 의해서도 擴大損害에 대한 損害賠償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瑕疵擔保責任은 無過失責任인 점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하지만 제품사고의 분야에서 주로 문제가되는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損害賠償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⁵¹⁾이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다⁵²⁾. 따라서 瑕疵擔保責任의 내용에 擴大損害를 포함시키려는 설로는, 瑕疵擔保責任에서의 損害賠償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인 제393조의 규정에 의해 擴大損害에 대한 배상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한다⁵³⁾. 그리고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除斥期間에 걸리는 외(민법 제582조), 免責特約이 유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민법 제584조)는 문제점이 있다.

(3) 債務不履行責任

결합상품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債務不履行責任을 추급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는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제품의 교환에 의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물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

50) 이정식, 전제논문, pp. 189~198.

51) 최병록, “제조물책임의 법리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42~43.

52) 김주수, 「채권각론」, 삼영사, 1995, pp. 204~205; 김형배, “하자담보의 성질”, 법률행정논집 제 19집, 고려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991, pp. 148~150

53)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p. 230

고, 적극적인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품사고의 경우에는 주로 품질불량 등 목적물이 불안전하여 이행이 불안정한 것으로 되는 不安全履行 중 결함없는 완전한 물을 급부하여야 할 의무의 위반이 문제로 되는데, 급부 목적물이 불안정한 결과가 목적물 내부에 그치고 있는 경우는 그 불안전이 추완가능하나 어떤가에 의해 일부지체 또는 일부불능⁵⁴⁾으로 환원하여 생각할 수 있다.⁵⁵⁾ 그러나 급부목적물의 불완전이 독자적인 의의를 갖는 것은 목적물의 불완전이 원인이 되어 생명·신체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미친 경우, 즉 擴大損害가 발생한 경우이다.⁵⁶⁾ 瑕疵擔保를 不完全履行의 특칙으로 보는 契約責任說에서도 擴大損害의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채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 요건이며,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의 債務不履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측에서 무과실의 證明責任을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瑕疵擔保에 관하여 어느 설에 의하던 판매된 제품의 결함원인이 되어 신체·생명·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賣渡人이 無過失을 증명할 수 없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바꾸어 말하면 매수인으로서 급부의 불안전 즉, 제품의 결함만 증명하면 된다.

債務不履行責任은 過失責任이기는 하지만 매수인이 매도인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매도인이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면책되지 않는 점에서 不法行爲責任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지만, 현대의 복잡한 유통과정을 생각하면 패키지 상품 등의 경우 직접의 매도인인 소매점이 무과실임을 증명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瑕疵擔保責任과 같은 한정은 없지만, 매수인에게 擴大損害가 생긴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특정하여 그 의무위반의 사실로 주장입증해야 하는데 본래적 급부 의무 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므로 의무인정에 어려움이 있어 손해배상이 좁은 범위에서 밖에 인정되지 않을 염려도 있다. 또한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도 문제로 된다.

54) 이것은 다시 瑕疵擔保責任의 문제로 보느냐 아니냐에 의해, 法定責任說과 契約責任說로 나누어 볼 수 있다.

55) 최병록, “제조물책임법리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p. 42~43; 이정식, 전제논문, pp. 189~190.

56) 예를 들면, TV의 품질불량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집이 불타버린 경우.

2. 不法行爲責任에 의한 法理構成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직접의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제조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不法行爲에 의하게 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① 제조자의 과실, ② 소비자의 손해, ③ 제조자의 과실이 있는 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不法行爲責任의 법적 구성으로는 민법 제756조의 使用者責任에 의해 종업원이 사무집행을 하다 손해를 입힌 경우에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나,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不法行爲責任에 의해 회사의 대표자가 직무집행상 손해를 준 경우에 회사가 損害賠償責任을 부담한다고 이론구성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우회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민법 제750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론구성할 수도 있다.

이 방법에 의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는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쉬우나, 기술이 고도화되고 제조과정·유통과정도 복잡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소비자로서는 제조과정의 정보와 그 접근수단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조자의 「過失」과 「因果關係」를 立證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다. 제조과정의 정보는 제조자측에 편재하고 있는데도 소비자측이 그것에 접근하는 수단으로서는 절차법적으로는 문서제출명령⁵⁷⁾과 증거보전⁵⁸⁾밖에 없고, 그나마 이들 제도는 범위가 한정적이고, 본래의 제도취지가 증거수집이 아니라는 제한으로부터 제조자측의 과실이라는 주관적 사정과 과실과 손해와의 因果關係를 立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상품계약상 제조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을 피해자에게 입증하라는 것은 불공평하기도 하다. 그래서 因果關係에 관해서는 蓋然性說⁵⁹⁾과 疫學的因果關係論⁶⁰⁾ 등에 의해, 과실에 대해서는 그

57) 民事訴訟法 제315조 이하.

58) 同法 제346조 이하.

59) 개연성설은 제조물이 제조업자의 지배를 이탈한 후에 결함이 생긴 것이 아니라, 제조업자의 수중에서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전 증거를 종합검토한 결과 특정한 결과발생을 초래한 관계를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서는 한삼인·김상찬,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 「환경연구논문집」, 제주대학교 환경연구소, 제2권 제2호, 1994. 12. pp. 25~30. 참조

추상화·객관화와 주의의무의 고도화에 의해 과실이 인정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결합있는 상품과 의약품에 의해 소비자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제조자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이론 등을 통해 피해자의 입증부담의 경감을 시도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과 過失과 因果關係의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소송을 단념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⁶¹⁾

그 밖에 제품이 공작물에 해당하여, 그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점유자가 1차적으로 損害賠償責任을 부담하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한 때에는 소유자가 보완적으로 損害賠償責任을 부담하게 된다⁶²⁾. 또한 제품의 규격 등이 법률에 의해 정해지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규제상 허가를 받고 있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직무수행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위법하게 손해를 준 경우(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품이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여 그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國家賠償責任도 문제로 된다.

3. 法理構成의 限界에 對한 檢討

제조물책임을 계약책임으로 구성하는 경우의 가장 큰 장점은 製造物責任을 債務不履行責任으로 구성하는 경우 책임요소인 채무자의 고의·과실의 立證責任이 채권자인 피해자로부터 채무자인 제조자 등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제조물책임을 債務擔保責任으로 구성하는 경우 채무자인 제조자 등의 고의·과실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제조자 등에게 제조물책임을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

60) 한삼인·김상찬,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 「환경연구논문집」, 제주대학교 환경연구소, 제2권 제2호, 1994. 12. pp. 25-30; 특히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疫學的因果關係란 완전한 과학적 원인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개연적인 원인이 여러 종류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적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공해사건이나 의약품이나 식품의 제조물책임사례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61) 최병록, 전제논문, p. 45; 이정식, 전제논문, pp 223-226; 이치영, 전제논문, pp .34~35

62) 民法 第758條 第1項, 이는 所有者에게는 免責事由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絶對的無過失責任이다.

러나 제조물책임을 계약책임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먼저 피해자와 제조자 등과의 계약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製造物責任에 있어서 대부분이 요건의 충족이 어렵고, 일부 계약책임구성에서 보이는 피해자와 제조자 등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 제조자 등에게 계약책임을 인정하려는 노력을 감안하더라도 제조자 등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제3자가 우연히 缺陷製造物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그 피해에 대하여 제조자 등의 契約責任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제조자 등과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는 피해자가 입은 缺陷製造物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는 製造物責任을 계약책임에서 벗어나 不法行爲責任으로 구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민법에 있어서의 不法行爲責任의 구성은 제조업자 등 가해자와 제조물 피해자 등의 소비자와 힘의 대등성을 그 근거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는 이러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힘의 대등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원래 민법은 당사자간의 대등관계가 상실된 구조적 피해를 전혀 예상하지 않고 제정된 것이다⁶³⁾. 따라서 제조물책임을 현행 우리의 民法上 不法行爲責任으로 구성하려는 시도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는 과실 책임에 기한 현행 不法行爲責任에서 벗어나 加害者의 故意·過失責任要素로 하지 않는 無過失責任에 기한 새로운 책임구성이 요청되는 이유이다.



63) 홍천룡, “제조물책임의 가치기준으로서의 결함의 개념”, 연람 배경숙박사 화갑기념논문-현대민법학의 현대적 과제, 박영사, 1991, P. 644.

第 3 章 製造物責任에 관한 各國의 立法動向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제조물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製造物責任法理는 1960년대에 미국에서 제조물책임(엄격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고 이를 기초로 정리한 미국법률협회의 제2차 불법행위법 Restatement가 1965년에 공시되고, 그 이후 각 주의 법원이 이것을 따르는 형태로 미국내에서 확산된 것이다. 그 후 EC에서도 검토가 개시되어 국제적 관심을 모으는 것으로 되었지만, 1970년대 중반이 되어 미국에서 製造物責任危機가 발생하고, EC가맹국간의 견해차이가 표면화됨에 따라 의논이 장벽에 부딪쳐, 製造物責任制度의 도입을 목표로 한 의논은 국제적으로는 조금 침체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1992년의 시장통합에 대비하여 EC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지령이 채택되고, 이것에 기하여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 각국에서 입법화가 행해졌다.⁶⁴⁾ 그 밖에 EFTA제국,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에서도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어, 製造物責任制度의 도입이 커다란 세계적인 흐름으로 되었다.⁶⁵⁾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製造物責任制度을 검토하고, 독일·일본의 製造物責任制度을 검토하고 그외 EC가맹국·AFTA회원국에 대하여 製造物責任法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EC지령과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64) 1994년 9월 현재 가맹12개국 중 11개국이 입법을 완료하고 있고, 남은 프랑스에서도 입법준비 중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필요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제96-15호9통권 제43호, p. 2.

65) EC 전 가맹국에 의한 기준을 거쳐, 1993년 11월에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EU가 새로이 발족하게 되었다. EU는 어디까지나 기존의 EC를 기초로 하여 성립한 것으로서 종래의 공동체법이 그 법적인 기초를 형성한다.

第 1 節 美國의 製造物責任制度

1. 製造物責任의 法理構成

미국에서 製造物責任의 法理는 전통적으로 불법행위상의 過失責任論이 적용되어 왔으며, 이 밖에 擔保責任論 및 嚴格責任論이 혼용되어 적용되고 있다.⁶⁶⁾

(1) 過失責任論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製造物責任訴訟은 불법행위상의 過失責任을 적용하여 왔다. 그 후 擔保責任論과 嚴格責任論의 등장으로 過失責任論의 기능은 다소 감소되었지만 아직도 過失責任論은 製造物責任訴訟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하며, 얼마 전까지 민사책임론에서 “과실없으면 책임없다”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물건의 제조자나 매수인은 당사자간에 계약당사자관계(contractual privity)가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한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당시 법원의 태도는 訴訟當事者間에 계약관계가 없는 한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상의 소송을 부인하는 태도였으며, 이와 같은 이유는 피해자의 보호보다 당시 공업발전단계에 있었던 영국과 미국에서 성장도상의 공업을 육성하고 기업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배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過失責任論에서 제조자의 과실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조자와 매수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契約當事者關係가 없으므로 제조자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없었다.

과실책임에서는 그 과실의 입증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고, 입증이 안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물론 과실책임에 있어서도 立證責任의 轉換理論이나 事實推定の 原則⁶⁷⁾(res ipsa loquitur = the thing speaks for itself)에 의하여 피해자가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過失責任論에 의한 피해자 배상은 소극적인 방법이 될 수 밖에 없다. 입증책임의 전환이론은 가해자가 과실이 없다는 것

66) 한봉희, 전거서, pp. 84~99.

67) 이정식,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과 입법론”,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p. 17-18.

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경우이고, 事實推定の 原則은 사실 그 자체를 증명한다는 뜻으로 손해발생은 피해자의 과실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고의 반증이 없는 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제조물사건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⁶⁸⁾. 대체로 식품, 의약품, 다이어마이트 등 폭발물, 석유등 가연성 물질에 대하여 제조나 매도인은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보통의 주의의무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다.⁶⁹⁾

(2) 擔保責任論

擔保責任論도 過失責任論과 함께 製造物責任訴訟에서 적지않게 적용하였던 이론이다. 擔保責任論은 본질상 불법행위적이라기보다 계약적인 개념으로 그 기초는 제조물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표시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擔保責任訴訟에서 중시하는 기초요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첫째, 손해의 증명. 둘째, 결함의 증명. 셋째, 인과관계의 증명이다. 원래 영미법에서 동산매도인은 제조물의 품질이나 성능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부담하였다. 擔保責任論은 매도인이 제조물의 부실표시에 대하여 故意 또는 過失의 유무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는 일종의 擬制的 無過失責任理論이다.

담보책임의 초기이론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契約當事者關係(privacy of contract)가 요구 되었으나 1916년의 유명한 MacPherson 사건⁷⁰⁾이래 당사자(privity)의 요구는 배제되었다. 특히 1960년의 Henningsen 사건⁷¹⁾은 묵시적 擔保責任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관계의 장벽이 최종적으로 제거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손해를 입은 소비자로부터 과실있는 제조자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 왔던 계약당사자의 성벽(citadel of privity)은 무너지게 되었다. 원래 契約當事者 개념은 擔保責任訴訟에서 유래된

68) 이에 관한 내용과 판례는 (Restatement of Torts, 2d, 328 A<1965>; Escola v. Coca Cola Bottling Co. of Fresno<1944>).

69) 미국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리는 이진용, “제조물책임의 비교법적 고찰”,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p. 86-88; 이정식,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과 입법론”,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12, pp. 10-33.

70) MacPherson v. Buick Motor Co.(1916년).

71) Henningsen v. Bloomfield Motoers Inc. 32 NJ. 358. 161A. 2D 69, 1960.

것이며, 담보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약속, 즉 매매를 유도하는 사실의 표시 'representation of fact'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製造物責任訴訟에서 契約當事者를 배제하게 된 것은 製造物責任訴訟의 일대전환을 가져 온 것으로서 소비자나 사용자보호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⁷²⁾.

擔保違反(breach of warranty)의 경우 적용되는 법은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1952)으로서 매매에 관한 규정인 제2조는 명시적 및 묵시적 담보에 관한 특별규정이다. 이 밖에 매도인은 담보위반을 발견한 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within a reasonable time)담보위반의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와 배상액 등에 관해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 담보책임의 법리는 영국의 動産賣買法(The Sale of Goods Act, 1893)을 본받아 1906년에 제정된 통일매매법(Uniform Sales Act, 1893)에 의하여 적용되어 오다가 1952년 이후 UCC(통일상법전)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3) 不法行爲法上 嚴格責任論

製造物責任에서 嚴格責任이란 제조자가 물건의 제조과정에서 또는 매매과정에서 모든 注意義務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Restatement of Torts 402 A [1965]).

製造物責任訴訟에서 嚴格責任을 적용하기 시작한 법관은 캘리포니아주 최고법원의 트레이너(R.G. Traynor)판사였다. 트레이너 판사는 유명한 Escola(에스콜라)사건⁷³⁾에서 嚴格責任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嚴格責任을 인정한 이정표적 사건이 된 Greenman 사건⁷⁴⁾의 판결법관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Greenman원칙이 형성된 것이다.

원래 영미법에서 嚴格責任의 법리는 이미 다른 분야에서도 인정되어 왔던 개념이다. 예컨대, 사육 중인 위험한 동물이 도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소유자나 관리인은 嚴格責任을 부담하였으며, 폭발물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등 위험

72) 한봉희, 「제조물책임법론」, 대왕사, 1997, P. 195

73) Escola v. Cocacola Bottling Co. (1944)

74) Greenman v. Yuba Powder Prod. Inc. (19630).

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嚴格責任을 부담하여 왔다.

제조물책임에서 嚴格責任의 경우는 過失責任이나 擔保違反의 경우와는 달리 제조자는 다양한 항변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제조자의 엄격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물건에 결함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결함과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원래 상품의 대량생산·대량판매·대량소비의 유통구조하에서 소비자는 개개의 상품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복잡한 상품의 구조상으로 보아도 소비자가 그 결함을 발견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조자가 엄격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맞다고 보게 된 것이다. 따라서 Greenman사건에서 嚴格責任法理의 적용은 많은 지지를받게 되었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65년의 제2차 불법행위법 Restatement(Restatement of Torts, 2d 402 A [1965])에서도 嚴格責任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엄격책임소송에 있어서 嚴格責任은 제조상의 결함에 적용되고 설계상의 결함이나 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는 과실책임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⁷⁵⁾

2. 美國의 製造物責任法의 危機

(1) 製造物責任危機論의 擡頭

미국 製造物責任原則의 중핵을 담당해 온 嚴格責任論은 소비자보호에 대한 공적을 남겼지만,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중반에 도래한 製造物責任危機(product liability crisis)論이 대두되었다.

일반적으로 製造物責任의 위기란 製造物責任保險料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산업계의 도산을 의미하고, 그 원인으로는 嚴格責任原理의 채용에 따른 製造物責任訴訟의 증가와 배상액의 고액화가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원고측 변호사들은 嚴格責任의 적용을 확대하려는 조직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피해로서 광범위한 개시절차(discovery)를 들고 있다. 광범위한 개시절차는 기업에 대한 소송공갈의 무기가 되고 개시절차에 응한 기업의 비용은 한 건당 수백만달러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75) 불법행위법상 엄격책임의 한계와 문제점에 관해서는 이정식, 전제논문, pp. 33-34.

한다. 이것은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엄격책임론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1980년대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 피고승소율이 증대되고 있다. 결함유형에 있어서 결함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제조상의 결함에 있어서는 엄격책임이 인정되지만, 설계상의 결함과 위험에 대한 경고의 결함에 있어서는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배심평결에 있어서 배심원들의 소비자보호적 성향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액 증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嚴格責任論에 대한 회의에 따른 過失責任論으로의 회귀가 신중히 논의되고 있으며, 過失責任에 기초한 연방차원의 입법적 노력과 미국법률협회(ALI)의 제3차 불법행위법 Restatement 402 A 개정작업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84년 이래 법원에 의해서도 嚴格責任原則의 적용에 대한 거부경향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嚴格責任을 적용하여 원고가 승소하는 비율은 20%선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製造物責任訴訟의 증가와 배상액의 고액화현상이 嚴格責任論의 채택에 의한 것인지, 또는 이러한 현상이 과연 製造物責任保險料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한 것인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논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설계상의 결함(design defect)과 경고상의 결함(failure to warn)으로 인한 사건이 소송가액의 증대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모든 製造物責任危機의 원인이 嚴格責任論에서 비롯된다는 논리의 부당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원인이 미국 고유의 陪審裁判制度(jury system)와 懲罰的 損害賠償制度 자체에 존재하고 있다는 입장이 설득력있게 대두되고 있다.

(2) 製造物責任危機의 原因

1) 製造物責任訴訟의 增加

製造物責任訴訟은 주법원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연방법원에 제소된 사건만 보더라도 1976년에 약 3,000건이었던 것이 1988년에는 16,000건을 넘고 있다. 출소기간(제척기간)은 피해가 있는 날로부터 또는 피해를 발견한 날로부터 2년 또는

3년인 것이 일반적이다. EC제조물책임법지령(1985)에서는 3년의 기간과 10년의 時效期間을 두고 있다. 製造物責任의 무과실책임화에 반대하는 입장은 製造物責任訴訟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訴訟社會’(litigious society)의 도래를 경계한다.

한편, 미국에서의 製造物責任訴訟의 실상은 연방법원의 제조물책임소송사건수를 製造物責任訴訟의 증가경향을 실증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져 온 연방법원행정처의 통계자료⁷⁶⁾는 연방법원에 제기된 製造物訴訟件數에만 한정된 것이고, 또한 그 증가 원인이 석면소송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製造物責任訴訟의 증가경향을 폭발적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製造物責任危機의 원인을 소송의 급격한 증가에서 구하려는 입장은 의문시 된다.⁷⁷⁾

2) 賠償額의 高額化 現狀

損害賠償額도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다.⁷⁸⁾ 이는 배상액의 지불방법에 있어서도 과거의 일시불(lump sum)로부터 분할불(periodical or installment payments)을 인정하고 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비경제적 손해(damage for noneconomic loss)에 대하여는 그 최고액이 50만달러 이하인 것이 보통이다.

이 밖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방각성합동조사위원회(the Federal Interagency Task Force on Product Liability)는 상무성의 중심이 되어 통일제조물책임법안을 제정하기

76) 미국 제조물책임의 증가경향은 연방법원행정처(Administrative Office of U.S. Court)의 통계에 잘 보여주고 있으나 그 해석에 있어서 약간의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미국에서의 製造物責任訴訟은 주법원에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연방법원의 製造物責任訴訟件數를 곧바로 주법원의 제조물책임소송건수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연방법원에서의 소송증가경향은 제조물책임소송 이외의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연방법원에 제기된 製造物責任訴訟의 증가경향은 주로 석면(asbestos)소송의 급격한 증가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77) 한봉희, 전거서, pp. 202~203.

78) 즉, 1975년에는 전국평균 건당 36만달러이던 것이 1984년에는 146만달러로 증액되고 있다. 제조물책임소송과 손해배상액의 폭발적 증대로 제조업체의 파산이 속출하게 되자, 1970년대 중반 이후 제조물책임위기가 대두되었으며, 미국의 실업계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미국의 실업계를 피로 물들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1980년대의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서 원고승소율이 30 - 40%정도로 하강하였고, 반면에 피고승소율은 60 - 70% 정도로 상향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로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각주는 이 법안의 채택에 소극적이었다.

한편 연방의회는 1991년 1월에 상원법안 640호(S. 640)로서 제조물책임공정법안과 하원법안 3030호(H.R.3030)로서 역시 제조물책임공정법안(Fairness in Product Liability Bill of 1991)을 제안하고 있다.

이 두 법안은 다같이 매도인의 제조물책임에 한해서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조자의 책임은 嚴格責任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 製造物責任訴訟에 있어서 배상액의 고액화 경향⁷⁹⁾은 배심평결조사사(Jury Verdict Research, Inc. 1990)의 조사에서 잘 나타난다⁸⁰⁾. 그리고 현재 배심평결에서 원고승소율은 대체로 37% 정도이고, 제조물책임사건의 평결에 있어서 손해가 큰 사건(10만달러 이상)은 배상이 적은 반면 손해가 적은 사건(10만달러 이하)은 과대 배상되는 경향이 있다.

3) 保險危機의 問題

1980년대 중반에 미국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한 保險危機(insurance crisis)란 製造物責任保險을 포함하는 일반배상책임보험의 연간인수순보험료의 급격한 상승과 보험회사에 의한 高危險保險의 인수거절 상황을 총괄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서, 1970년대의 제조물책임위기사상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하였다.

이러한 보험위기의 발생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는 보험회사가 큰 폭의 보험료 인상과 위험이 큰 보험료의 인수거절을 행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의 소송의 급격한 증가와 배상액의 고액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 하다.

미국에 있어서 보험위기의 원인규명은 미국 고유의 책임보험인수정책을 검토함으로써만 가능해 질 것이다. 먼저 미국에 있어서의 保險料率의 산정은 保險市場의 자유로운 경쟁가격(competition price)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시장경쟁원리에 입각한 保險事業收支사이클을 underwriting cycle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의해 보험회사는 수익과 보험료율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을 붕괴시킨

79) 이치영, 전제논문, pp. 54.

80) 이 배심평결조사서의 자료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① 조사의 모집단이 된 소송건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점, ② 자료상의 배상액수가 최종판결액이 아니라 배심의 평결액이라는 점, ③ 원고가 패소한 사례(배상액이 zero인 사례)를 모집단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것이 바로 cash-flow underwriting⁸¹⁾이었다. 고금리상태에서는 현금흐름보험의 적절한 운용으로 보험회사는 상당한 수익을 올리게 되지만, 저금리상태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게 된다.

3. 聯邦製造物責任立法의 經過와 爭點

(1) 聯邦製造物責任立法의 經過

연방정부는 제조물책임의 위기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1976년 4월 상무성을 중심으로 하는 연방각합동조사위원회(The Federal Interagency Task Force on Product Liability)를 설치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① 엄격책임법리의 수정, ② 징벌적 손해 배상의 제한, ③ 변호사 성공보수비의 제한, ④ 위자료의 제한, ⑤ 재해보상과의 중복배상의 개선 등을 제언한 바 있다.⁸²⁾

이러한 제언을 받아들여 연방정부는 製造物責任에 관한 구체적 시책의 입안을 상무성에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상무성은 1978년 4월 제조물책임위키유보법(the product liability risk retention act)의 제정에 의한 製造物責任保險의 안정화와 통일제조물책임 모델법(The Model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 MUPLA, 1979, 44Fed. Reg. 62,72)의 채용에 의한 통일적 제조물책임원칙의 확립을 제언하였다.

1979년 10월 상무성은 통일제조물책임모델법을 공표하였지만, 이에 대한 각 주의 수용태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연방제조물책임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이 강하게 대두되게 되었다.

통일제조물책임모델법에 의한 제조물책임원칙의 통일에 실패한 것을 계기로 제안된 연방제조물책임법은 1979년 제96차 연방의회에서 국가제조물책임입법안(The National Product Liability Bill)이 제안된 이래 1989년 제101차 연방의회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걸쳐 상하원 및 정부안이 제출되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81) 한봉희, 「제조물책임법론」, 대왕사, 1997. pp 205-206; 이것은 보험료수취시와 보험금지급시의 시간적 간격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운용함으로써 보험수지의 균형을 잡고 보험료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보험인수정책을 말한다.

82) 이치영, 전계논문, pp. 52-55

(2) 聯邦製造物責任立法의 爭點

1) 製造物責任原則

1977년에 공표된 연방각성합동조사위원회의 보고서와 통일제조물책임모델법 그리고 제97, 98, 99차 연방의회에 제출된 상원법안은 엄격책임기준의 불명확성이 제조물책임위기의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嚴格責任理論의 제한에 중점을 둔 바 있는데, 이것은 바로 과실책임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嚴格責任理論의 제한에 대한 소비자측의 저항도 강력하여 이후에 제안된 의회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嚴格責任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처럼 嚴格責任理論이 製造物責任危機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파악해 온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입장은 1980년대 중반의 전반적인 보험위기상황을 체험하면서 嚴格責任理論과 製造物責任危機와의 인과관계를 점진적으로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2) 慰籍料의 制限

198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보험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배상액의 고액화는 주로 慰籍料(damages for pain and suffering)와 懲罰的 損害賠償(punitive damages)의 고액화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후반에 활발하게 재개되었던 각 주의 不法行爲制度 개혁에서는 慰籍料賠償額의 최고액(damages cap)을 50만달러로 제한함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위자료의 제한은 연방제조물책임법에서도 제안된 바 있는데, 최근의 연방제조물책임입법에서는 위자료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보이지 않고 있다.

3) 懲罰的 損害賠償의 制限

懲罰的 損害賠償이란 人身損害로 인한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손해를 전보하기보다는 피고를 벌하기 위하여 填補賠償에 덧붙여서 懲罰的 損害賠償을 인정하는 것이다. 통상 懲罰的 損害賠償은 피고의 행위가 고의적(willful)이거나, 이유 없거나(wanton), 무모한(reckless) 경우 또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중과실의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과실과 범죄행위의 중간에 위치한 피고의 행위를 벌하고 억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懲罰的 損害賠償額의 기준은 없고, 배심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懲罰的 損害賠償에 대해서는 배상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과 원고측의 입증책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제조물책임 모델법은, 피고에 의한 의식적(conscious)인 안전성의 무시가 '명백하고 확실적인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懲罰的 損害賠償을 인정하면서, 賠償額決定에 있어서 배심원의 평결을 철저히 배제하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제97차 연방의회에 제출된 하원법안 제5214호는 懲罰的 損害賠償額을 100만달러로 제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懲罰的 損害賠償에 대해서도 賠償 最高限度額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려는 몇 번의 시도가 행해졌지만, 최근의 경향은 ① 懲罰的 損害賠償에 관한 입증의 정도를 '명백하고 확실적인 증거'에 의하도록 하고, ② 피고의 의식적이고 악의적인 안전성의 무시(예컨대, 고의의 불법행위에 한정)에 대해서만 배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는 등의 간접적인 규제가 제안되고 있을 뿐이다.⁸³⁾

4) 裁判外 紛爭處理制度의 導入

미국에서 製造物責任訴訟이 다발하는 이유의 하나로서 변호사성공보수제도(contingent fee system)를 들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승소한 경우에만 변호사비용을 지불하면 되고, 패소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없이 자유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승소한 경우의 원고측 변호사는 배상액의 30-50% 정도를 성공보수로 받게 되기 때문에 최초의 청구액에 成功報酬費를 가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배상액의 고액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⁸⁴⁾ 辯護士 成功報酬制度가 소송의 빈번화와 배상액의 고액화의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聯邦製造物責任立法에서 변호사 成功報酬費用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제안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다만 간접적인 제도보완책으로 재판외 분쟁처리방법⁸⁵⁾인 즉결청구(expedited claim)와 즉결화해(expedited settlement)제도를 도입하고 있을 뿐이다.⁸⁶⁾

83) 한봉희, 전제서, pp. 209-210.

84) 이치영, "제조물책임입법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 54.

85) 주차원의 裁判外 紛爭處理方法으로는 1986년 6월 하와이주의회에서 채택된 강제중재제도가 특징적이다.

5) 聯邦民事訴訟規則(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第11條

동 조는 개정에 의하여 1993년 12월부터 실시되었다. 동 조는 무고적 손해배상소송의 억제책에 대한 대표적 규정으로 예시되기도 한다.

동 조의 내용은 변호사는 제소 전에 주의의무를 다한 조사를 행하여야 하고, 그 조사에 의하여 형성된 최선의 지식·정보 및 신념에 비추어 소는 충분한 근거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최선의 지식·정보 및 신념에 비추어 그 소는 현존하는 법률에 합치되어야 하거나 혹은 현존하는 법률의 확장, 수정 또는 변경을 진지하게 주장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a good faith argument for the extension, modification, or reversal of existing law). 그리고 부적절한 목적으로 소송이 제기되어서는 안된다. 이 규정에 반하는 제소의 경우에 법원은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 예로는 소송비용의 상대방에 대한 변상명령이다. 이 조문은 외견적으로 엄격한 것 같으면서도 특히 “현존하는 법의 확장, 수정 또는 변경을 진지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의 의미에서 합정이 있고, 따라서 제재의 도피구가 되고 있으므로, 변호사비용의 쌍방적 敗訴者負擔主義 도입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⁸⁷⁾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4. 諸理論의 檢討



미국 製造物責任法은 현재 학계, 정부, 법원, 의회 등에서 풍부한 연구성과가 산출되었지만, 製造物責任原理로서 嚴格責任論이 그대로 적용될지 아니면 과실책임론으로 환원될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70년대 중반 이후 대두된 美國製造物責任危機의 원인을 오직 嚴格責任理論에서만 구하려는 과실책임회귀론자들의 주장은 재

86) 그러나 미국제조물책임소송의 종합적인 구조를 조사해 보면, 실제로 전체 제조물책임사건 중 기각되지 않은 사건의 95%가 재판의 분쟁처리방법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고 한다. Insurance Service Office(ISO)가 1977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제조물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약 19%가 기각되고(drop claim), 기각되지 않은 사건 81% 중에서 95%가 심리전 또는 심리도중에 재판의 화해(out-of-court settlement)에 의해 해결되고 있다.

87) 한봉희, 전계서, p. 211.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제조물책임위기의 주된 원인이 바로 미국 고유의 배심재판제도와 不法行爲制度 자체에 내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도의 산업화에 따른 製造物責任事件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책임법상 무과실책임영역의 협소성, 국민들의 소송의식의 취약, 저렴한 손해배상액의 판결실행 등 법제도적 미비점과 아울러 법의식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製造物責任立法은 별 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법문화적 토대에 있어서 미국과는 뚜렷한 상위성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상황을 고려해 볼 때, 美國製造物責任法理의 공과가 우리 나라의 법리형성이나 입법정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製造物責任論의 위기(보험위기)를 거울삼아 우리나라에서 製造物責任法의 입법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이 결합제조물로 인한 피해구제 및 법제정목적에 부합되리라 보기 때문이다.⁸⁸⁾

第 2 節 獨逸의 製造物責任制度

1. 製造物責任의 法理構成

(1) 契約責任

1) 契約擔保責任

독일민법(이하 BGB) §459(Haftung für Sachmangel) 이하 및 633(Nachbesserung: Mangelbeseitigung)에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의 적성(Tauglichkeit : quality)에 대한 담보는 단지 매수인의 대금지불에 대한 채무에 관련된 것이므로 製造物責任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BGB §459에 의해 제조물의 매도인은 판매한 제조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상적인 사용 혹은 계약에 의해 약정된 사용을 소멸 또는 감소

88) 한봉희, 전거서, pp. 211~212; “소비자보호의 강화라고 하는 헌법과 시대적 요청을 그 목적으로 하여 제조물책임입법화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제조물책임의 무과실적 법리 구성을 방해하는 미국 제조물책임위기론의 논거는 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시키는 결함이 판매한 제조물에 없다는 것을 담보하게 된다. 만일 제조물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Aufhebung:rescind)하거나 판매가격의 감액(Minderung:abatment)을 청구할 수 있고, 대량생산된 상품인 때에는 제조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물건의 제조계약에 있어서 제조자는 모든 하자를 수선할 책임이 있으므로 수선이 불만족스럽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제 혹은 가액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상인에 의한 상사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상법(이하 HGB) § 377(Untersuchungs und Rügepflicht)에 의해 인도한 제조물을 검사하여 명백한 결함에 대하여는 즉시 권리를 주장하여야 하므로, 만일 매수인이 즉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물의 적성을 인정된 것으로 보게 되어 매수인은 적성에 관한 담보의 이익에서 배제된다.

그리고 제조자 혹은 공급자가 제조물의 적성 및 특별한 목적의 적합성을 담보한 경우에는 過失責任과는 별도로 적성 및 성능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책임이란 모든 직접손해를 말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간접손해도 포함될 수 있다. 契約擔保에는 물건의 크기, 색채, 용적, 수명, 성능, 유지비용, 제조물의 사용에 일반적으로 관계되는 특수성 등이 포함된다. 매도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으로 담보가 계약상의 조건임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특정한 담보가 서면계약상에 반드시 명백하게 나타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목적에 대한 제조물의 적합성 혹은 제조물의 사용에 관한 특성을 분명히 언급하거나 제조물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주는 의사표시 등은 적성에 대한 계약상의 담보로 보게 된다. 이러한 담보는 실제 계약의 일부이거나 또는 카탈로그 광고 등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반드시 담보를 명시해야 할 필요는 없다.

독일법에서도 매도인·매수인 양 당사자가 물건에 붙여진 사용방법을 인식하고 있으면 묵시적 담보가 인정되고 있다. 사용에 관한 설명도 역시 담보책임을 발생하지만, 일반적 성질의 단순한 광고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흔히 내용설명서나 카탈로그에는 특수한 기술적 성능 혹은 적성표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것은 적성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니고 다만 제조물의 설명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제정법에 적성에 대한 묵시적 담보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① 제조물이 견본에 의하여 매매된 경우 매도인은 견본의 명세를 담보한 것으로 보게 되며, ② 동

물사료의 제조자 및 공급자는 제조물의 관례상의 적성을 담보한 것으로 보게 되며, ③ 종자의 제조자 및 공급자도 동일하다” 등과 같다.

契約擔保違反에 대하여 부여되는 배상의 범위는 각 경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결정된다. 직접손해는 어떤 경우에도 배상받을 수 있다. 매도인이 어떤 제조물을 신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중고품인 경우에 매수인은 중고제조물이 본래 의도한 목적에 적합하다면 신품과 중고품 사이의 가격의 차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의사표시가 특별목적에 관한 제조물의 적합성에 관련하여 행하여졌으나 제조물이 그러한 목적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역시 간접손해에 대하여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담보의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에는 과실의 입증의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제조자는 현존하는 모든 기술적 지식과 개발에 의해서 미리 예견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을 진다. 또한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을 지라도 제조자는 여전히 제조물의 어떤 결함에 대하여도 계약담보위반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契約上의 注意義務違反으로 인한 過失

모든 계약에는 ‘주된’ 계약책임과 더불어 일정한 ‘부가’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부가책임’을 규정, 설명하는 일반적 원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각개의 행위의 내용에 따라 성립할 뿐이므로 흔히 ‘계약상 주의의무’라는 말로 사용되는 부가책임이 무엇인지를 일반인에게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즉, 危險製造物の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적절한 경고 혹은 설명을 하지 않고 제조물을 판매한 경우 등을 注意義務違反으로 보고 있다. 독일법상 모든 製造物責任事件에 있어서 이러한 注意義務의 違反은 과실의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過失이라는 말은 결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행동하거나 또는 모든 결과를 예견할 수는 없지만 어떤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행한 作爲 혹은 不作爲를 가리킨다. 독일법원 역시 이러한 過失主意原則에 입각하여 契約上 注意義務違反에 대하여 과실에 근거한 損害賠償請求를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契約上 注意義務違反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 즉 인적손해와 재산손해(수입, 이자 등의 손실)를 포함하여 직접·간접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 契約上 注意義務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는 제조자·도매상·소매상에 따라 다르며, 일정한 거래계통에서 보통 관계가 된 부주의는 일반적으로 고도의 주의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예견할 수 없거나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BGB § 278⁸⁹⁾에 의하여 각 당사자는 고용인 및 도급인(이행보조자)을 포함하여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조력하는 제3자의 과실에 대하여도 자기의 과실과 동일하게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은 이행보조자가 계약당사자의 계약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발생한다.

3) 責任에 대한 契約上 合意

제조자 및 공급자는 흔히 일반 법률규정에서 적용되는 담보를 수정·변경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보통거래계약에서까지도 허용되고 있다. 담보가 민법전 혹은 상법전의 한계를 넘는다고 하여 문제될 것까지는 없으나 담보의 제한은 보통거래약관법⁹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의 제한 및 배제에 대한 한계를 준수하여 행하여야 한다. 담보의 백지(무제한)배제는 AGB-Gesetz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제조자의 수선에 대한 담보책임의 제한은 수선이 잘못된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가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만이 유효하다. 담보책임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제조자가 고객에 대한 담보책임을 공급자에게 양도한 경우 일지라도 제조자는 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

AGB-Gesetz는 특정한 계약담보에 있어서는 책임의 제한·배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직접손해에 대한 책임의 제한도 불가능하며, 간접손해에 대한 책임의 배제는 직접손해에 관한 책임에 관련한 특정의 담보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제조자가 예견할 수 없는 손해나 우발적인 사고에 대한 책임의 배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이 다만 기술개발의 현상만을 만족시킨다는 점, 혹은 대량제조된 제조물에 있어서 제조물의 적성은 오직 평균표준 정도를 충족시킨다는 점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89) BGB § 278(Verschulden des Erfüllungsgehilfen)

90)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1976. 12.9, 이하 AGB-Gesetz라고 함.

관습에 의하여 혹은 합법적으로 특정계약이나 보통거래약관에 있어서 과실에 대한 계약책임의 제한·배제가 행하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나 그 계약당사자의 계약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이행보조자가 위반한 고의적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은 배제할 수 없다. 보통거래계약에 있어서도 역시 과실에 대한 책임이 배제될 수 있으나 重過失(gross negligence)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불법행위에 의한 損害賠償請求를 제기할 수 있는 것처럼 계약상의 책임배제에 관한 원칙은 역시 不法行爲法上의 책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물론 당사자가 契約關係에 있는 경우라면 不法行爲責任이 배제될 수 있다. 契約當事者關係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 계약에 의해 그의 損害賠償請求權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 不法行爲責任의 배제는 契約當事者의 개별적인 주장이나 보통거래계약에 의하여 가능하다. 그러나 보통거래계약은 보통거래약관에 담겨진 용어상의 어떤 모호한 의미로 계약당사자의 이익에 반하여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백히 한계지우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모든 責任에 대한 일반적 배제는 합의만으로 불충분하고 조문에는 不法行爲責任에 관하여 명백히 언급하고 그 조문에 의하여 不法行爲責任이 배제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4) 立證責任

立證責任은 損害賠償請求에 필요한 모든 사실을 구체화할 의무를 지고 있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독일법의 원칙이다. 결국 원고는 손해, 상대방의 계약위반, 피고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損害賠償請求는 손해가 피고의 위법한 작위 혹은 부작위에 의하여 야기된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책임인정의 중요한 선행조건이 된다. 그러나 BGB에 의하여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손해에 기여한 어떤 사건(피고에게 책임이 있는)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作爲 및 不作爲는 그의 행위의 결과로 야기된 손해가 상당한, 즉 너무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손해를 발생하게 한 사건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因果關係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는 의료비용, 입원비 등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만일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고와는 관계없는 질병이 발견되어, 이로 인하여 갑자기 원고가 조기퇴직하게 된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의 급료손실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이에 반하여 因果關係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는다. 즉, 위의 예에 있어서 피해자가 병원의 과오로 인하여 부가손해를 입은 경우일지라도 피고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부가손해에 대하여 병원과 공동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피고(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因果關係는 아주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제3자의 개입에 의해서만 중단될 수가 있다.

製造物責任事件에 있어서의 피해자는 제조자의 영업활동방법과 사고를 일으킨 제조물의 결함 등에 관하여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보통이므로 독일 법원은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한다는 증거만을 제시하여도 제조자측의 과실을 추정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의 근본 이유는 결함의 원인이 피해자보다 결함을 해명하기가 더 유리한 지위에 있는 제조자의 주의와 통제하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製造物責任訴訟에 있어서 원고가 입증책임전환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제조자에 대하여서 뿐이고 공급자가 피고인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공급자에 대한 製造物責任訴訟에 있어서는 立證責任의 일반원칙에 따르고 있는 것이 독일 법원의 태도이며, 따라서 원고는 공급자의 과실을 포함하여 損害賠償請求를 입증할 모든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여야 한다.

5) 消滅時效

BGB의 소멸시효는 30년인 것이 원칙이다.⁹¹⁾ 민법은 개개의 경우의 消滅時效를 규정하고 있으며,⁹²⁾ 擔保給付請求權의 消滅時效期間을 정하고,⁹³⁾ 動産의 경우 物件의 인도시부터 6개월, 不動産의 경우 양도시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있다. 또 擔保給付請求權의 내용은 담보위반의 경우의 損害賠償請求權을 말한다. 그리고 都給人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 등의 消滅時效期間을 제조물의 인도 후 6개월로 하고 있다.⁹⁴⁾

91) BGB § 195

92) BGB § 196

93) BGB § 477(Berjährung der Gewährleistungsansprüche).

94) BGB § 638

都給에 있어서 단기소멸시효규정을 두고 있다.⁹⁵⁾ 소멸시효기간은 결함이 묵시적이든 잠재적이든 차이가 없고, 다만 양도인이 하자를 악의로 묵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0년의 消滅時效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담보상의 損害賠償請求와 달리 過失責任訴訟에 있어서는 독일법상 賣買合意(sale agreement)와 製造契約(manufacturing contract)을 구분하고 있다.⁹⁶⁾

賣買契約上의 注意義務違反에 대하여도 擔保賠償請求와 동일한 消滅時效가 적용되기 때문에 賣買契約에 의한 損害賠償請求는 제품의 인도후 6개월이 지나면 消滅한다. 단기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은 손해가 제조물에 존재하는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예컨대 허위표시에 의해 발생한 손해와 같이 제조물자체에 의하여 생긴 손해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30년의 통상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제조계약상의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록 학설로서는 다툼이 되고 있지만 연방법원은 30년의 통상소멸시효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이 담보배상청구와 동일한 경우에 消滅時效는 제조물의 인도와 함께 개시된다. 결국 손해가 6개월의 短期消滅時效가 완료된 후 발생한 경우에는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야기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물건의 인도와 동시에 발생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보다 후에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부수적 의견을 남겨 놓고 있다. 소멸시효의 진행이 손해가 일어나기 전에 개시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 契約外 責任

독일에서의 계약외 제조물책임은 불법행위법의 한분야로서 규정된 일반원칙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나,⁹⁷⁾ 이 원칙은 법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입증책임의 원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많은 수정을 받고 있다. 불법행위소송은 계약당사자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의해서 제기된다. 소송은 계약과 불법행위에 기

95) BGB § 638

96) 한봉희, 전제서, pp. 263-264.

97) BGB § 823(Schadensersatzpflicht)

초하여 동시에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양소에 의해서도 실제로 발생한 손해 이상을 배상받을 수는 없다.⁹⁸⁾

1) BGB § 823 I의 責任

BGB § 823 I은 생명·신체·건강·자유·재산 기타의 보호이익에 대하여 故意 혹은 過失로 가한 損害賠償責任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피해자의 일반적인 금전적 지위까지는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익의 손실과 같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청구는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규정에 기초하여 판례법은 피해로부터 타인을 보호할 일반적 의무부담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보호의무는 제조자, 공급자,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되고, 다만 이들 사이에 의무는 배분될 수 있다. 제조물의 매수인이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契約責任訴訟을 제기할 수 있지만, 예컨대 완전한 기술적 성능을 지닌 제조물이 어느 일부분에 결함이 있어 이것이 잘못 작용함으로 인하여 제조물 전체에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契約責任과 함께 不法行爲責任도 성립할 수 있다⁹⁹⁾.

2) BGB§ 823 II의 責任

이 규정은 제3자(bystander도 포함)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損害賠償責任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 침해에 대한 어떤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 設備安全法(Gerätesicherheitsgesetz)

이 법률은 전문적·기술적 설비는 사용자 혹은 제3자의 사망 및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험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술적 표준과 보편적 척도에 따라서 생산된 경우에만 공급되거나 전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제조자 및 수입상에 모두 적용되며, 1980년 1월의 개정예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98) 한봉희, 전제서, pp. 264-269.

99) 예로서는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기계가 폭발한 경우 및 독특한 모델의 자동차에 적합하지 않은 타이어를 그 차에 장치하여 결국은 사고가 일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도 역시 적용하게 되었다, 동 법은 설비를 작업도구, 기계, 승강장치, 운반설비, 수송수단 등 모든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안전장치, 조명기구, 냉동기구, 통풍장치, 가사도구, 스포츠용구, 취미용품, 장난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나) 生活必需品法(Lebensmittel und Bedarfsgegenstandesgesetz)

이 법률은 식료품, 식품첨가물, 연초제조물, 화장품 기타의 인체보호상품과 의복, 침구, 가발, 안경 등과 같이 인체에 접촉되는 모든 제조물에 적용된다. 동 법은 신체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제조물의 제조 및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

(다) 飼料供給法(Futtermittelgesetz)

동 법은 사람과 동물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동물사료의 제조 및 공급에 대한 일반적 금지와 동물사료의 검사, 인가, 검인 등에 관한 자세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라) 種子去來法(Saatgutverkehrsgesetz)

동 법은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道路交通許可令(Straßenverkehrszulassungsordnung)

동 법은 자동차를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이외에도 보호법률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특히 ① 폭발물법(Sprengstoffgesetz), ② 상수법(Wasserhanshaltgesetz), ③ 시가철도 건설 및 영업규정(Ban- und Betriebsverordnung for Straßenbahnen) 등이 있다.

3) BGB§ 826의 責任

BGB § 826(Sittenwidrige vorsätzliche Schädigung)은 악의적인 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고의로 행한 위법행위자

에 대해서만 본 조항이 적용된다. 그러나 독일법은 당사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 있거나 결함이 손해를 발생케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고의로 무시한 경우에는 악의의 추정이 인정된다.¹⁰⁰⁾

4) BGB§ 823 I의 過失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 의무이므로 제조물 역시 그 정상적인 사용을 통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조되고 공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損害賠償請求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BGB § 823 I에 따라 피고측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독일법에 있어서 과실이란 일정한 상황하에서 관례적으로 요구되는 注意義務違反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리고 주의의무의 정도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주관적 기준은 고려되지 않는다,

제조물의 제조 및 공급책임자는 제조물에서 발생이 예견되는 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가능, 적절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의무의 정도는 사정이 각각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으나, 개별적 사안에 내포하고 있는 위험의 정도에 비례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모든 제조자 및 공급자는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품의 제조자는 제조물의 특별한 작동에 필요한 전문적기준을 보증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최근의 기술개발, 지식활용, 기술적·과학적 정보 등에 대해서도 정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기술수준을 초과하는 특별한 기술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상대방(경쟁자)의 관례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지식 또는 기술을 지닌 자는 그러한 지식 및 기술을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항변할 수 없다. 현재의 지식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제조자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지켜야 한다. 또한 제조자가 준수해야 할 기술적 기준이 단순히 행정규정에 의한 경우일지라도 부가적 주의의무는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범위에

100) 예컨대, 연방법원은 건축주가 파괴된 양젓물 공장에서 얻은 중고 벽돌을 집 짓는 데 사용한 결과 건축에 아주 부적합한 염산과 질산성분이 벽돌에 남아 있어 얼마 후 집이 무너져버린 사건에 있어서 결함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악의의 행위라고 판결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다.

서 제조자의 주의의무는 제한된다. 결국 製造物責任은 일반시민이 관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결함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조자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인 쇄상의 오자에 대해서는 보통 책임이 없다. 그러나 투약에 관한 설명, 수리적 도표, 전문적 설명 등에 대한 과오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므로 책임을 부담 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의의무의 정도는 제조물의 가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값싼 상품에서는 사용자가 고도의 적합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제조자의 특별한 注意義務는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이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되 고 있다. 이러한 원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제조물의 마멸에 대 해서는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조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역시 손해방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제조자는 제조물의 사용에 관하여 행한 설명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또한 사용자는 제조자의 설명을 맹목적으로 따른다고 기대할 수 없는 때도 있다. 제조물의 사용에 있어서 사용자가 지니고 있는 전문적 지식의 활용이 요구될 때에는 사용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한,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전문적 기술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매수인은 제조자의 특 별한 설명이 없을지라도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과 마멸상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 로 보게 된다.

(3) 特別法에 의한 責任

1) 醫藥品法(Arzneimittelgesetz, 이하 AMG라고 함)

의약품의 제조자에 대한 嚴格責任을 규정하고 있다.¹⁰¹⁾ 즉,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 하여 사람이 손상을 입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과실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다. 동법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유일한 요건으로는 해당 의약품이 의학에서 규정된 한 계를 넘어 사용하게 되면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든지 또는 상해의 원인이 開發上 또는 製造上의 缺陷으로 발생한 경우이다. 또한 의약품이 AMG에서 규정하 고 있는 요건에 부적합하다거나 사용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에도 嚴格責任이 적용된다.

101) Arzneimittelgesetz, AMG § 84.

2) 原子力法(Atomgesetz, 이하 AtomG 라고 함)

AtomG는 핵발전소 및 원자로의 소유자 및 운전자, 방사능 물질의 소지자에 대한 嚴格責任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AtomG에 의한 嚴格責任은 어떤 사람이 방사능 물질을 다른 허가받은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逸失하여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또 이를 준수하여 행한 의료목적을 위한 방사능 물질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방사능 물질의 취급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을 인수한다는 조건하에 계약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도 AtomG의 嚴格責任은 적용되지 않는다. AtomG하에서의 嚴格責任에는 사망, 인신피해, 재산손해 등에 대한 책임이 포함되고 원자력발전소 운전자책임의 최대배상한도액은 1,000,000,000 DM으로 제한된다.¹⁰²⁾

2. 製造者の 責任

(1) 製造者

제조자란 제조물을 제조 또는 조립하는 자(자연인 및 법인)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공급자와는 직접 契約關係에 있으나 사용자와는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다.

1) 製造者の 部品業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

제조업자는 부품업자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권은 제조자에 대한 공급자의 권리와 동일하다.

2) 製造者の 抗辯事由

製造物責任訴訟에 있어서 제조자는 피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항변의 수단은 제조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제조자의 전적인 주의 및 관리하에서 만들어진 제조물의 결함이 일단 피해자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는 과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제조자의 지위는 不法行爲責任에서 매우 불안하다. 이러한 사건에서 제조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원리는 고용인이 사

102) 독일의 AtomG는 “핵에너지 분야에 있어서의 제3자 책임에 대한 파리협정”의 규정을 독일의 실정에 알맞게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제정한 것이다.

용자와 독립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제조되었을 경우에는 적용된다. 제조자는 그의 경영조직에 있어서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직원의 고용·감독을 위한 적절한 기관도 설치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고용인의 선발·교육에 대한 높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의 선발교육의 방법이 타당하다는 것을 법원에서 입증하여야 한다.¹⁰³⁾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과실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제조자는 교육, 신임, 재능, 기술 등 특정한 지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인으로 선임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자는 고용인의 작업장에서 고용인을 적절히 감독할 책임이 있다. 연방법원은 비록 기계가 정상적인 가동상태에 있었을지라도 제조자가 개인의 과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제조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조자는 사원에 대한 정확한 지시와 사원의 지시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통제장치를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 또한 제조자는 제조물을 충분히 시험한 후에 대량생산을 개시하여야 하고, 제조상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품에 대한 관리는 선적되는 시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제조물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장내에 특별위험관리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실제 소송에 있어서 제조자는 공장내의 모든 안전대책 및 통제장치를 설치한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무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 부품업자가 제조한 부품을 조립하는 제조자는 부품업자의 신뢰도와 제조자격(면허)을 조사하여야 하고, 제조물을 위하여 구입하는 모든 물건의 적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조자가 제조물의 사용에 관하여 허위설명을 한 경우에 피해자는 허위설명에 따라 그대로 행동한 사실과 만약 설명이 정확하였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법원은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허위설명에 제조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손해가 과오로 인한 설명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자는 제조물의 용도를 분명하게 지적해야 할 의무가 있다.

103) 한봉희, 전제서, p. 281.

3) 涉外私法

결합제조물이 수입된 것인 경우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야기된다. 첫째는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독일인 피해자가 외국인에 대하여 어떻게 손해배상청구를 강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¹⁰⁴⁾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준거법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으나, 만일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적용법률을 확정하기 위하여 법원은 거래의 모든 관계를 조사하여야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무이행법의 법률을 적용한다. 채무이행주소를 정하지 아니하고¹⁰⁵⁾ 또한 제반사정 특히 채무관계의 성질로 보아 이를 추정할 수 없을 때에는 채무자의 채무관계발생지의 주소가 이행지가 되므로 계약상 주의 의무의 위반, 즉 외국인 제조자의 과실에는 독일의 계약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독일법원은 독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모든 계약은 독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 不法行爲訴訟에 있어서는 不法行爲가 행하여진 장소의 법이 적용되므로 독일 국내에서 不法行爲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물론 독일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독일법은 손해가 발생한 장소를 不法行爲地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상품에 관한 한, 손해발생지는 항상 독일 국내이므로 결국 不法行爲責任은 독일법에 의하여 규율된다.¹⁰⁶⁾

104) 한봉희, 전거서, p. 283.

105) BCG § 269(Leistungsort)

106) 외국제조자에 대한 계약책임소송은 채무이행지가 독일 국내이거나(ZPO § 29), 외국제조자가 독일 국내에 지점(ZPO § 21) 및 재산(ZPO § 23)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독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외국 제조자에 대한 소송이 독일법원에 제기된 경우에 외국 제조자는 법원에 출두하여야 하는데, 만일 소송절차에 따른 통지를 받고도 출정하지 않으면 결석재판(judgment of default)에 의해 손해배상재판을 받을 수 있다. 독일법원에서 행하여진 판결은 오직 독일 국내에서만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판결을 집행하는 문제는 쌍무적, 다면적 협정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해 특별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재판의 관할과 집행에 관한 1968년의 유럽공동체협정(The Convention of the European Community on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 of 27 Septemeber 1968)은 ① 집행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② 고소영장을 피해자가 피고에게 적절히 전달하지 않고 행한 결석재판의 경우, ③ 판결이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행한 판결과 모순되는 경우 ④ 법원이 외국의 국제적 실체법을 위반하면서 당사자의 인적 사항등 예비심문(preliminary

(2) 製造者の 責任

(가) 製造上, 設計 및 開發上의 缺陷防止

제조자는 적절한 설계를 통하여 제조과정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 적성관리에 대한 일반적 표준은 없으나, 제조자는 제조방법의 향상 및 적성관리제도의 확립 등을 통하여 제조물의 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결함없는 제조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제조상 결함이 발생할 위험이 큰 경우에는 적성관리방법을 더욱 강구하여야 하며, 생산이 완전히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때와 같이 과오의 위험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적성관리의 필요성도 감소한다.

그리고, 적성관리는 제조물이 의도한 대로 사용될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예컨대, 병에 내용물이 알맞게 채워졌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점검으로도 가능하지만 철강제품의 내부에 있는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X-Ray와 같은 전문적 방법에 의해서만 검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자는 관례적이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제조물을 제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조자가 제조과정의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결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제조자는 정상적인 사용자가 아무런 위험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물을 설계할 책임이 있다. 제조물이 불안전하거나 사용목적에 부적합한 경우에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결함을 정지할 수 있다면 제조물의 제조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제조물이 처음 의도한 목적과는 달리 사용된다거나 또는 무리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說明 · 製造物監視義務

제조자는 제조물의 적절한 사용 및 취급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인식시킬 의무가 있으며, 또한 제조물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수효과에 대하여도 경고를 하여야 한다.

question)을 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민·상사사건의 모든 판결이 공동체 회원국인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쌍무협정을 맺은 나라로서는 오스트리아, 그리스, 스위스, 튀니지, 영국 등이 있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한 사건에 있어서 손님을 위하여 양모제를 사용하다가 피부병에 걸린 이발사가 결국은 그 피부병으로 인하여 이발소에서 해고를 당한 사건에 있어서, 제조자는 사용자에게 양모제를 자주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경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제조자는 이발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제조자는 또한 순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오용의 가능성에 대하여도 경고할 의무가 있다¹⁰⁷⁾.

그리고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물의 공급후 또는 제조물의 사용 도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설계·제조 등에서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제조자는 제조물의 일상적인 사용에 있어서 그 성능을 감시할 의무가 있고, 기업의 운영체제도 결함이 나타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시의 결과로 나타난 결함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술상태에 따라 설계 및 제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며, 특히 결함의 원인을 규명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및 제조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조자는 각 사례의 특수한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단계에서 결함을 제거하고 사용자의 위험을 방지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제조자는 결함제조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수선을 위하여 그 제조물을 회수할 수도 있다¹⁰⁸⁾.

(3) 契約外 訴訟의 立證責任

製造物 損害賠償請求訴訟에 있어서 피해자는 제조물의 결함, 손해발생,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지만, 손해의 명확한 원인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손해의 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의 주의와 관리하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타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점만을 입증함으로써 충분하다. 그리고 제조자가 제소되었을 때 제조자는 손해가 결함있는 제품을 유통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면 충분하다. 정황증거도 역시 법원에 의하여 증거로서 인정되므로, 예컨대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제조자가 사용에 대한

107) 설명의무에 관해서는 한삼인, “설명의무의 판단기준”,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제 222호, 1994. 2, pp. 82-86: 의사의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제조물책임에서도 그 적용이 타당하겠다.

108) 한봉희, 전계서, pp. 269-271.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입증하여도 충분하다. 특히 보호법규의 위반과 같이 손해의 발생이 피고의 행위에 의한 당연한 결과인 경우에는 원고(피해자)는 인과관계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를 원용할 수 있고, 법원도 역시 보호법규위반은 일반적으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과실은 不法行爲責任을 立證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원고는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실제로 제조물의 사용자가 과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곤란한 일이다. 즉, 산업의 생산구조는 매우 복잡하여 피해자가 제조과정 가운데서 과실을 찾아내기란 심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상당한 원인인 결함의 존재가 입증된 경우에는 제조자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 관행이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제조자가 항변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산업구조가 복잡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¹⁰⁹⁾ 立證責任의 전환은 오로지 제조자에게만 적용되고, 공급자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는 과실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의 모든 요건에 대한 立證責任을 원고가 부담한다. 보호법규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었을 때 원고(피해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충분하고, 이런 사건에서 손해는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4) 消滅時效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피해를 안 때로부터 3년, 피해발생의 지·부지에 관계없이 不法行爲時로부터 30년이 경과하면 消滅時效에 걸린다. 消滅時效는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인지한 때부터 진행하지만 손해의 모든 내용을 인지할 필요는 없다. 계약상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보다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 계약상 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는 不法行爲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만이 인정된다. 불법행위에 의한 賠償請求는 계약위반에 대한 배상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피해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

109) 아직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조물사건에 적용한다는 선결예가 없으며, 산업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소기업의 경우에 제조자가 통상적인 입증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선결예가 없다.

3. 損害賠償

피해자에 대한 損害賠償義務者는 배상의무를 발생하게 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여야 하며¹¹⁰⁾, 이와 같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할 때에는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란 피해자가 입은 모든 불이익을 가리키며, 생명, 건강, 재산 및 이익의 상실, 제3자배상청구권, 손해방지비용 등에 대한 손해도 포함된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생명, 건강, 특별한 재산 등과 같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손해에 제한되며, 일반적 성질의 금전적 손실은 배상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4. 使用者 · 供給者 · 第三者

(1) 使用者

사용자는 공급자 또는 제조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가족 및 제3자로 인정되는 사용자의 고용인 등도 일정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의 보호를 향유할 수 있다.

1) 使用者의 供給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

공급자로부터 제조물을 구입한 사용자는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며, 담보위반의 경우에는 과실의 입증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상 담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일정한 적성이 담보되었다는 것과 담보된 적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손해배상액산정 및 결함과 손해의 因果關係 확정을 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지만 과실의 입증은 요구되지 않는다.¹¹¹⁾

사용자는 공급자의 과실에 의한 계약상 注意義務違反에 대해서도 損害賠償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損害賠償請求權에는 이익손실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손해가 포함된다. 損害賠償責任의 확정을 위해서는 과실로 인한 계약상 의무위반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공급자와의 계약관

110) BGB § 249 즉, 책임의 발생 이전의 상태

111) 한봉희, 전제서, p. 279.

계 여부에 상관없이 제3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使用者의 製造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

사용자가 제조물을 직접 제조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공급자에 대해서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사용자는 보통 제조자에 대하여 계약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향유자가 아니므로 제조자와 사용자간에 직접적인 계약이 있을 경우, 오직 제3자에게 적용되는 범위에서만 損害賠償請求를 제기할 수 있다.

(2) 供給者

供給者란 제조자 혹은 다른 공급자로부터 제조물을 구입하여 사용자 또는 다른 공급자에게 판매하는 자(자연인 및 법인)을 말하며, 보통 제조자 및 사용자와 계약 관계를 갖는다.

1) 供給者の 製造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

일반적으로 공급자는 제조자로부터 제조물을 구입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만일 공급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제조물을 구입한 경우에는 제조자에 대한 損害賠償請求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mutatis mutandis) 적용한다. 공급자가 제조자와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와 마찬가지로 계약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공급자는 사용자가 공급자에 대한 것과 동일한 계약소송을 제조자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不法行爲訴訟에 있어서는 사용자와 공급자의 지위에 차이가 없다.¹¹²⁾

사용자가 공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급자도 제조자에 대해 동일한 청구권을 가지며, 사용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다만 내부관계에서(inter partes)만 효력이 있으므로 공급자와 제조자 사이의 다음 소송을 구속하지 않는다.

(3) 第3者

제3자란 제조자, 공급자 및 사용자와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법은 타인의 과실행위로 인한 피해자 모두에게 불법행위소송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와 사용자를 구별할 실익은 없다.¹¹³⁾

112) 한봉희, 전제서, pp. 279~330.

1) 第3者の 使用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

제3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 제3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제3자는 사용자의 과실을 포함한 소송의 모든 구성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첫째, 제조물의 결함과 둘째, 결함과 손해의 '相當因果關係'를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過失推定の 原則은 제조자에 대한 소송에만 적용되므로 사용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는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立證責任轉換理論이 인정되지 않는다.

독일법상 嚴格責任은 특별법에 의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嚴格責任도 역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법(AMG)은 사용자만을 위한 損害賠償請求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한 嚴格責任의 보장은 원자력법(AtomG)만이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에 관하여 이러한 입법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기타 嚴格責任을 인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① 道路交通法(Straßenverkehrsgesetz), ② 鐵道責任法(Eisenbahn-Haftpflichtgesetz), ③ 航空交通法(Luftverkehrsgesetz)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법률은 제3자의 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嚴格責任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근거는 그 자체가 위험성이 있는 일정한 장비(예: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의 부적당한 운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제조물의 결함에 관계 없이 제조물의 소유자 및 운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예외적으로 제3자도 제3자의 보호를 위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약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제3자는 직접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약에 대한 계약상 보호의 형유자"라고 부를 수 있으며, 가족 및 계약당사자의 고용인등이 여기에 속한다. 법원은 묵시담보계약 및 '사회계약(social contract)'에서 생기는 일반적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소송을 부인하고 있다.

2) 第3者の 供給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

공급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전술한 사용자에 대한 소송

113) 한봉희, 전제서, p. 276.

에서와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사용자와는 달리 공급자는 보통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없으므로 다만 의무이행을 해태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공급자는 제조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결함에는 책임이 없고, 과오설명이나 통지의 결여 등과 같은 자신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공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제3자가 부담한다. 즉 공급자가 제조자의 판매기관이거나 법적·경제적으로 親會社에 종속되어 있는 때에는 공급자도 제조자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조자가 제조물의 공급을 위해 親會社의 지시에 따라 경영되는 子會社를 설립한 경우에는 공급자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製造物責任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회피하려는 제조자의 고의가 추정되며, 공급자도 역시 설계 및 제조상의 결함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¹¹⁴⁾

3) 第3者の 製造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

제조자는 오직 그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결함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조자에 대한 損害賠償請求에 있어서도 역시 공급자에 대한 설명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제조자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는 立證責任의 전환이 인정되므로 일단 제조물의 결함이 입증된 경우에는 제조자의 과실이 추정된다.



5. 諸理論의 檢討

독일 제조물책임법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제조물책임은 실정법의 해석을 통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 ② 계약외 제조물책임은 불법행위법에 기초하며, 고의 및 과실을 필요요건으로 하고 있다.
- ③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시에 제기할 수 있다.
- ④ 특별법에 명백한 규정이 없는 한, 독일에서는 嚴格責任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14) 한봉희, 전거서, p. 278.

⑤ 立證責任轉換의 원칙은 법원에 의하여 발전하였으며, 따라서 피해자는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게 되었다.

⑥ 현재는 제조물책임의 많은 영역이 보험제도에 의해서 보완되고 있다.

법원은 소비자 및 제조자 보호를 위하여 점점 더 製造物責任法을 발전시키고 있다. 법률도 역시 이러한 발전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製造物責任訴訟은 관심의 증표로서 제조물책임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소비자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제조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보험의 필요성과 일종의 사회심리적 경향은 製造物責任法이 점차 중요성을 갖게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제조자와 공급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그들의 노력을 계속하여 개선함으로써 악화되고 있는 製造物責任法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¹¹⁵⁾

第 3 節 日本의 製造物責任制度

1. 製造物責任立法의 經過

일본에서는 2차대전 이후 가네미유증사건¹¹⁶⁾, 영비소밀크중독사건¹¹⁷⁾, Thalidomide 사건¹¹⁸⁾, 스펀병 사건¹¹⁹⁾, 등의 대규모의 심각한 제품사고가 발생하거나, 미국의 판

115) 독일은 1989년에 製造物責任法(Produkthaftungsgesetz-ProdHaftG vom 15. Dezember 1989)을 제정하였으며,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16) 이진용, “제조물책임의 비교법적 고찰”,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 161. 이 사건은 식용유의 제조과정에서 유해한 PCB가 혼입하여, 이것을 섭취한 소비자에게 유기염소중독에 의한 전신성중독 등의 중한 질병이 다발한 사건이다.

117) 이 사건은 유아용의 드라이밀크에 유아안정제로서 첨가한 알루미늄제조 부산물인 제2인산 소다에 불순물인 비소가 혼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라이밀크를 음용한 유아가 비소중독에 걸린 사건으로서 처음에는 제조물책임의 시점으로부터의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도의상 및 관습상의 문제로서 처리되었지만, 상당기간 지난 후에 피해자의 면접조사에 의해, 피해자 중에 쉽게 피로를 느끼는 등의 신체증상, 간질,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의 이상이 많이 발견되어 그것이 비소중독의 후유증임이 판명되어 결국 화해가 성립된 사건이다.

례법의 전개가 소개되거나 하여 제조물책임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특히 1969년 6월의 결함차사건¹²⁰⁾은 법률문제로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보호부회에 설치된 소비자구제특별연구위원회는 제조물책임의 무과실책임을 요구하는 최종보고서를 1975년 4월에 제출하였다. 국민생활심의회는 내각총리대신의 자문기관이다.

我妻榮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연구회에서 ‘제조물책임법요강시안’을 1975년 10월에 공표하였는데, 無過失責任을 골자로 하는 이 시안은 미국의 제2차 불법행위법 Restatement §402 A 와 EC 지령안 등을 참조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후 製造物責任法の 입법화논의는 소강상태가 계속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미국이나 EC지령(1985)의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도 製造物責任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입법론이 풍성하게 일기 시작하였다. 국민생활심의회, 통상성 산하의 제품안전협회는 행정적 차원에서 제조물책임법의 기초가 되는 비교법적 조사, 실태조사, 판례분석, 기업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 논점정리 등 입법에 필요한 연구를 계속하였다.

1990년 사법학회민법부회 심포지움에서 ‘製造物責任立法化에 대한 提案’이 발표되었으며, 이것은 EC지령과 유럽제국의 국내입법을 참조하고 있다.

이 밖에 1990년대에 들어서 일본 변호사연합회의 제조물책임법요강(1991 : 平成 3년), 동경변호사회의 제조물책임법시안(1991), 사회당의 제조물책임법안(1992), 공명당의 제조물책임법안(1992)이 발표되었다. 이들 법안은 모두 미국 제조물책임법과 EC지령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제13차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정책부회의 최종보고서(1992. 10)는 製造物責任法

118) 이 사건은 thalidomide제제를 임신초기에 복용한 모친으로부터 선천성 장애가 있는 채 태어난 사건이다. 여러 곳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국가·기업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화해가 성립되었다.

119) 이 사건(1971)은 세균성 설사 등의 치료약 Chinofom의 과잉투여 때문에 하반신마비와 중한 시력장애 등을 일으킨 환자가 속출한 사건으로서 처음에는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원인이 규명되어 피해자가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되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120) 결함차문제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수출된 일본의 양대메이커의 승용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회수된 사실이 미국의 신문에 보도되고, 그것이 일본의 신문에서도 대대적으로 취급되어, 결함차의 회수 등이 크게 사회문제로 되었던 사건이다.

제정의 출발점이 된 보고서로서 그 내용은 관계 각 성은 製造物責任制度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소비자피해 방지·구제책에 관하여 관계 각 성의 제품에 대한 검토와 정리를 1년 이내에 하도록 한 것이다. 각 성은 국민생활심의회의 보고를 받고 통상성·후생성·건설성·운수성 등은 소관제품에 대한 검토·정리를 한 결과 1993년(平成 5년) 10월부터 11개월에 걸쳐 기본적으로 製造物責任法の 제정을 지지한다는 결론이 보고되었다.

제14차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각 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1993년(平成 5년) 12월에 “製造物責任制度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소비자피해방지·구제의 존재형식”이라는 최종보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 제출하고, 製造物責任法の立法化를 급히 서둘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14차 보고서의 최대핵심은 缺陷製造物로 인한 소비자피해구제에 대한 민사책임원칙으로서 과실책임이 아니라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無過失責任을 채택한 것이었다.¹²¹⁾

동 보고서에서는 소액피해에 있어서의 재판의 분쟁처리의 존재형식, 제품사고에 있어서 원인구명기관의 존재형식,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제도의 존재형식 등에 관하여 소비자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관련업계의 민간기관의 활용에 대한 기대, 나아가서 소비생활센터 등 국가와 지방의 공공단체기관의 충실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제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제정에 있어서 법무성 법제심의회 민법부회의 재산법소위원회의 활동도 큰 역할을 하였다. 재산법소위에서는 국민생활심의회의 보고를 받아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적 연구회’에서 1993년 12월 “製造物責任立法에 관한 기초적 연구”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법무성 민사국에서도 국장의 사적 연구회에서 1993년 10월 “민법에 있어서 製造物責任制度”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두 보고서는 방대한 자료를 참조하고 철저히 검토한 자료이다.

법무대신의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 민법부회는 1993년 12월 7일에 재산법소위원회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하여”라는 부제가 달린 보고를 받고 동년 12월 16일 법제심의회 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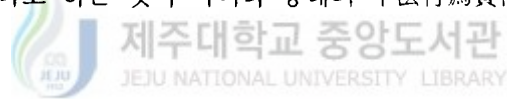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초안된 제조물책임법안은 1994년 4월 12일 각의결정을 거쳐

121) 한봉희, 전계서, p. 545; 이진용, “제조물책임의 비교법적 고찰”,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 545.

동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동 법안은 1994년 6월 16일 중의원에서 가결되고 참의원에서도 동년 6월 22일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이와 같이 제정된 製造物責任法은 6월 24일의 각의를 거쳐 1994년 7월 1일 법률 85호로 공포되고, 1년 후인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 製造物責任法의 內容

일본의 製造物責任法의 내용을 개관하면, 먼저 製造物責任法은 製造物責任에 관한 제도중 不法行爲에 기한 損害賠償責任의 기본원칙에 관한 부분을 입법화하려고 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의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 동안 製造物責任制度로서 논의되어 온 문제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 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전대책·사고원인 규명제도·분쟁해결제도·손해배상의무의 이행확보조치 등의 제문제가 있는데, 제조물책임법은 이들 제문제 중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목적·내용·정의·제조물책임·면책사유·기간의 제한·민법의 적용의 6개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이 2개항이 규정되어 있다. 製造物責任을 종래의 不法行爲責任, 契約責任에 추가하여 인정한 것으로서 앞으로 製造物責任만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不法行爲責任 등도 종래 대로 인정되는 것이다.



(1) 法制定目的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¹²²⁾.

(2) 製造物責任原則

122)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사람의 生命·身體 또는 財産에 대한 피해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의 제조자 등의 손해배상의 책임에 관하여 조정하는 것에 의해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는 한봉희, 전제서, pp. 658-659, 부록 참조.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자연인 및 법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때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無過失責任을 진다(제3조본문).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를 규정한 일본민법 제416조가 유추적용된다(일본 민법 제416조는 우리 민법 제393조와 같다). 다만 그 손해가 해당 제조물에만 발생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동조단서). 그러나 擴大損害(해당 제조물 이외의 인적·물적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조물 자체의 손해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국이나 EC제조물책임법에서는 확대손해의 유무를 묻지 않고 해당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같이 擴大損害를 損害賠償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3) 製造物の 範圍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다(제2조1항). 따라서 부동산과 미가공농수산물 은 제외된다.¹²³⁾ 대체로 각국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대상에서 미가공농수산물을 제외하고 있다. EC지령에서는 未加工農水産物은 선택(option)사항이다. 일본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에 한하므로(일본 민법 제85조) 전기 등 에너지, 서비스제공,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등은 제조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혈액제제, 생약편은 제조물에 포함된다. 미국에서는 전기가 제조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의 견해가 갈라져 있으나 EC지령에서는 가입국의 국내법상의 차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전기를 제조물로 규정하고 있다(EC지령 제2조). 그리고 에너지공급기거나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動産으로서 본 법의 대상이 된다.

(4) 責任主體(製造者の 範圍)

본 법 제2조 3항은 제조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① 제조자, 공업자, 수입업자(제2조3항1호), ② 표시제조업자(제2조 3항2호),¹²⁴⁾ ③ 실질적 표시제조업자(제2조 3항3호),¹²⁵⁾ 이와 같이 본 법은 책임주체로서 3종을 예시하고 있다.

123) 이진용, 전계논문, p. 168.

124) 表示製造者란 제조물에 자기의 성명, 상호, 상표나 그 밖의 표시를 한 자이거나 제조자로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한 자를 말한다.

125) 이것은 製造業者로 오인할 만한 성명·상표 등을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판매업자가 해당 제

본 법은 판매업자를 책임주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¹²⁶⁾ 그러나 서구선진국의 製造物責任法에서는 판매업자도 제조업자와 같이 책임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이나 EC지령에서는 제조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공급자나 판매자의 책임을 인정한다.¹²⁷⁾

(5) 缺陷의 意義 및 責任要件

제조물의 결함(defect)은 책임발생요건의 핵이다. 민법상의 不法行爲에서의 책임요건은 과실임에 반하여,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책임요건은 결함인 것이다. 과실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행위의 문제임에 대해서 결함은 제조물 그 자체의 객관적인 성질에 관한 것이다. 대체로 현대의 製造物責任法은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여 嚴格責任 또는 無過失責任을 인정한다. 따라서 결함의 의미를 결정하는 문제가 製造物責任法의 해석론상 최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일본의 종래의 판례에 대해서 ‘과실책임의 옷을 입은 무과실책임’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함의 종류로서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지시·경고상의 결함 등 3종유가 있다. 결함유무의 판단은 해당 제조물이 ‘일반적으로 있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는 것이므로(제2조2항 후단) 안전성에 관계없는 단순한 품질상의 하자는 본법상의 결함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 법 제2조2항에서 본 결함판단기준은 ① 해당 제조물의 특성, ② 통상 예견되는 사용상태, ③ 해당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 ④ 그 밖의 해당 제조물에 관계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C지령은 결함을 정의하기를 해당 제조품의 표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용도, 시장에 출하된 시기 등 3종의 사정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사람이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하였을 때 결함이 된다고 한다.¹²⁸⁾ 일본 製造物責任法의 결함은 EC지령의 결함개념과 유사하다.¹²⁹⁾

조물의 설계나 제조에 깊이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준 것처럼 표시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믿어 버리는 경우를 말한다.

126) 이진용, 전제논문, p. 168.

127) EC지령 제3조 1항.

128) EC지령 제6조 1항.

129) 이진용, 전제논문, p. 167.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결함의 종류는 製造上の 缺陷, 設計上の 缺陷, 指示・警告上の 缺陷 등 3종이 있다. 미국 제조물책임법상 결함판단기준은 표준일탈기준, 소비자대기기준·위험효용기준 등이 있는데, 현재의 압도적 견해는 위험효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立證責任

입증책임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다. 그러나 재판실무에서는 경험칙이나 사실상의 추정원칙을 사안에 따라 활용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증부담이 경감되고 있다.

EC지령에서 피해자는 손해, 결함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것을 요한다(제4조). 그러나 EC회원국의 국내법에서는 법원실무에서 입증책임의 轉換法理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立證負擔이 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³⁰⁾

(7) 開發危險의 抗辯

일본의 製造物責任法 제정에 있어서도 EC지령 제정에 있어서처럼 開發危險의 抗辯을 도입할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첨예한 논쟁이 있었으나, 결국 이를 수용하여 免責事由로 하였다.¹³¹⁾ 이는 미국 대다수주의 製造物責任法에서 인정하고 있는 技術水準(state of the art)의 抗辯과 유사하다. 開發危險이란 제조물이 유통에 놓인 시점에 있어서(제조물이 인도된 시점) 과학기술의 수준으로는 예견할 수 없었던 위험(결함)을 의미한다.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신제품의 개발에 소극적이고, 그 결과 기술혁신의 태만으로 인한 불이익이 소비자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C지령도 그러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과학기술의 수준은 입수 가능한 최고의 과학·기술수준을 지칭한다. 주관적인 특정인의 지식을 문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의 총체를 말한다. 왜냐하면 이 항변을 쉽게 인정하면 無過失責任을 채택한 의의가 감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開發危險의 抗辯의 기준은 명확함을 요며, 그것이 불명확할 때 開發危險 抗辯의

130) 이진용, 전제논문, p. 169.

131) 제4조1호.

유무를 둘러싸고 분쟁이 장기화된든지 또는 이 항변이 남용되어 被害者救濟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제조물책임법은 부품·원재료 제조자의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 免責事由를 규정하고 있다.¹³²⁾ 본 법에서는 제조물에 대하여 완성품·부품·원재료를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품제조자도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다만 완성품 제조자의 설계상의 지시에 따라 제조하였는데도 결함이 생긴 경우 부품제조자는 그 결함에 대하여 과실이 없으면 면책된다.

(8) 損害賠償의 範圍

본 법에 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은 책임원인을 과실이 아니라 결함에서 구하기 때문에 그 본질은 不法行爲責任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도 不法行爲法上的 손해론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일본 민법 제416조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¹³³⁾

본 법은 손해가 제조물 그 자체(product itself)에만 생기고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규정한다.¹³⁴⁾ 따라서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래 製造物責任制度는 제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safety)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나타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9) 期間의 制限

損害賠償請求權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제조자 등이 제조물을 인도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제5조 1항).

10년의 기간은 위험이 신체에 오래 축적되고 있는 경우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이 규정은 피해자보호를 위한 除斥

132) 제4조2항.

133) 우리민법 제393조, 이진용, 전제논문, p. 170.

134) 일본 제조물책임법 제3조 단서

期間의 특별규정이다. EC지령은 제소기간을 3년(EC지령 제10조), 消滅時效期間을 10年으로 하고 있다(EC지령 제11조). EC지령에는 이와 같은 예외규정이 없다(제5조 2항 전단).¹³⁵⁾

(10) 責任限度額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책임한도액에 대한 규정이 없다. EC지령은 동일한 결함을 가진 동종제품에 기인하는 사망 또는 인적 손해에 대해서 그 한도액이 7,000만 에유(ECU)이하이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1항)

(11) 民法의 適用

본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규정이 적용된다. 그러한 민법 규정으로서는 과실상계(일본 민법 제722조 2항), 공동불법행위(일본 민법 제719조), 금전배상의 원칙(일민 제722조 1항. 제417조), 공서양속(일민 제90조)조항 등이 적용된다.

(12) 附則의 內容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고(1995. 7. 1),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제조자 등이 인도한 제조물에 본 법이 적용된다.

3. 諸理論의 檢討

일본의 製造物責任法은 국제적 조류에 부응하여 각계의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관하여 입법을 시작하자고 하는 대세에 따라 입법을 먼저 시도한 것으로, 이는 법 기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 또는 민법 이외의 다른 법에 의한 대처가 필요한 부분은 슬쩍 피한 채 입법이 이루어진 듯한 인상이다. 그리고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일면이 있다.

그러나 일본 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고 있다.¹³⁶⁾

135) 본 법 제5조는 일본 민법 제72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특칙규정이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하게는 이진용, 전제논문, p. 173.

첫째, 종래 논의 되었던 製造物 責任立法時 논의 되어져야 할 모든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다만 그 대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缺陷製造物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결함의 추정’이라든가 ‘因果關係의 推定’ 등을 슬쩍 피한 채 입법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일본에서는 EC지령을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입법시 크게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他山之石으로 삼아 정확한 실태조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세계에서 가장 잘 된 입법을 행했으면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입법과정에서 정부의 관여가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 제도에 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¹³⁷⁾

第 4 節 기타 國家의 立法動向

1. EU 會員國의 立法動向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의 책임이 각국마다 가지각색이어서, 그 차이가 각국의 경쟁을 왜곡하여 (경쟁조건의 불공평) 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에 영향을 줌과 동시에, 제품사고의 피해자에게 다른 보호를 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가맹각국의 법률을 조정하여 통일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십년간의 이론을 거쳐 1985년 7월에 「EC지령」이 채택되었다. EU가맹 12개국 중 현재까지의 프랑스를 제외한 11개국에서 EC지령에 기하여 국제법이 정비되고 있다.¹³⁸⁾

EC지령 전문에서 「제품의 결함에 의해 생긴 손해의 제조자의 책임에 관한 각 가맹국의 법규정은 그 조정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그 현존하는 차이는 경쟁을

136) 이진용, “제조물책임의 비교법적 고찰”,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P. 175.

137) 이치영, 전제논문, p. 148.

138)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전제서, p. 3.

왜곡시키고, EC시장내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상품유통을 저해하며, 그리고 결합있는 제품에 의한 건강 또는 재산에의 손해에 대한 소비자의 보호의 정도를 다르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지령채택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책임원칙에 관해서는 「최신의 기술에 의한 생산에 내재하는 위험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전문성이 증대한 현대의 특유한 문제는 제조자의 無過失責任에 의해서만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령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미가공농산물 등에 대한 적용 (b) 開發危險의 抗辯의 부정 및 제한 (c) 동일 결합제조물에 기인하는 인적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의 설정의 세가지 점에 관해서는 각국간의 조정이 곤란했기 때문에 각국의 판단에 맡기는 option조항으로 하고 있다. 그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조자는 제조물의 결합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하여 無過失責任을 부담한다(제1조)

② 미가공농산물(수렵물 등을 포함)을 제외한 動産(전기를 포함)에 적용한다. 動産이 다른 動産 또는 不動産에 조립되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미가공농산물이란 제1차가공을 받은 제품을 제외한 농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말한다(제2조). 다만, 가맹국의 판단에 의해 미가공농산물을 포함할 수 있다(option 조항, 제15조 제1항(a)).

③ 제조자에는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 부품의 제조자, 제조물에 명칭상표 등을 붙여 자기를 제조자로서 표시한 자가 포함된다(제3조 제1항). 제조물의 수입업자도 제조자로 본다(제3조 제2항). 제품의 제조자를 특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공급자를 제조자로 본다. 다만, 공급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피해자에 대하여 제조자 또는 당해 공급업자에게 제품을 공급한 자를 고지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

수입품에 관해서는 그 제조자의 명칭에 표시되어 있어도 수입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취급한다(제3조 제3항).

④ 손해, 결합 및 결합과 손해와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제4조).

⑤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복수의 책임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각국법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제5조)

⑥ 제조물은 제조물의 외관을 합리적으로 예기하는 것이 가능했던 제조물의

사용, 제조물이 유통과정에 놓인 시기를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한 다음에, 정당하게 기대되어야 할 안전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한다(제6조 제1항). 신제품이 개발되거나 제품의 개량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제6조 제2항).

⑦ 당해 제조자가 제조물을 유통과정에 놓은 시점의 과학지식 및 기술지식의 수준에 의해서는, 결함의 존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¹³⁹⁾(제7조(e)). 다만, 가맹국의 판단에 의해 제조자에게 開發危險責任을 과할 수 있다(option조항, 제15조 제1항(b)). 그 밖의 다른 면책사유로는 제조자가 그 제조물을 유통에 놓지 않은 것(제7조(a)), 손해를 생기게 한 결함은 제사정을 고려하면 그 제조물이 제조자에 의해 유통에 놓여진 때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후에 생겼을 개연성이 있는 것(제7조(b)), 제조물이 매매 또는 경제적 목적을 수반하는 유통을 위해 제조된 것이 아니고, 또한 사업활동으로서 제조되거나 또는 유통에 놓여진 것이 아닌 것(제7조(c)), 구성부품의 제조자에 대해서는 그 결함이 구성부품이 조립된 제조물, 제조물 구조 또는 그 제조물의 제조자가 한 지시에 기인한 것(제7조(f))이 있다. 이들 모든 면책사유는 제조자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다.

⑧ 제조물의 결함과 제3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손해가 생긴 경우, 제조자의 책임을 경감하지 않는다(제8조 제1항). 제조물의 결함과 피해자측의 과실의 경합에 의해 손해가 생긴 경우 제조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8조 제2항).

⑨ 생명·신체침해에 기인하는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가맹국의 판단에 의해 통상의 결함을 갖는 동일제조물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총액에 관하여 칠천만ECU¹⁴⁰⁾을 하회하지 않는 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option조항, 제6조 제1항).

결함있는 제품 이외의 물의 해손 또는 멸실에 의한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動産(통상 개인적인 사용·소비가 의도되고 있고, 피해자가 주로 개인적인 사용·소비를 위해 사용하고 있던 것)에 한정

139) 이를 개발위험의 항변이라 한다

140) EC (European Currency Unit)

하여 오백ECU를 면책액으로 한다. 무형손해(비경제적 손해)의 취급은 가맹국의 국내법에 의한 것으로 한다(제9조).

⑩ 손해배상절차에 관한 制限期間(원고가 손해, 결함 및 제조자를 인식하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개시)을 3년으로 한다(제10조).

⑪ 손해를 야기한 제조물이 제조자에 의해 유통과정에 놓여진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는 것에 의해 製造物責任에 기한 損害賠償請求權이 소멸한다(제11조).

⑫ 제조자의 책임을 특약에 의해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없다(제12조).

⑬ EC지령에 의해 製造物責任을 인정하는 것이 契約責任, 契約外的 責任 등의 기존의 책임제도에 기해 피해자가 갖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제13조). 製造物責任法은 기존의 책임제도에 추가하여 새로운 製造物責任을 인정하는 것에 의하여 피해를 좀 더 잘 보호하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EC지령은 가맹국간의 법의 접근, 경쟁조건의 공평화를 목적으로 하여 각국의 판례를 포함한 현행법의 상황과 개혁의 방향까지도 고려하면서 정치적 타협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EC주요국을 보는 한 각국의 경우 이미 판례 등에 의해 소비자보호에 도움이 되는 법리가 구축되어 있으며, EC지령은 이와 같은 상황을 답습한 형태의 것으로 되었다. 그렇지만 이들 나라에 있어서도 판례에 의한 대응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또한 실제의 분쟁해결에 대한 기여라는 점에서도 EC지령에 기한 無過失責任을 도입하는 것은 법리상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C지령은 각 회원국에 대하여 지령 통고일로부터 늦어도 3년 이내에 지령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 규칙 및 행정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고 의무지웠으며, 이후 차례로 동 지령에 따른 입법을 하기 시작하여 현재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회원국은 입법을 완료하였다. 여기서는 다만, 독일에 관하여서는 다른 절에서 언급한다.

(1) 英國

영국에서는 1987년 5월 15일에 “1987년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1987)”을 제정하였다. 이 법 제1장은 제조물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EC지령을 따르고 있다.¹⁴¹⁾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 無過失責任原則을 채택하여 피해자는 제조자의 과실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제2조 1항) ② 제조물의 범위는 동산 및 전기로 하며 미가공상품은 제외하고(제1조, 제2조 4항) ③ 책임주체인 제조자의 범위는 EC지령과 같으며(제1조, 제2조 2,3항) ④ 제조물의 안전성이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안전성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내포되어 있는 부품의 안전성 및 재산상 피해의 위험과 관련한 안전성, 그리고 사망 또는 신체적 피해의 위험과 관련된 안전성을 포함하며(제3조) ⑤ 손해는 사망, 신체상해, 부동산을 포함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말하고(제5조) ⑥ 製造者の 抗辯事由는 EC지령과 유사하다(제4조).

(2) 프랑스

프랑스정부는 EC지령 공포 이후 “제조물의 안전성의 결함에 의한 책임에 관하여 프랑스 민법전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1990년 5월 23일 결정하고 의회에 제출하였다. 아직껏 정식으로 공포·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동 법안은 민법 제1382조 이하에 제4장의2 결함제조물에 의한 책임을 신설하고 이하에 제3관 제조물의 안전성의 결함에 의한 책임을 제1387조의19에서 28에 걸쳐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¹⁴²⁾

우선 EC지령의 선택조항에 대하여는 ① 제1차 농산물·수렵물예의 적용이 제외되지 않고 ②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지 않으며 ③ 책임최고한도액도 설정하지 않았다.

EC지령과의 차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物的 損害의 對象

물건에 대하여 개인용·영업용의 구별을 문제삼지 않고 제조물책임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② 물적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도 보호의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정부법안 단계에서는 사업자간에는 유효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업자와 비사업자 내지 소비자와의 사이에 사업자의 경제력 남용에 의하여 면책조항이 추가된 것이 명확하고 사업자에게 과대한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41) 이진용, 전제논문, p. 134; 한봉희, pp. 286-312.

142) 한봉희, 전제서, pp. 313-334.

③ 責任主體

모든 사업상의 제품의 공급자를 책임주체로 하고 있다.

④ 責任期間 및 消滅時效

예비초안인 제5초안 및 법률안 단계에서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과 10년의 除斥期間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민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이 규정을 삭제하여 민법의 일반규정에 의하게 되었다. 민법에 있어서 일반 계약책임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의 소멸시효는 30년(프랑스민법 제2262조)이므로 그 점에서 EC지령에 반대되는 결과가 되었다.

(3)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1988년 5월 24일에 대통령령 제224호로 製造物責任法에 관한 입법을 하였다. 동 대통령령은 EC지령이 정한 기한인 1988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탈리아 製造物責任法은 EC지령을 충실히 국내입법화 하였다고 말하여진다.¹⁴³⁾

우선 선택조항에 대하여는 ① 미가공의 제1차 농산물·수렵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제2조 3항), ②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며(제6조), ③ 人的損害의 責任限度額을 인정하지 않는다(제11조 1항).

EC지령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缺陷의 定意

결함에 대하여 EC지령도 정의하고 있으나, 이탈리아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추가로 “제조물은 동일한 생산과정에 있어서 다른 제품이 통상 가지는 안전성을 가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한다.”(제5조 3항)고 규정하여 결함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② 物的 損害

物的損害는 총액 75만리라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배상한다.(제11조 2항)

③ 責任主體 - 供給者의 責任

결함을 가진 제품의 제조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EC지령 “제조물의 공급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피해자에 대하여 그 제조자 또는 당해 공급자에 그 제조물을

143) 한봉희, 전게서, pp 335-359.

공급한 자를 고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제조물의 각 공급자를 그 제조자로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이탈리아 제조물책임법은 피해자가 공급자에 대하여 제조자를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고 그 서면에는 ㉞ 손해를 야기한 제품 ㉟ 사고가 발생한 장소 ㊱ 그 제품을 취득한 합리적인 시기를 기재하여야 한다(제4조 1,2항).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서면을 수령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조자의 신원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공급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4)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는 1989년 4월 21일에 “결합제조물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1989년 4월 21일 룩셈부르크법을 제정하여 동년 5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¹⁴⁴⁾

우선 EC지령의 선택조항에 대하여는 ① 제1차 농산물·수렵물예의 적용을 제외하지 않고(제2조 반대해석) ②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지 않으며(제4조 반대해석) ③ 인적손해의 책임한도액의 설정도 하지 않아 EC회원국 중 가장 제조자에게 엄격한 선택을 하고 있다.

EC지령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物的 損害

물적손해에 대하여는 500ECU를 손해발생일의 환율로 룩셈부르크 프랑으로 환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면책한다(제2조 4항).

② 損害의 概念

룩셈부르크법에서는 EC지령과 같이 人的損害, 物的損害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한 “모든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4항 (a)). 일반적인 효과는 EC지령과 유사한 것으로 되나 룩셈부르크법의 손해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과 비경제적 손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된다.

(5) 덴마크

덴마크 제조물책임법(Products Liability Act 1989)은 1989년 6월 7일에 제정되어 동년 동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¹⁴⁵⁾.

144) 이치영, 전제논문, p. 76.

145) 이치영, 전제논문, p. 76.

우선 선택조항에 대하여는 ① 미가공의 제1차 농산물·수렵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제3조 2항), ②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며(제7조), ③ 人的損害의 責任額 限度를 인정하지 않는다(제8조).

EC지령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物的損害

물적손해에 대하여는 4천 덴마크 크로네가 공제된다(제8조).

② 複數原因이 있는 경우 製造者의 責任減輕 否定

손해가 제품의 결함과 제3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EC지령 제8조 1항은 제조자의 책임을 경감하지 않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음에 대하여 덴마크 製造物責任法에는 그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규정의 문언 그대로를 비교하면 덴마크 製造物責任法이 제조자에 관대한 것으로 비치나 그것은 EC지령 제8조 1항과 같은 법리가 EC지령 도입 이전의 덴마크에 있어서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양자의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③ 責任主體 - 流通業者의 責任의 特別

덴마크 제조물책임법에 특유한 규정은 유통업자가 피해자 및 유통과정에 참가한 후의 유통업자에 대하여 직접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제10조). 이것은 제품의 유통과정에 참가한 자는 각자 자기의 전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덴마크 판례법상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④ 덴마크 제조물책임법은 EC지령의 내용에 더하여 제조자가 EC지역 외의 주민인 경우에는 공급자는 배상청구자가 그로부터 책임을 추궁하도록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 있다(제4조 5항).

(6) 포르투갈

포르투갈은 1989년 11월 6일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1989년 11월 6일 포르투갈령 제383/89호(Decree - Law No. 383/89 of November 6, 1986)”의 형식으로 국내입법을 결정하고 이것을 공포한 후 동년 동월 21일부터 시행한다¹⁴⁶⁾.

우선 선택조항에 대하여는 ① 미가공의 제1차 농산물·수렵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제3조 2항) ②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며(제5조) ③ 인적손해의 책임한

146) 이치영, 전제논문, p. 76.

도액을 100억에스쿠도로 설정하고 있다(제9조 1항).

EC지령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財產上 損害의 免責

재산상의 손해는 7만에스쿠도를 넘는 경우에만 배상한다(제8조 2항)

② 製造物의 範圍

포르투갈 製造物責任法令에는 전기를 제조물에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다.

③ 立證責任 規定의 不存在

EC지령 제4조에서는 결함, 손해,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포르투갈 제조물책임법령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다. 이것은 포르투갈 민법에는 제조물책임은 契約當事者의 債務不履行責任으로 구성되어 손해, 결함 및 결함과 손해의 因果關係의 立證責任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④ 賠償責任總額의 特別

위에서 본 인적손해의 책임최고한도액에 관하여 그 위에 “법관은 동일한 행위에 의해 장래 새로이 손해가 발생하고 후속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참작하여 각 피해자에 대하여 잠정적인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9조 2항).

⑤ 責任主體

포르투갈 製造物責任法令은 공급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피해자는 공급자에게 제조자를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공급자가 3개월 이내에 제조자·수입자 혹은 전공급자의 신원을 서면으로 고지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자로 간주하지 않는다(제2조 2항 (b)). 여기의 “전공급자”라 함은 자기에게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직전의 공급자에 한하지 않고 그 보다 이전의 공급자도 포함한다.

(7)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1838년에 제정된 구민법전을 개정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 1990년 9월 13일에 “네덜란드왕국 1990년 9월 13일 민법전을 결함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령에 적합하게 하는 법률(Wet van 13 September 1990, houdende aanpassing van het Burgerlijk Wetboek aan de Raad van de

Gemeenschappen inzake de aansprakelijkheid voor produkten met gebreken)"을 제정하여
구민법전의 개정의 형식에 의하여 EC지령을 입법하고 이것을 동 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 후 1992년 1월 1일 현재의 신민법전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고 제조
물책임에 관한 규정은 제6장 3절 2관(제185조부터 제197조)으로 되어 있다¹⁴⁷⁾.

우선 선택조항에 대하여는 ① 미가공의 제1차 농산물·수렵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신민법전 제187조 1항) ②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며(제185조 1항(e)) ③
인적손해의 책임한도액을 설정하지 않는다.

EC지령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社會保障制度·保險制度와의 關係

네덜란드 製造物責任法の 특징은 사회보험단체와 보험회사의 이득을 금하는 규
정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즉 EC지령 및 민법에 기한 권리에 관해서는 상법전에
의한 대위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97조 2항). 또한 각종 사회
보장제도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민법상의 책임총액을 결정할 때는 제
조물책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제197조 1항)

② 物的 損害의 免責

물적손해에 대하여는 1263.85플로링까지 면책된다(제190조 1항 (6)).

(8) 벨기에

벨기에는 1991년 2월 25일에 “벨기에왕국 1991년 2월 25일 결함제조물법”을 제정
하여 이것을 동 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¹⁴⁸⁾.

우선 선택조항에 대하여는 ① 미가공의 제1차 농산물·수렵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제2조 3항) ②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며(제8조(e)) ③ 인적손해의 책임
한도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EC지령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제조물의 정의 - 동산의 범위상위

EC지령이 “모든 동산”을 제조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대하여 벨기에 제조물 책임
법 2조는 “유형의 (tangible) 동산”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147) 한봉희, 전계서, pp. 442-484.

148) 한봉희, 전계서, pp. 485-520.

무체재산이라고 하는 것에는 적용이 곤란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② “流通過程에 놓여진”의 定義

EC지령에는 “유통과정에 놓여진”에 대한 정의가 없다. 이에 반하여 벨기에 製造物責任法은 그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동법 6조는 “이 법률에서 유통과정에 놓는다고 함은 제3자에게 인도, 후자에의 편익의 제공 등 제조물의 이용에 관하여 제조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최초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③ 物的 損害의 免責

物的損害에 대하여는 2만 2500벨기에 프랑까지는 면책된다(제11조 2항).

(9)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1991년 12월 4일에 “아일랜드공화국 1991년 缺陷製造物責任法(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Act, 1991 [1990 No.28])”을 제정하여 동년 동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¹⁴⁹⁾.

우선 선택조항에 대하여는 ① 미가공의 제1차 농산물·수렵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제2조 2항 (c)) ②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며(제6조 (e)) ③ 인적손해의 책임한도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EC지령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물적 책임의 면책인데 물적손해에 대하여는 350파운드까지는 면책된다(제3조 1항).

(10) 그리스

그리스는 1988년 3월 31일에 국가경제부, 사법부, 산업에너지기술부, 상무부의 공동으로 “결합제조물의 제조자책임에 관한 부령(the Common Ministerial Decision implementing Directive B. 7535/1077 on Liability on the Producer for Defective Products)”의 형식으로 입법하여 1988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그 후 그리스는 부령으로 製造物責任法을 정하는 것의 위헌성이 지적되어 법률 제1961호로 제정된 “소비자보호에 관한 1991년 제정법(Act 1961/1991 “Consumer protection and Other Provisions”)”의 제3장(결합제조물의 제조자에 대한 책임, 제7조 부터 제17조)에 포함시켜 바로 잡았으며 이어 법률 제2000호(Act 2000/1991 “De-nationalization, Simplification of the

149) 이치영, “제조물책임입법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 95.

Liquidation Procedures, Enforcement of Competition Rules and Other - Provision")를 제정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주는 제품에 관하여 소비자조합이 리콜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그 시행시기는 당초의 부령에 의한다¹⁵⁰⁾.

우선 선택조항에 대하여는 ① 미가공의 제1차 농산물·수렵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제8조 2항) ②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며(제10조 (e)) ③ 인적피해의 책임한도액을 72억 384만드라크마로 설정하고 있다(제14조). EC지령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開發危險의 抗辯

開發危險의 抗辯에 대하여 EC지령과 문언에 차이가 있다. 즉 그리스법 제10조 (e)는 “제조물이 유통에 놓여진 시점에 제조자가 결함의 존재를 정당하게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라고만 규정하여 “과학지식 및 기술지식의 수준”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開發危險의 抗辯에 관한 규정이 EC지령과 크게 달라 제조자측에 유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점에 관하여 “정당하게”라는 문언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EC지령의 규정과 같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② 物的 損害의 免責

물적손해에 관하여는 5만드라크마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제8조 4항 (b)(iii)).

(11) 스페인

스페인은 1993년 2월 법무성이 작성한 제조물책임법안이 제1차 초안으로 의회에 제출되었다. 그후 1994년 7월 6일에 동 법안은 일부 수정을 받아 의회를 통과하여 다음날인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었다. 여기서는 법무성이 작성한 “제조물의 민사책임에 관한 스페인법 초안”을 보기로 한다¹⁵¹⁾.

우선 선택조항에 대하여는 ① 미가공의 제1차 농산물·수렵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제2조 1항) ②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며(제6조 1항 (e)) ③ 인적손해의

150) 이치영, 전계논문, p. 95.

151) 이치영, 전계논문, p. 95.

책임한도액을 100억쿠세도로 설정하고 있다(제11조). 그러나 開發危險의 抗辯은 의약품·식료품·인간의 소비에 제공하는 식료가공품의 사건에 있어서 이 법률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원용할 수 없다(제6조 3항).

EC지령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製造物の 範圍

EC지령과 같이 전기를 포함하며 이에 더하여 가스도 포함되고 있다(제2조).

② 物的 損害의 免責

물적손해에 대하여는 6만 5천쿠세도를 면책액으로 한다.

③ 求償權의 消滅時效

제조물책임법에 기한 배상을 한 자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다른 자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은 당해 배상금의 지급일로부터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제12조 1항 후단).

2. EFTA會員國의 立法動向

EFTA회원국은 EC회원국과의 무역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1993년 1월 1일에 발효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EC-EFTA회원국 19개국으로 구성된 유럽경제영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조약을 체결할 만큼 경제적으로 EC회원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EFTA회원국의 상당수가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이미 EC에의 가입을 신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EFTA회원국에서는 오히려 EC회원국에서보다 EC지령을 기초로 한 제조물책임의 입법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1993년 6월까지 모든 회원국에서 제조물책임의 입법이 완료되었다.

(1)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1988년 1월 21일에 “결합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1988년 1월 21일 오스트리아연방법”을 제정하여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¹⁵²⁾.

152) 이치영, 전계논문, 102-105; 한봉희, 전계서, pp. 521-541.

우선 EC지령 선택조항에 대하여는 ① 미가공의 제1차 농산물·수렵물예의 적용을 제외하고(제4조) ②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며(제8조 2항) ③ 인적손해의 책임한도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EC지령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物的 損害의 對象

오스트리아 제조물책임법은 EC지령과 달리 물적손해에 관하여 개인적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하여 이용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제1,2조). 따라서 영업용 재물에 대한 손해도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배상의 대상이 된다.

② 物的 損害의 免責

물적손해의 배상에 있어서 5천실링을 면책액으로 한다(제2조).

③ 免責條項의 有效性 - 企業間의 去來契約에 있어서의 例外

오스트리아 제조물책임법은 “인신손해 및 소비자가 입은 물적손해”에 대하여 사전에 면제 또는 제한할 수 없다고 한다(제9조). 따라서 기업간의 거래계약에 있어서는 면책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④ 損害賠償義務의 履行確保措置

제조물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 대하여 보험 등의 수단으로 배상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제16조). 그래서 그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원고가 배상을 받는 범위에서 피고기업의 경영자도 개인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1988년 12월 23일에 “노르웨이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Act 1988)”을 성립시켜 다음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후 EEA조약이 발효된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¹⁵³⁾.

우선 EC지령 선택조항에 대하여는 ① 미가공의 제1차 농산물·수렵물예의 적용을 제외하지 않고(제1장 제2조, 제3조 (d)) ②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지 않으며 ③ 인적손해의 책임한도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조자측에게 엄격한 내용을 선택하였다.

EC지령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53) 이치영, 전계논문, pp. 105-107.

① 物的 損害의 免責

물적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4천 노르웨이 크로네를 면책금액으로 한다(제2장 제3조 3항).

② 醫藥品에 관한 特別

의약품에 관하여도 규정을 두어 1건의 사고로부터 1년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8천만 노르웨이크로네 동일 의약품에 의하여 연속된 손해에 대하여는 1억 노르웨이 크로네가 책임한도액이 된다(제3장 제6조).

③ 損害賠償義務의 履行確保措置 - 醫藥品製造者의 特別

노르웨이 製造物責任法은 의약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의약품책임에 대한 보험을 확보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제3장 제4조).¹⁵⁴⁾

(3) 핀란드

핀란드는 1990년 8월 17일에 “핀란드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Act No.694)”을 제정하여 다음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핀란드도 EEA에 가입하기 위하여 1993년 1월 8일에 제조물책임법을 성립시켰다. 주요한 개정내용은 ① 전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② 원자력사고, 의약품 사고, 교통사고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손해에 대한 적용제외를 폐지하였다. 이 개정법은 EEA조약의 발효에 따라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선 EC지령 선택조항에 대하여는 ① 미가공의 제1차 농산물·수렵물체의 적용을 제외하지 않고 ②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지 않으며 ③ 인적손해의 책임한도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역시 제조자측에 엄격한 내용으로 선택하고 있다.

EC지령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物的 損害의 免責

제정 당초에는 EC지령과 같은 물적손해의 면책금액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1992년에 특별법(The Bill No.251/1992)의 제정에 의하여 면책금액을 2350마루카로 하였다.

154) 노르웨이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제조자·판매자는 의약품 책임협회의 회원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다. 의약품보험은 의약품책임협회와 보험사간에 체결되는 단체보험계약이나, 보험금은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4) 스웨덴

스웨덴은 1991년 1월 23일에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였다가 1992년 12월에 개정하여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 EC지령 선택조항에 대하여는 ① 미가공의 제1차 농산물·수렵물예의 적용을 제외하지 않고(제4조) ②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지 않으며(제8조 4항) ③ 인적손해의 책임한도액을 인정하지 않는다.¹⁵⁵⁾

EC지령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缺陷概念의 相違

스웨덴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제조물”이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성을 결한 제조물”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안전성을 결한” 것인지의 판단은 제조물의 예견가능한 사용방법, 판매형태, 사용설명, 제조물이 유통과정에 놓여진 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제3조).

② 製造者의 概念 不使用

그 책임주체로 “製造者”란 문언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자, 생산한 자 또는 조립한 자”라고 한다(제6조 1호).

③ 製造物의 範圍

제조물이라 함은 EC지령 처럼 動産으로 되어 있으나 전기가 포함되지 않는다.

④ 物的 損害의 免責

물적손해에 관하여 3500크로네를 면책금액으로 한다(제9조).

⑤ 求償權의 規定

소비자매매법 제31조나 소비자서비스법 제4장의 규정에 기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액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에 기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제11조).

(5)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1991년 3월 20일에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¹⁵⁶⁾.

155) 이치영, 전제논문, pp. 107-108.

156) 이치영, 전제논문, pp. 110-111.

EC지령 선택조항에 대하여는 ① 미가공의 제1차 농산물·수렵물예의 적용을 제외하지 않고(제4조) ②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며(제7조 1항 4호) ③ 인적손해의 책임한도액을 7천만ECU로 설정하고 있다(제8조).

(6) 스위스

스위스는 1992년 10월 9일에 연방의회에서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그 시행일을 EEA조약의 발효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2년 12월 6일의 국민투표에서 EEA에서 가입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법률은 시행되지 못했다. 그 후 스위스 정부는 1993년 2월 25일에 개정된 제조물책임법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여 성립시켜 EEA조약과는 별도로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¹⁵⁷⁾.

EC지령 선택조항에 대하여는 ① 미가공의 제1차 농산물·수렵물예의 적용을 제외하고(제2조) ②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며(제7조) ③ 인적손해의 책임한도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157) 한봉희, 「제조물책임법론」, 대왕사, 1997, pp. 360-400.

第 4 章 우리나라 製造物責任의 立法化 方向

第 1 節 製造物責任 立法化의 當爲性

1. 一般的인 當爲性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製造物責任法을 제정하기로 하는 입법의 과제로서 쟁점이 될 민사책임의 기본원칙에 관한 주요논점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⁵⁸⁾.

원래 製造物責任制度를 검토하려면 제품사고에 의한 不法行爲責任의 기본원칙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제품의 안전규제제도, 사고원인의 규명제도, 사고정보의 수집제도, 손해배상의무의 이행확보제도, 제품사고의 분쟁해결제도 등의 제조물책임제도까지도 포함한 폭넓은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지만, 不法行爲의 기본원칙에 관한 부분이 제조물책임제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제도이고 만약에 과실책임을 전제로 하여 제도의 도입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제도 도입의 의의는 크게 반감될 것이므로 제품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협의의 제조물 책임을 중심으로 입법여하에 따라서는 법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도 가능한 소송 절차상의 문제 등도 포함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대다수의 견해¹⁵⁹⁾는 현행법구조하에서는 특별히 계약책임이나 특수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여 그에 기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어느 제품사고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리는 과실책임주의원칙에 입각한 不法行爲責任에 의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소송부담이 무거워져 구제를 곤란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과실책임주의는 광해나 원자력 손해 등의 분야에서 이미 특별법

158) 국화사무처 법제예산실,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필요성 및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제96-15호 (통권 제43호); 한국법제연구원, “제조물책임의 법제화”, 국내입법 의견조사94-3, 1994. 8.

159) 광윤직, 「채권법각론」, 박영사, 1996, p. 716; 이은영, 「채권법각론」, 박영사, 1996, p. 674.

에 의해 수정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無過失責任을 도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생산기술의 고도화가 진행되어, 대량생산·대량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 過失責任主義에 입각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제품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제도를 적절하게 운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품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제조물책임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현대에 있어서도 해석에 의해 과실판단의 객관화·추상화·고도화에 의해 과실의 인정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든가 과실이나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하는 등 몇가지 해석론적 노력이 행해져 왔지만, 이것은 입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과도기적 현상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입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상당히 의견의 일치¹⁶⁰⁾를 보고 있다. 물론 이 경우의 입법이란 過失責任을 전제로 하고 立證責任의 경감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無過失責任法을 의미한다. 판례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지금 당장 無過失責任法이 행해지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기반이 정립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홍천룡 교수의 안을 기초로 1982년에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1994년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입법시안을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에 입법 건의하는 등 몇 차례의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시기상조 등의 이유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한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일본에 있어서의 製造物責任制度를 계기로 다시 입법화의 움직임이 있고 이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정부방침으로 확정한 바 있다.

그러므로 향후 논의의 중점은 製造物責任法의 입법여부가 아니라 입법의 구체적 인 내용으로 옮겨갈 것이다.

다만 입법을 하는 방식에 관하여 製造物責任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민법전 안에 과실책임 이외의 별도의 위험책임의 구성요건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 있다.¹⁶¹⁾ 결국 입법의 내용을 구성하는나와 관련되는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적용대상인 제조물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점, 법의 성격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할 것인가 피해자 일반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不法行爲의 특칙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160) 한봉희, “제조물책임의 입법방향과 그 적용법리(하)”, 고시연구, 1990. 7, pp. 32-133; 이정식,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과 입법론”,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p. 293-295

161) 연기영, “생산물손해배상책임의 입법론적 과제”, 장경학박사 고회기념논문집, 1987, p. 267.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 민법의 책임에 관한 기본원칙을 변경하는 것 말고도 裁判外紛爭解決制度, 賠償履行의 確保制度, 정보개시에 관한 제도 등 보험법·절차법적인 내용도 포함될 수 있는 점, 민법의 개정에 의할 경우 개정이 매우 어려워 그때 그때의 상황에 맞춰 개정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법의 형식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¹⁶²⁾.

제품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제조업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새로운 製造物責任法理에 의하면 과실의 요건 대신에 결함의 존재로써 족하고, 그 밖에 손해의 발생결과 손해와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여, 피해자가 제조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제조물책임의 기본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製造物責任 立法化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게 된다.

①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는 과실대신에 결함을 입증하면 족하므로 그만큼 피해자의 입증부담이 경감된다. 원래 過失責任論에서도 입증책임의 전환이론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② 제조물책임은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법리로서 제품의 수리라든가 대물의 청구 등 손해배상 이외의 다른 구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등의 계약책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은 제품사고의 구제수단 중 손해배상에 의한 구제에 관한 법리이다.

③ 제조물책임은 법적으로는 不法行爲責任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법리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제조업자와의 사이에 당사자의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인정된다. 이는 제조물책임을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가 확대 된다고 볼 수 있다.

④ 제조물책임에서는 과실이 필요없다는 의미에서 無過失責任이지, 제품으로부터

162) 이에 관하여는 대부분 학자들이 이 의견에 반대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세계적 추세에 따라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원의 1994년 입법시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4년 6월 27일 “제조물책임의 입법방향”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갖고, 이를 토대로 기본방향을 정하여 동 년 11월에 10조로 구성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조물에 분양공급주택 포함(2조1항), 제조자·표시제조자·수입자·공급자를 책임주체로 인정(제2조 2항), 개발위험의 항변 인정(제4조 4호),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의 추정(제6조), 면책특약의 금지(제7조), 과실상계에 경과실 제외(제9조) 등이다.

손해가 생기면 항상 책임을 부담하는 절대책임·결과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손해의 발생을 입증한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고 결합의 존재와 결합과 손해와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하다¹⁶³⁾. 그리고 사고의 원인으로 된 제품의 결합은 제조업자로 인하여 생긴다는 점에서, 제조업자가 제조물책임이라는 嚴格한 損害賠償責任을 부담하는 근거가 있는 것이다.

⑤ 피해자가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실책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등의 다른 법리에 의한 책임을 추급하는 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조물책임은 다른 법리에 추가하여 새로이 인정된 손해배상책임 중 無過失責任論이다.

앞에서 본 바와같이 최근에 제조물책임의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논의는 찬성론과 신중론, 그리고 반대론의 세가지 큰 흐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製造物責任의 立法化에 대한 찬성론은 주로 소비자보호단체(특히 한국소비자보호원)와 학계(특히 민사법학자)를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결합제조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기존의 전통적인 책임법리만으로는 결합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과 국제적인 조류(특히 EC회원국 및 AFTA회원국)는 제조물책임법이 거의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와 상호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신중론은 결합제조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논의에 대하여서는 찬성론에 동조하면서도 제조물책임의 입법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감안하면 제조물책임의 입법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반대론은 산업계(경제인연합회 및 각 기업체)를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는데, 제조물책임 입법으로 인한 생산비의 상승 또는 배상이행확보금

163)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로서는 첫째, 상당인과관계설로서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채무자(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제393조)고 하여 상당인과관계에 입각하고 있으며,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둘째, 보호범위설 내지 규범목적설로서 책임규범에 위반한 가해행위와 손해사이의 관계를 귀책목적에서 부터 밝힘과 동시에 피해배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문제도 귀책목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셋째, 위험성관련설로서 귀책근거적 인과관계와 책임충족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설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는 한삼인·김상찬,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 「환경연구논문집」, 제주대학교 환경연구소 제2권 제1호, 1994. 12, pp. 22~25.

등은 중소기업들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며, 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감퇴시켜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리라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製造物責任의 立法化의 필요성에 대한 이러한 논의들에 비추어 볼 때 제조물책임의 입법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실태가 어느 정도인가? 그러한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으로서 기존의 전통적인 책임법리가 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조물책임의 입법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國際的 調和의 必要性 增加

현대에 와서 제조물은 국경을 넘어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동일한 제조물이 그 결함에 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나라에 따라 제조물책임이 달라 결함제조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구제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면 이는 불공평하다. 게다가 각국의 판매업자가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고 제조자 등에게 이를 구상하려고 하더라도 나라에 따라 제조물책임이 다르면 판매업자의 구상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여 제조물의 유통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은 국제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적어도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製造物責任의 立法化에 대한 신중론 내지 반대론은 선진국에서도 1980년대 말이나 1990년대 초에 주로 제정하기 시작한 製造物責任法을 사회적 여건이나 인식이 아직 미비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製造物責任의 立法化가 선진국에 특유한 현상이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다. 유럽에서 비교적 경제수준이 떨어지는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러시아에서도 이미 製造物責任法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필리핀,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製造物責任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製造物責任의 立法化를 선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현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이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 製造物責任法을 제정·시행하지 않으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분쟁의 해결에 국제적 조화를 도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을 것이다.

3. 製造物責任法制化의 理論的根據 · 政策的 背景

(1) 理論的 根據

製造物責任의 경우 일반의 불법행위와 달리 제조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결함의 존재를 증명하면 제조자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책임요건을 정하는 이론적 근거를 다음과 같다¹⁶⁴⁾.

첫째로, 危險責任으로서 제조자 등은 제조물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기 쉽고, 그 결함의 발생을 통제하기 쉬운 입장에 있다. 그런데도 결함있는 제조물을 시장에 내놓아 위험이 현실화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결함을 작출하고 제어하기 쉬운 입장에 있는 제조자들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로, 補償責任으로서 소비자는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의해 이익을 얻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활동에 의해 이익을 얻고 있는 자는 그로부터 생긴 손해도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 사회적 공평의 견지에서 요구되고 있다.

셋째로, 信賴責任으로서 소비자는 제품의 적극적인 PR활동 등에 의해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제조자들이 이에 대하여 결함있는 제조물을 제조·출하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는 종래부터 無過失責任의 귀책의 근거라고 생각되어 온 「危險責任」, 「補償責任」, 「信賴責任」의 각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¹⁶⁵⁾.

그 밖에도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는, 제품에 자기의 이름을 붙인 표시자는 제품에 대한 保證責任이 있으므로, 자신이 제조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입증해도 면책과 감책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하거나, 현재의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시대에 있어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를 가장 싸게 회피할 수 있는 주체는 손해의 위험을 가격설정에 반영하거나, 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 사고를 억제하는데 있어서 사회적으로 가장 유리하다는 주장(손해의 공평한 부담) 등이 귀책의 근거로서 되고 있다.

164) 박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5, pp. 614-615.

165) 日本經濟企劃廳編, 「製造物責任制度の 中心とした 総合的な消費者被害防止・救済の在り方 について」, 第13次國民生活審査消費者政策部會報告とその資料, 1993, pp. 22-23.

(2) 政策的 背景

1) 消費者 保護의 必要性

제조물책임의 법리가 채용되면 결합있는 제품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법적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충실해지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의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있다¹⁶⁶⁾.

첫째로, 현대사회의 제품은 대량생산·대량선전·대량판매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이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 채 제조자와 수입업자를 신뢰하여 제품을 도입·이용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제품유통의 구조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능력의 압도적 격차로부터 제품을 신뢰한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제품의 형태에 결합이 있게 되면 제조자의 주관적 사정을 묻지 않고 제조자에게 책임을 인정해도 무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객관적인 결합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자연히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된다.

둘째로, 결합있는 제품을 만든 것 만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제조자는 되도록(기술과 경제성이 허용하는 한) 제품의 결합을 줄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결합이 없는 제품이 만들어지게 된다.

셋째로, 제조물책임이 없으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만이 손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지만 제조물책임에 의해 제조자측이 부담한 경우 결국은 제조가격에 포함되어 국민전체에 의해 조금씩 손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된다. 운 나쁘게 사고를 당한 소비자만이 손해를 부담하는 것 보다 사회전체가 부담하는 편이 부담이 분산되어 소득분배상 공평하게 되고, 사고를 당한 소비자만이 사회로부터 낙오되는 일이 없게 된다. 일종의 사회보장적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품의 결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가 당사자간에 직접적으로 해결이 도모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에 의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다.

넷째로, 製造物責任이 立法化되면 소비자들이 최우선적인 관심을 제품의 안전성에 기울이게 되어 자연히 비용의 내부화효과가 이루어져 제품가격에 제품의 결합에 의한 손해분이 추가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품

166) 小林秀之 責任編集, 「製造物責任法大系 I [理論編]」, 弘文堂, 1994, pp. 1-4

쪽이 가격이 싸지게 되어, 현재의 過失責任主義에서 생기는 위험한 제품이 가격이 싸지게 된다고 볼수 있다.¹⁶⁷⁾

2) 各國家間 調和의 必要性(國際競爭力 提高)

오늘날 대부분의 제품은 국경을 넘어 세계의 구석구석에 유통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동일한 제품이 그 결함에 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나라에 따라 책임이 달라 피해자가 구제 받기도 하고 구제 받지 못하기도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게다가 각국의 판매업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 제조자에게 구상하려 해도 나라에 따라 責任法理가 다르면 구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제품사고의 책임은 국제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조화를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간의 국제적경쟁력을 생각할 때, 특정국가만이 製造物責任法理를 채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過失責任主義에 의하고 있었던 경우, 그 나라의 기업은 자국의 소비자에 대하여 타국의 기업이 자국의 소비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여 보다 적은 부담밖에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평이 생긴다. 역으로 구상관계로부터 製造物責任法理를 채용하고 있지 않은 나라로부터의 수입에 製造物責任法理를 갖는 나라가 소극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국제적조화의 관점에서는 통일적인 법리가 각국에서 채용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우리나라에서의 製造物責任法理의 적용을 두려워하여 내수에만 치중하는 기업활동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¹⁶⁸⁾.

현재의 세계의 추세는 완전히 製造物責任法理의 채용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 유럽,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브라질, 필리핀, 일본 등 세계의 주요국이 모두 製造物責任法理의 채용을 결정·실행하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製造物責任法理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제적조화를 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비자가 희생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167) 加藤牙信, 「製造物責任法總覽」, 商事法務研究會, 1994, PP. 120~124.

168) 小林秀之, 「製造物責任法大系」, 弘文堂, 1994, PP. 1~4.

3) 企業의 自己責任 要請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공적규제가 각종법규에 의해 행해져, 외국의 제품이 들어 오려고 할 때에 실제상의 장애가 되어 비관세장벽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외국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제품의 안전성의 향상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유경쟁을 통한 자유무역질서의 확립을 공통의 목표로 하고 있는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공적규제의 완화가 국가적 관심사의 하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그 예외는 아니어서, 제 외국으로부터의 비관세장벽 이라는 비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그 규제의 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것이라 해도 규제는 가급적 줄여야 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규제는 경제적 활동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필요하다면 규제를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강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견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본래 제품의 안정성확보는 기업(제조자)이 자기책임에 의해 행해야 하는 것으로서 안이하게 행정에 의존하는 것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방해하여 민간의 활력을 저해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되,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널리 공감을 얻고 있다¹⁶⁹⁾. 즉, 자유시장질서가 제대로 기능하게 되면 규제완화정책에 의해 기업은 사고비용과 사고회피비용의 합계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되어 적은 비용으로 민간의 활력을 살려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적규제가 완화되어 기업의 자기책임원칙이 강조되게 되면, 안전확보를 게을리 한 기업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에 의해 법적책임을 추궁하기 쉽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제조물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자주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의 확보·향상에 노력하게 되고, 그것이 종래의 공적규제에 대신하여 제품의 안전성 확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¹⁷⁰⁾.

169)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제조물책임입법을 분석하는 것으로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1994.

170) 제조물책임의 법경제학적 정당성에 관하여서는 송태희, “제조물책임원칙의 법경제학적 분석”, 1995, pp. 21~25.

第 2 節 立法 性格 및 形式

1. 立法 性格

민법상 계약책임인가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인가, 전혀 별개의 손해배상책임인가 라는 문제이다. 이 입장의 차이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의 구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製造物責任法은 본질적으로 소비자보호법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된다¹⁷¹⁾.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의 개인적인 손해를 구제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법인의 재산손해도 구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버리면, 製造物責任法은 단순한 소비자보호법의 차원을 넘어 결함제품사고 일반에 관한 민사책임특별법(불법행위특별법)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⁷²⁾. 이것은 최근에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이 피해자의 구제를 직접 목적으로 규정하여, 製造物責任法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으로 파악하고, 따라서 민법에 규정이 있는 부분은 민법에 의하고 특히 특칙으로 규정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製造物責任法을 제정함에 따라 제기된 문제이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은 주로 소비자인 경우가 많지만 그밖에도 친구나 손님 혹은 아무 관계없는 제3자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¹⁷³⁾.

민법체계의 정합성과 조화를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그렇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는

171) EC지령에서는 “소비자보호”라고 하고 있고, 독일은 “피해자”라고 하고 있으며, 일본은 “.....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여 “피해자”라고 하는 입법예를 볼 수 있다.

172) 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리는 현대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민사법원칙을 수정한 것이므로 이는 소비자보호법의 체계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보호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송태희, “제조물책임의 입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책세미나자료94-01,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P. 58; 강창경,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보험개발연구, 제2호, 1994, P. 152.

173) 예를들면, 결함자동차의 경우에 결함에 의해 사고가 일어나면 그 차를 운전하고 있던 소비자 자신은 물론 그 곳을 지나고 있던 통행인이나 다른 차, 제3자에게도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소비자피해와 동일한 보호가 요청되는 개인사업자에게 생긴 손해라든가, 또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사업분야 이외의 제조물에 관해서는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製造物責任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잇점이 있으나, 충분한 대응능력이 있는 대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제조기기에 결함이 있어 조업정지의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相當因果關係論에 의해 배상범위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배상금액이 막대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¹⁷⁴⁾. 결국 우리의 현실상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의 현실판단에 관한 입법정책의 문제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한편 製造物責任法의 성격을 消費者保護法의 체계로 하더라도 제조물책임이 기본적으로 결함제조물로 인한 不法行爲責任의 특별법인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제조물책임법을 민법의 개정이 아닌 특별법으로 입법하더라도 우리 민법과 상호 정합성이 유지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製造物責任法이 無過失責任이라는 고유한 책임유형을 담고 있더라도 여기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보호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해당되는 동시에 민법상 不法行爲法의 특별법의 성격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¹⁷⁵⁾.

2. 立法形式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입법형식과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 하나는, 製造物責任法을 일정한 종류의 제품별 법률(즉 개별법률)로 할 것인가 모든 제품을 포괄적으로 그 대상으로 하는 법률(포괄적 입법)로 할 것인가가 문제이고, 그 다른 하나는, 製造物責任法의 형식을 민법의 개정에 의할 것인가, 특별법의 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선, 전자의 문제에 관해서는 제품의 특징 등을 감안해야 하고 재판에 의한 사후구제 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소액피해의 구제방법과 사회보장적 관점까지 포함한 裁判外救濟制度와 사전의 행정규제까지 확대하여 종합적으로 제

174) 加藤雅信, “製造物責任法案とその問題”, 判例タイムス, (NO. 842), 1994. 6. 15. PP. 33~34.

175) 황적인,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방향과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217호, 1994. 9, P. 41.

품안전을 위한 제도설계를 해야 하므로 개별입법이 적당하다는 견해도 있으나¹⁷⁶⁾, 제품을 한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한 제품이 제조물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될 염려가 있다는 문제, 제품별 차이를 일일이 고려하는 경우 자세한 검토를 요하여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별 차이가 없는 입법이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그리고 제품의 종류별 특징과 특수한 상황 등을 재판 등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사안에 적합한 해결로 될 수 있는 문제, 다른 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모든 제품을 망라하는 포괄입법이 일반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문제¹⁷⁷⁾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에 포괄입법을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후자의 문제에 관해서는 제조물책임의 기본이 제품사고에 의한 不法行爲責任의 原則에 관한 문제로서 제조물책임은 민법상의 不法行爲責任을 변경하는 일반적인 법률인 것, 제조물책임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조문수가 적은 것, 제조물책임을 위한 특례 이외의 부분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 등의 이유를 들어 민법의 개정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도 일리는 있으나¹⁷⁸⁾ 대상제품에 대한 소관관청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 이를 통일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높은 점, 민법의 개정에 의할 경우 그때그때의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제외국에서는 특별법으로서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한 예가 많은 점, 특히 소비자와 기업의 의식향상이나 기업의 대응태세의 확립을 위해서는 특별법의 형식에 의해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결국은 製造物責任法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 내용을 구성할 것 이냐의 문제로 귀착될 것이다.

176) 可藤一郎, “製造物責任についで”, 法學教室 NO. 169, 1994. 10, P. 54.

177) 다만, 독일의 경우처럼 약사법에 의해 의약품에 관해서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 등 일반의 製造物責任法과 다른 규정을 두는 예가 있으나 극히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그 배경에는 thalidomide사건의 역사적인 경험이 있다.

178) 임정평, “제조물책임법리의 비교법적 고찰”, 사법행정 제334호, 1988. 10, P. 42: 에서는 「과실 책임의 규정과 함께 위험책임의 규정도 민법 속에 통합적으로 일반규범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 연기영, “생산물 손해배상책임의 입법론적 과제”, 의당 장경학박사 고회기념논문집-민법과 법학의 중요문제, 동국대학교출판부, 1987, PP. 270-274. 다만,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製造物責任法을 도입할 것을 검토중에 있다.

第 3 節 製造物責任의 立法化方向과 課題

1. 製造物의 缺陷

(1) 缺陷의 概念

여기에서 말하는 「缺陷」이란 제조사고에 관해 제조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근거로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부적합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瑕疵擔保責任에 있어서의 하자는 제품이 상품성을 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면 하자담보책임은 매매목적물의 이용상 및 기능상의 성능의 결에 대한 책임으로서 매수인의 이용상의 이익의 상실 내지 감소 및 상품의 가치감소에 대한 책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전성의 결여가 바로 결함을 의미하지는 않고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비로소 “缺陷”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¹⁷⁹⁾ 결함을 하자과 동일시 하는 견해도 있으나¹⁸⁰⁾, 우리나라의 다수견해는 제조물의 흠을 제조물의 사용가치 내지는 등가성에 대한 것과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전자의 흠은 제조물의 성질이나 품질이 표준이하인 것을 말하지만, 후자의 흠은 제조물에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¹⁸¹⁾.

한편, 미국법에서의 결함의 의미는 제조물책임에서 결함(defect)은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기본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결함의 의미를 정의한다는 것은 어려

179) 학자들은 “缺陷”의 개념을 규범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 황적인, “제조물책임의 방향과 문제점”,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지, 1994. 9, p. 42.

180) “缺陷”과 “瑕疵”의 구별에 대하여: 缺陷이라는 개념은 아직 우리 민법에 나타나 있지않으나, 瑕疵라는 개념은 민법 제580조, 동법 제758조, 국가배상법 제5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580조, 제581조에서 하자담보책임을 두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의 영역을 명확히 구별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한다. 김성탁, “제조물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 171; 최병록, “제조물책임의 법리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 106.

181) 김형배, 전계서, P. 407; 이상정, 전계서, P. 483; 연기영, 전계서, PP. 254-246; 김상용, 전계서, PP. 30-31; 권영준,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결함”, 「민법과 법학의 중요문제」, -의당 장경학 박사 고회기념논문집-, 동국대학교출판부, 1987, P. 299.

은 일이나 미국법에서 대표적인 결함의 정의는 Restatement of torts, 2d 402 A(1965)라고 볼 수 있다. 즉, 제402 A는 결함에 대하여 “제조물이 사용자나 소비자 또는 그의 재산에 대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상태(... in a defective condition unreasonably dangerous to the user or consumer or to his property ...)라고 하여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결함의 정의를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한 결함상태라고 하여 제조물의 안전성에 이 기준을 두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결정은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제402 A의 논평에서 부당하게 위험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상품을 매수한 소비자의 예상을 초월한 위험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1985년 유럽공동체(EC)의 제조물책임입법지령에서도 결함의 정의를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성을 결한 경우“라고 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제조물의 표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용, 유통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제조물을 결함이라고 한다.¹⁸²⁾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결함은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 기타 제조물에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한다.¹⁸³⁾ 한편, 우리나라 1994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입법시안은 결함이라고 함은 당해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 등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당해 제조물의 사용, 당해 제조물의 유통된 시기를 고려 하여 당해 제조물에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¹⁸⁴⁾

(2) 缺陷의 類型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결함의 유형은 製造上의 缺陷, 設計上의 缺陷, 警告上의 缺陷 등 3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도 결함의 종류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한편 통일제조물책임법(UPLA: 1979)에서는 결함의 유형을 製造上의 缺陷·設計上의 缺陷·明示的 擔保違反의 缺陷 등 4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공통적인 것은 결함을 3종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182) 제3조 1항.

183) 제2조 2항.

184) 제2조 3항.

그러나 제품의 제조당시의 과학기술의 지식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위험, 즉 開發危險(development risk)이 있을 때에는 製造者의 抗辯(defence)이 인정된다. 미국법에서는 이것을 기술수준(state of the art)의 항변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결함의 유형을 보기로 한다¹⁸⁵⁾

첫째는, 제조상의 결함으로서 제조과정에서 조악한 재료가 혼입하거나, 제조물의 조립에 잘못이 있거나 하여 제조물이 설계·사양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안전성을 결한 경우이다.

둘째는, 설계상의 결함으로서 제조물의 설계단계에서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된 제조물의 전체가 안전성을 결한 결과로 된 경우이다. 설계상의 결함으로서는 본래의 구조상의 결함, 안전장치의 결함, 의도되지 않은 사용에 대한 적합성 등이 문제로 된다.

셋째는, 지시·경고상의 결함으로서 유용성 내지 효용과의 관계에 의해 제거할 수 없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제조물에 대하여 그 위험성의 현상에 의한 사고를 소비자측에서 방지·회피하게 적절한 정보를 제조자가 주지 않았던 경우이다.

이 중 제조상의 결함은 안전성에 관하여 설계대로 만들어진 제조물과 설계대로 만들어 지지 않아 안전성을 결한 당해 제조물과의 상위라고 하는 사실의 인정이 결함을 판단할 때에 중요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設計上의 缺陷 및 指示·警告上의 缺陷은 여러가지 요소를 감안하면서 다수의 선택중에서 제조자가 안전성에 관하여 일정한 선택을 하는 결과가 구체적인 설계와 지시·경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자의 안전성에 관한 선택의 적부라고 하는 규범적 평가가 결함을 판단할 때에 중요하게 된다.

(3) 責任要件 轉換

제조물책임의 특성은 제조자의 구체적인 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을 문제로 하지 않고 결함 있는 제조물을 유통에 놓음으로써 위험을 구체화한 것에 책임의 근거를

185) 이치영, 전계논문, PP. 159-161; 최병록, 전계논문, P. 108; 김성탁, “제조물책임의 비교법적 고찰”,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 175. 여기서 제4유형의 결함유형으로 개발도상의 결함을 분류하기도 하나, 이는 기술수준과 관련된 설계상의 결함 또는 지시·경고상의 결함의 문제이므로 독자적인 결함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구하려고 하는 점에 있다. 따라서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성립시키기 위한 요건 으로서는 ① 유통개시시의 결함의 존재 ② 손해의 발생 ③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의 세가지를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는 제조자의 과실의 입증부담을 면하여, 제조자의 책임 추급이 철저하고 용이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직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缺陷」이 제조자에 대한 귀책의 근거인 이상, 제조자의 책임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누가 어느 정도의 증명을 해야 하는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하지만 당해 사고가 넓은 의미에서의 제조과정에 유래하는 결함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① 사고가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것인지 이용자의 부적정한 이용에 기인하는 것인지 불명인 경우, ② 제조물에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제조상의 하자인지 이용자의 수중에서 생긴 하자인지 불명인 경우 등에는, 단지 제조물과 관련하여 사고가 생겼다고 하는 것만으로 바로 제조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③ 에이즈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전에 유통된 오염혈액제제처럼 추상적으로도 예견불가능했던 결함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책임을 부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過失」에서 「缺陷」으로의 책임요건의 전환이 제품사고에 관한 손해 배상문제에서 제조자의 행위태양의 악성에 대한 비난의 요소를 불식하고, 이것을 오로지 고도로 복잡한 기술을 사용한 제조물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도 특별한 지식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량으로 판매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제품사고에 관한 위험과 비용의 분산의 문제로서 취급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의 반영이라고 파악하게 되는 사안도 포함하여, 제품관련사고 중 소비자에게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제조자 등이 이것을 부담한다고 하는 정책도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4) 缺陷의 判斷基準

미국의 판례법¹⁸⁶⁾을 기초로 하여 결함의 판단기준은 안전성에 관한 규격으로부터

186)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상품의 결함에 대한 판단기준은 소비자기대기준(consumer expectation test) 또는 위험효용기준(risk utility test)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기대기준은 그 기준

벗어나 있는 것을 가지고 결함으로 인정하는 標準逸脫基準, 소비자가 기대하는 안전성을 결하고 있을 때에 결함이 있다고 하는 消費者期待基準, 위험성이 효용을 상회하는 때에는 결함이 있다고 하는 危險效用基準이 있다.

제조상의 결함에 관하여는 안전성에 관한 표준으로 일탈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바로 결함이라고 판단해도 된다. 설계상의 결함과 지시·경고상이 결함에 관해서는 消費者期待基準에 의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危險效用基準에 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이 있다. 전자의 입장이 소비자로서는 보다 유리하나,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결정되는 합리적인 기대수준을 벗어난 안전성의 수준은 상정될 수 없고, 완전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품이더라도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소비자가 그 효용과 경제성 등을 감안하면서 합리적인 안전성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消費者期待基準의 요소를 빼고서 한 결함판정은 있을 수 없다¹⁸⁷⁾.

결함을 책임기준으로 하여 제조물책임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가치판단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가치판단의 기준과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消費者期待基準은 일반인으로서의 소비자를 기준으로하여 가치판단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危險效用基準은 그 판단요소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消費者期待基準과 危險效用基準은 별개 독립한 결함기준이 아니라, 消費者期待基準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인 제조물에 기대되는 안전성을 일반인으로서의 소비자의 시점에서 위험효용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의 소비자의 시점에서 위험효용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함기준으로서의 消費者期待基準은 일반인으로서의 소비자의 기대의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판단요소는 危險效用基準에 의하는 것으로 된다. 이때 危險效用基準에 의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제조물의 유용성과 위험성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여러 요소도 포함되는 것으로 넓게 파악하여 이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애매하고 주관적이어서 결함판단기준으로서의 그 가치가 감소되고 있으며, 危險效用基準이 미국법원의 압도적 견해가 되고 있다. 김성탁, 전제논문, P. 175.

187)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모임, 「제조물책임법-일본제조물책임법을 중심으로」, 1995, P. 36.

(5) 缺陷判断의 題問題

1) 缺陷判断에 관한 基準時點

제조 등의 책임을 확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함판단의 기준으로 되는 시점은 제조자 등에 의해 “제품이 유통에 놓여진 시점”으로 해야 한다.¹⁸⁸⁾

2) 缺陷判断의 主體

결함을 판단할 때에 기준으로 해야 할 주체는 개별적이거나 특수한 주체가 아니라, 제조자·소비자를 포함하여 사회에 있어서 기대되는 내용을 의미하는 「平均人」 혹은 「通常人」으로 해야 한다.

3) 誤用과의 關係

통상인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라면, 그것을 고려하여 설계와 지시·경고를 행하는 것에 의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오용은 결함판단상 안전성의 판단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조자 등으로 부터 지시·경고가 명확하고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는 경우와 제품의 특성이 이미 소비자에게 인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적절한 사용에 기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다.

4) 製品改良· 新製品開發· Recall과의 關係

제조자 등의 보다 안전한 제품을 개발·판매하거나 혹은 위험 있는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는 의욕을 억제하지 않기 위해서도 다음의 사실만을 근거로 하여 결함이 있다고 인정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다소 다른 판단요소에 덧붙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함을 판단하는 것까지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요소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안전한 제품이 현재 존재하거나 또는 나중에 안전한 제품이 출하된 것. 둘째, 당해제품이 개량된 것. 셋째, 당해제품이 Recall(리콜)의 대상으로 되었던 것 등이다.

188) 그리스 제조물책임법 제10조(e), 벨기에 제조물책임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다.

5) option과의 關係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에어백과 같은 option으로 되어 있는 안전장치에 관해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선택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것에 의해 제품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결함있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¹⁸⁹⁾

그렇지만 예를 들면 본래는 필수로 보아야 할 안전장치는 판매상의 이유 때문에 option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져 당해 option을 장착하지 않은 것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당해 option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이 결함으로 인정되게 된 개연성이 높다.¹⁹⁰⁾

(6) 天災 등의 不可抗力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기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 등이 당해 결함을 갖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선택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자 등은 당해 결함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 行政上の 製品安全規制와의 關係

행정상의 안전규제는 제품을 제조·판매할 때에 충족해야 할 최저기준을 정한 단속규정으로서 민사상의 제조물책임과는 의의·목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상의 안전규제에의 적합·부적합과 결함의 존부, 즉 제조물책임의 존부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안전규제에 적합한 제품사고에 관해서도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안전규제의 적합·부적합은 규제대상제품의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의 결함판단에 있어서의 중요한 고려사정의 하나로 되어 있으므로, 안전규제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소비자·기업 쌍방에게 있어서 결함

189) EC지령에서는 option조항에 대해서는 각 국의 특성에 맡겼다.

190) 문제시 되고 있는 에어백에 관해서는 이로 인하여 어린이나 어른들이 사고시 에어백으로 인하여 호흡곤란 등의 원인으로 하여 목숨을 잃어다고 하는 보도가 있어 이에 관하여도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판단의 예측가능성·안전성을 높이는 것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본다.

안전규제 적합제품의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령 안전규제의 불비와 사고의 원인인 결함의 발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당해 안전규제의 불비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요건이 인정될 때에는 국가는 제조자 등의 제조물책임의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배상법에 기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된다.

2. 製造物の 適用範圍

제조물책임이 타당한 분야는 기본적으로는 현대의 대량생산·대량소비라고 하는 형태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최종제품인 動産이 대상으로 되어 왔다. 보통 공업제품인 동산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일치될 보고 있으나, 다만 논란이 되는 경우로서 첫째, 미가공 농산물의 포함여부. 둘째, 부동산의 포함여부. 셋째, 전기의 포함여부. 넷째, 특정 제품의 제외여부 등의 문제에 있어서 각국의 입법예가 차이가 있다. 이하에서는 제조물책임의 대상으로 되는 제조물의 범위를 생각할 때에 구체적인 논점으로 될 수 있는 것에 관한 過失責任 또는 嚴格責任에 의해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말할 것 까지도 없다.

(1) 未加工農林水産物

농림수산물 중 미가공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첫째, 기본적으로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 생산이 이루어져, 고도로 가공된 공업제품과는 생산형태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 둘째, 자연속에서 농림어업자가 행하는 생산에 대하여 과도한 위험관리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이 영세한 농림어업자에게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것. 셋째, 농림어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책임주체를 공급자로 하면 공급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무겁고, 농림어업자를 책임주체로 하면 생산자를 특정하기 위해 엄청난 상품관리 비용이 드는 것 등의 이유에 의해 일반적으로 제조물책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¹⁹¹⁾. 그러나 이러한 이유들은 모두가 이론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책적인 것 들이다. 자연에서 생산되는 점을 강조하면 제외되는 방향으로 기울겠지만, 최근의 농수산업은 완전히 근대화된 각종의 고도기

191) 최병록, 전제논문, P. 100.

술과 과학제품(농약·화학비료·어구·성장호르몬)을 사용하고 있어 다른 분야의 제품과 차이가 별로 없고, 농림수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굳이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에서부터 반론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작금의 추세는 미가공농림수산물을 제외하는 방향이지만, 가공과 미가공의 구별이 점점 애매해지고 있고, 일단 시장에서 상품화되어 소비에 제공되고 있다면 상품의 위험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상품과 차이가 없으므로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된다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도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라 말할 수 있으므로 농수산업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을 포함하여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¹⁹²⁾. 다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수입농수산물에 농약잔류문제 및 우리 농산물의 농약잔류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둘째, 화학적 사료에 의한 제1차 농수산물의 결합으로 인한 경우. 셋째, 원자력의 폐기물로 인한 농수산물의 원자력피해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앞으로 미가공농수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잠정적(농업기술문화의 향상)으로 입법에 반영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 생명공학이 발달함에 따라 자연산물과 가공물의 구별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측면도 고려해 볼만 하다¹⁹³⁾.

(2) 不動産·共同住宅(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일반적으로 不動産을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입장에서는 ① 부동산분쟁의 대부분은 계약당사자간에 있어서의 목적물 자체의 특성에 관한 것이므로 계약책임에 의해 대응이 가능하고, ② 제3자의 피해는 공작물책임규정의 적용에 의해 구제되며, ③ 不動産은 대량생산·대량소비의 형태에 적합하지 않고 EC제국에서도 제조물책임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조물책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한다¹⁹⁴⁾.

그러나 ①에 관해서는 실제 주택관련 분쟁이 상당히 많고 擴大損害가 생기는 경

192) 이치영, 전계논문, P. 154.

193) 이진용, 전계논문, P. 160.

194) 小林秀之, 「製造物責任法-その論點と對策」, 中央經濟社, 1995, P. 116: EC指令에서 不動産의 결합을 製造物責任의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각국의 不動産에 관한 취급에 차이가 커서 국제적인 합의에 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데 있다고 하고 있다.

우도 적지 않으며, 예를 들어 분양업자가 건설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은 건설업자의 계약책임을 직접 물을 수 없고, ②에 대해서는 不動産의 所有者와 占有者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공작물책임을 적용되지 않고, 제3자가 피해자로 된 경우에는 공작물책임을 의하면 건축과 판매에 관여하고 있지 않은 현재의 소유자와 점유자를 제소할 수 밖에 없다. 현재의 소유자와 점유자는 무과실책임 또는 과실의 입증책임을 전환한 중간책임을 부담하는 데도 건축업자와 판매업자는 과실이 없으면 구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균형이 생기며, ③에 관해서는 EC지령에서는 부동산은 제조물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대량으로 건축·판매되는 분양주택에 대하여 嚴格責任을 인정한 판결이 있고¹⁹⁵⁾, 더욱이 최근의 제3차 불법행위법 Restatement의 제조물책임초안에서는 신축건물의 매도인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신축건물을 제조물에 넣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사회적 요청과 소비자가 사업자의 책임을 대신 떠맡는다는 우리나라 법제의 결함을 고려할 때 제조물책임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不動産에 중에서도 우리나라 현실상황에서 보면 共同住宅(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부실공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현실에 비추어 입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보호원 입법시안(1994)은 不動産 중 “分讓供給住宅”에 한정하여 製造物責任을 인정하고 있다.¹⁹⁶⁾

이에 반하여 不動産은 그 분쟁의 대부분이 계약당사자간의 목적물 자체의 성능에 관한 것으로 민법상 都給契約이나 賣買契約에 기한 契約責任으로 대응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피해에 관해서는 토지공작물책임을 의해 피해자구제가 도모되고 있으며, 製造物責任이 타당한 분야는 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 형태가 적합하다는 측면에서 최종 제조물인 動産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아, 不動産은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부정하는 견해¹⁹⁷⁾가 있다.

195) Schipper v. Levitt & Sons Inc, 44 N. J. 70, 207 A. 2d 314, 1965. 강창경,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보험개발연구, 제2호, 1994, p. 71, 각주)20 참조.

196)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안(1994) 제2조 제1항.

197) 이은영,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소비자 제170호, 1995. 7-8, p. 31; 김동훈, “제조물책임의 입법론적 고찰”, 고향법학 제1권, 1994.1, p. 157; 김민중,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동향”, 저스티스 제25권 제2호, 1992. 12, p. 28; 최병록, 전개논문, p. 100.

사건으로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不動産의 거래상황 및 피해상황, 그리고 피해구제상황에 비추워 볼 때 製造物責任에서 動産과 不動産을 굳이 구별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자연 그대로의 상태라면 모르되, 개발·이용된 토지나 건물, 그 밖의 구조물은 제조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3) 輸血 및 血液製劑, 身體臟器

혈액 또는 신체장기에 대해서 이는 製造物責任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수혈과 장기이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공급받은 자가 이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문제시 되고 있다.

수혈용혈액제제에 대해서는 제조자의 책임부담을 덜어주어 혈액제제의 안정공급을 확보할 목적에서 제조물책임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¹⁹⁸⁾, 그러한 목적은 책임보험의 가입이나 기금의 창설 또는 별도의 공적 구제기관의 설립 등의 다른 정책수단에 의해 달성해야 하지 피해자의 희생하에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제조물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 다만 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과학기술수준에 의해서는 바이러스 감염 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위험으로서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미지의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헌혈과 환자에의 공급시점에서 바이러스의 존재를 체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현실적으로는 주로 수혈을 통해 감염되는 C형간염의 사례가 문제될 것이다.¹⁹⁹⁾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해석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수혈용 혈액제제를 嚴格責任의 대상외로 하는 입법이 대부분의 주에서 제정되고 있다. EC지령에서는 혈액제제에 대한 제외규정을 두지 않아, 제조물로서 취급되고 있다. 다만 혈액은행과 장기은행은 製造物責任을 부담하는 것으로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로서는 혈액제제는 혈액 그 자체와는 달라 수혈용 혈액제

198) 朝見行弘, “製造物の適用範圍”, 法學 세미나- NO.446, 1992. 2, p. 97.

199) 우리나라에서도 이는 크게 문제가 된 바 있다. 환자가 수술중에 혈액을 수혈 받은 경우에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공급받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하여 의학계에 심각한 문제점을 시사했다.

제라 하더라도 혈액에 보존액이나 항의고체가 더하여지는 등 고도의 가공처리가 더하여진 제조물이고, 시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제조과정에서 각종의 검사나 선별이 가능하여 예견되는 위험에 대하여 결과회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함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제조물에 포함시켜야 한다²⁰⁰⁾. 결국 혈액이나 신체장기 그 자체는 제조물책임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醫藥品

의약품사고가 의약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 의약품의 제조자와 피해자 사이에 제조물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입법예로는 대체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의약품을 다른 제조물과 함께 단일한 제조물책임법 내에서 동일한 조항으로 규율하는 입법예이고, 다른 하나는 의약품이 가지는 특성에 착안하여 별도의 개별입법 내지 제조물책임법 내에 별개 조항을 두는 입법예이다.

EC지령을 비롯하여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EC회원국 및 일본의 製造物責任法은 전자의 입장에서 있고, 독일과 노르웨이 등에서는 제조물책임법과 따로 개별입법이나 개별규정을 마련하여 의약품사고를 특별히 처리하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독일 製造物責任法 제15조는 의약품에 의한 인적손해에 대하여는 의약품법(Arzneimittelgesetz)²⁰¹⁾에 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법은 1976년 8월에 제정되어,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동 법 제84조에 따르면 의약품에 의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나 건강이 손상을 당한 때에는 의약회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한 무과실의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동 법은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책임최고한도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배상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연대책임이 되며, 배상의무는 사전에 제한할 수 없고 또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도 무효이다. 의약회사에 대하여 배상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배상준비금을 보험 혹은 신탁에 의한 방법으로 준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도 製造物責任法 제3장에서 의약품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따로 규정하여 의

200) 朝見行弘, “製造物の適用範圍”, 法學 세미나- NO.446, 1992. 2, p. 97; 이진용, “제조물책임의 비교법적 고찰”,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p. 26; 이치영, 전개논문, p. 155.

201) 한봉희, 전개서, pp. 275-276.

약품에 의하여 생긴 인적 손해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약품의 제조자, 수입자 또는 임상실험을 행하는 자에게 약품보험의 付保를 의무화하고 있다.

우선 약품은 이른바 개발위험이 발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품이며, 제조업자는 위험이 높은 제품을 시장에 내어놓고 있는 점, 약품의 유용성으로 부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인용되고 있다는 점 등 다른 제조물과 다른 특별한 취급이 요구되어 지는 면이 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하여 심각한 약해소송에서 보여지는 피해발생의 빈도와 규모 및 생명·신체 건강이라는 피해법익의 중대성은 약품에 관한 嚴格한 責任을 요구한다. 또한 약품사고는 이른바 축적피해를 일으키고 그 결과가 세대를 건너뛰어 비로소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약품의 제조물로 특성은 결함약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충분한 손해배상확보조치가 요청된다고 본다. 종국적으로 결함여부를 떠나 약품사고에 대한 포괄적인 손해배상확보조치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5) 電氣 등의 無形에너지 등

가스와 석유 등의 유형에너지는 제조물에 해당되지만 전기 등의 무형에너지에 대해서는 다름이 있다. 電氣 등의 무형에너지는 無體物로서 有體物과는 다르고 電氣의 缺陷으로서 상정되는 전압과 사이클수의 이상에 의한 손해는 계약책임의 취급이 가능하므로 제조물책임의 대상으로 할 실익이 별로 없고, 또한 열과 자기, 방사선 등의 다른 무형에너지의 경우에는 당해 에너지의 발생기구의 缺陷으로서 처리하면 충분하다는 입장과 무형에너지라 하더라도 해석상 관리가능성이라는 것에 의해 물건으로서 취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입장의 대립이 있다. 어떻게 해석하든 電氣의 결함에 의한 소비자 피해는 그다지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으나 법률에 명기해 둘 필요는 있을 것이다²⁰²⁾. 그러나 판례 중에서 고객에게 공급된 전기 자체는 제조물이라고 보는 견지에서 고압전류를 자정에 공급하였기에 발생한 화재 등에 대하여 전력회사에게 嚴格責任을 인정하고 있다²⁰³⁾.

EC지령 제2조에서는 제조물에 電氣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은 종래부터 電氣를

202) 이치영, 전계논문, p. 156.

203) 김성탁, 전계논문, p. 161; 최병록, 전계논문, p. 102.

포함한 에너지를 動産으로 취급하는 가맹국²⁰⁴)과 그렇지 않은 가맹국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조물로서 취급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EC지령에서는 電氣의 결합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EC이사회 해설에서는 「電氣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합을 막게하는 취지이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송전선망에 옮겨진 후 외부요인에 의해 결합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것을 막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언급되어 있고 영국법에서는 「발전된 시점, 즉 송전 또는 배전되기 전의 시점」에서 결합의 유무를 판단한다는 취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전을 전기의 불공급이지 결합은 아니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電氣를 제조물로 한 판결은 있지만 대다수의 주에서 전기공급은 서비스라고 하여 제조물책임의 적용이 부정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민법에서 물건을 유체물로 한정하는 이유 때문인지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명시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학설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듯하다²⁰⁵). 그러나 우리나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법안은 전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타당하다²⁰⁶) 그리고 전기이외의 에너지로는 열, 자기 또는 방사선 등도 관리가능성만 있으면 전기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²⁰⁷).

(6) 소프트웨어(情報)

소프트웨어(Software)의 결합에 의하여 손해가 생기는 경우에 그 소프트웨어의 개발자나 판매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지가 정보화사회인 현대에 있어서 새로운 문제를 던져 준다. 이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입법은 없다. 소프트웨어가 대량으로 시판되고 있는 경우에 이를 구입하여 작동한 결과 그 소프트웨어의 결합 즉, 소프트웨어 자체의 문제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다른 데이터나 하드웨어에 손상을 가한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²⁰⁸).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자체는 유체물이거나 관리할 수

204) 이탈리아 民法 제814조 참조, 한봉희, 「제조물책임법론」, 대왕사, 1997, pp. 277-278.

205) 朝見行弘, 「製造物の適用範圍」, 法學 세미나- NO.446, 1992. 2, p. 97.

206) 같은 견해: 최병록, “제조물책임의 법리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 103

207) 이진용, 전제논문, p. 28; 김민중,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동향”, 저스티스 제25권 제2호, 1992. 12, p. 31.

208) 김성탁, “제조물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166.

있는 자연력이 아닌 정보에 불과하므로 제조물책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최근의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제어장치를 장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잘못으로 인해 제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의 부품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된다²⁰⁹⁾.

(7) 部品・原材料

EC지령 제2조는 “제조물에는 動産이 다른 動産이나 不動産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여 이를 밝히고 있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제4조 2호에서는 부품제조업자·원재료제조업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것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는 최종제품으로서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독립된 동산으로서의 성격을 잃고 있지만, 최종제품의 결함이 부품과 원재료의 결함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부품·원재료도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8) 中古品

중고품에 있어서는 주로 중고품의 판매자의 책임문제로 논의가 된다. 중고품도 제품이므로 제조물책임의 대상으로 되지만, ① 그 이전의 사용자의 사용상황과 개조, 수리의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 ② 중고품판매지에 의한 점검·수리와 정비와 같은 서비스가 개재하는 케이스가 많은 것, 중고품에 관해서는 신품으로서의 유통과정에서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결함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중고품으로서 사용되는 시점에 있어서 제조시로부터 장기간이 경과되어 법정책임기간이 경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조자의 면책사유가 인정될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해서 제조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²¹⁰⁾.

중고자동차의 결함에 의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것이 신품으로서 출하된 시점

209) 이은영,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소비자 제170호, 1995.7-8, p. 31: 예서는 만일, 소프트웨어에 缺陷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製造物責任法으로 하는 것보다 별도의 법률로서 규제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210) 이진용, 전계논문, p. 28.

에 이미 발생하고 있었던 결함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자동차메이커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만, 이전 이용자의 이상한 사용과 중고판매점의 개조에 의해 생긴 결함인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9) 廢棄物

폐기물이라고 하여 제조물책임의 입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입법예를 찾아 볼 수 없지만, EC지령에서는 제조과정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제조된 물건이 아니기에 획득·제조된 소산이 아니기에 제조물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일단 폐기된 물건은 제품으로서 이용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조물책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폐기후에 다시 유통에 놓여진 물건에 대해서는 중고품으로서 취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²¹¹⁾.

3. 責任主體 · 複數의 責任主體의 關係

(1) 責任主體

제조물책임이 나탄난 배경에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고도의 기술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 현상이 있는 것이므로, 책임주체로서 완성품·부품·원재료라고 하는 제품을 업으로서 반복·계속하여 제조하는 제조자가 있다. 제품의 결함이 그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과 원재료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품·원재료의 제조자와 완성품의 제조자는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EC지령 제 3조 1항에 의하면 제조자란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의 제조자 또는 구성부품제조자 및 제품에 그 성명, 상표 기타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스스로를 제조자로 표시한 모든 자를 의미한다. 한편, 일본의 製造物責任法 제4조 2호에서 部品·原材料製造業者의 免責抗辯을 인정하면서 완성품메이커의 설계상의 지시에 의해 결함이 생긴 것 외에 추가로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에게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부품·원재료 제조자에게 결함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는 결과회피가능성이 있는 경우에까지 면책을 인정할 근거는 없기 때문에 요건을 부가한 것이다. 다만 부품·원재료의 제조자가 완성품의 설계와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211) 이치영, 전제논문, PP.158.

제조하고 있는 경우로써 그 부품·원재료의 결합이 그 설계와 지시에 기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부품·원재료의 제조자에게 제조물책임을 과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이러한 일본의 입법이 우리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입법시안 제2조 2항에 ①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②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및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자로 인식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③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 한 자 ④ 제조물의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물의 공급자 등을 제조자라 하고 있어 일본의 입법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부품·원재료제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²¹²⁾, 다수의 견해는 부품·원재료제조자에게 별다른 배려없이 완성제조업자와 함께 1차적인 제조물책임을 묻는 것을 주장한다²¹³⁾.

1) 表示製造者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실질적인 제조자는 아니지만 제조물에 붙여진 사업자의 명칭 등의 표시가 제조자로서의 외관을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표시된 자를 제조자로서 신뢰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표시제조자도 제조물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조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이다²¹⁴⁾. 이러한 입법예로서는 미국 제2차 不法行爲 Restatement 제400조 “타인에 의해 제조된 동산을 스스로 제조물이라고 표시한 자는 제조자와 같은 책임을 진다.” 고 하고 있고, EC지령이나 일본제조물책임법²¹⁵⁾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1994년 입법시안²¹⁶⁾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表示製造者란 단지 유통업자로만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 표시자의 의사가 제품의 설계·제조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212) 홍천룡, 전계논문, p. 667; 이진용, 전계논문, p. 17

213) 송태희, 전계논문, p. 59

214) 최병록, 전계논문, p. 124.; 이치영, 전계논문, PP. 166-167.

215) 제2조 3항 2호

216) 제2조 2항 2호. 박윤재·하종선·김시현, 「제조물책임법안」-경쟁력강화를 위한 변호사회, 1995. 9, 제2조 2항 2호.

2) 輸入業者

제조물의 거래는 국제적인 규모로 거래되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제품을 국내시장에 유통시키는 원천공급자가 된다는 점과, 일반의 소비자가 외국의 제조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 제조물의 수입시의 계약에 있어서 외국의 제조자 내지 판매자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해 두면 수입업자 자신이 최종적인 손해배상의 부담자로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이유에 의해 책임주체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²¹⁷⁾. 수입자는 해외의 제조자와 국내의 소비자 사이에 중간유통업자로서의 위치에 있으나, 다른 한편 수입국에 있어서 제품유통과정의 시발점에 위치함에 따라 제품의 국내유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제조자와 동일한 1차적인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²¹⁸⁾. 만일 외국의 사업자를 제소하려고 하는 경우의 절차 및 문제점을 보면, 피해자가 외국의 사업자를 직접 제소하려고 한 경우, 통상의 소비자가 해당 상대국의 법원에 직접 제소하는 것은 법관습의 차이와 물리적인 수고 및 비용으로부터 보아 곤란하기 때문에 통상 내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된다²¹⁹⁾.

3) 販賣 · 賃貸 · 리스業者

판매자·임대업자·리스업자와 같은 유통업자는 직접의 매수인이나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상의 책임을 부담하고, 또한 스스로 제품의 설계·제조에 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제조물책임을 책임주체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임대업자와 리스업자는 제조물의 점유만 임차인과 이용자에게 이전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고 매매계약처럼 소유권은 이전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 견해에서도 특히, 금융리스계약은 제조물의 대금을 용자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매매계약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판례는 책임주체의 범위를

217) 이치영, 전제논문, P. 167.

218) 朝見行弘, “製造物の適用範圍”, 法學 세미나- NO.446, 1992. 2, p. 95.

219) 이 경우 우선 외국의 사업자가 우리나라 법원관할에 따르는가 어떤가는 국제재판관할의 문제가 생기는 외에, 외국의 사업자에 대한 소장과 소송서류의 송달의 방법, 증거조사 등의 관한 국제사법공조의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된다.

가급적 넓게 해석하여 유통업자에게 까지 넓히고 있다. 그 이유는 ① 유통업자는 유통에 관여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제조물의 위험에 기인하는 손실을 부담해야 할 입장에 있는것, ② 유통업자는 제조자가 불명인 경우에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것, ③ 유통업자는 제조물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보증하는 입장에 설 가능성이 있는 것 , ④ 유통업자는 제조자에게 안전한 제조물을 제조하도록 작용할 수 있는 것 등에서 찾고 있다. 소비자의 보호 측면에서는 가장 좋으나 유통업자도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생기므로 이중의 비용이 들게 된다²²⁰⁾.

한편, 제조자 등을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이들 공급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자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공급자를 보완적으로 책임주체에 포함시키는 것에 의해 공급자가 제조자 등 내지 전공급자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역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EC지령의 입장(동 지령제3조3항)으로서 유통업의 발달이 극히 저조하여 제조업자의 지배의 손실이 미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고, 아울러 피해자가 배상을 못 받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이 경우 제조자와 유통업자 사이의 문제는 구상관계에 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²²¹⁾.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 속에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우선 보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구상권의 행사에 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안²²²⁾도 제조물의 공급자의 보충적인 제조물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시에 반드시 잠작하여야 할 사안이다²²³⁾.

리스업자에 관한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좀더 살펴보면, 리스회사는 금융제공에 대한 채권담보의 방법으로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물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²²⁴⁾, 제조물의 소유권 이전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물의 임

220) 朝見行弘, “入門 製造物責任法4- 製造物の適用範圍”, 法學 세미나- NO.446, 1992. 2, p. 99.

221) 朝見行弘, “入門 製造物責任法4 -製造物責任の適用範圍”, 法學 세미나(NO.446), 1992.2, P. 96.

222) 제2조 2항 4호.

223) 이진용, 전제논문, pp. 19~20; 판매자를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로 구분하여, 도매업자에게는 제조물책임을 부정하고, 소매업자에게는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는 현대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의 관점 및 거래질서의 현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대·리스업자도 임차인·이용자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²²⁵⁾.

4) 設置·修理業者

일반적으로 제조물의 설치·수리에 의한 결함의 발생에 관해서는, 제조물이 유통에 놓여진 다음의 문제이고, 대부분의 경우 설치·수리업자와 의뢰자와의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이러한 계약관계에 기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의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산업용기계, 조립식가구, 자전거, 에어컨과 같이 통상 제조·판매에 설치·조립을 수반하는 제조물의 경우, 제조업자의 매뉴얼 등 그 지시에 기하여 설치업자의 설치·조립이 행해지는 것에 기인하여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 때에는, 이러한 매뉴얼 등을 작성한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설치·수리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제공자로 보아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²²⁶⁾.

5) 包裝·運送·倉庫業者

운송업자나 창고업자도 스스로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하도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製造物責任을 부담한다는 견해도 있으나,²²⁷⁾ 제품의 공급에 관하여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포장·운송·창고업자와 같은 자는 제품의 결함의 창출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의 책임주체로는 되지 않는다. 즉 이들의 행위에 의해 제품에 결함이 생긴 경우이더라도 제품의 제조·설계에 관여했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들의 행위는 어느 것이나 제조자, 유통업자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행하는 역무로서, 역무의 의뢰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한, 이들에 대한 책임을 직접 추급할 수 없더라도 문제는 없다²²⁸⁾.

224) 문기호·김재국, “리스계약과 제조물책임”, 목표대학교논문집 제13집 2호, 목표대학교, 1992. 12, p. 202.

225) 김민중,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동향”, 저스티스 제25권 제2호, 1992. 12, p. 26; 김성탁, “제조물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 212.

226) 朝見行弘, “入門 製造物責任法4- 製造物の適用範圍”, 法學 세미나- NO.446, 1992. 2, p. 96.

227) 김민중, 전제논문, p. 27; 김성탁, 전제논문, p. 213.

6) 設計業者

제조물의 설계업자는 제조물의 설계에 있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 그 설계에 기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과실책임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에 기초한 설계업자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설계업자는 유통과정의 주변에 존재하는 자이는 하나, 유통과정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자는 아니고, 또한 설계행위는 전문성 내지 용역제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²²⁹⁾.

(2) 複數主體의 責任主體

결합이 있는 제조물에 의해 손해가 생긴 경우, 완성품과 부품의 제조업자와 같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제조업자 등이 복수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不眞正連帶債務로 된다. 이것은 無過失責任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자 이외에 손해의 발생 혹은 확대에 관하여 과실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있는 경우²³⁰⁾에는 복수의 책임주체가 어느 경우이나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제조자의 책임과 제3자의 과실이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양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자가 반드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고, 제조자의 과실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조자의 책임이 줄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제3자의 책임을 경감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제3자의 과실의 기여부분은 양자의 구상관계에 의해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나, 그와 같이 특별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만약에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하면 제3자의 과실의 기여도가 큰 경우에는 제조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이 부과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이 규정을 두는 의의로서는 제3자의 과실에 따른 분할책임을 채용을 배제하려는 점에 있으나, 현행 민법에 의하여도 이와

228) 이치영, 전제논문, PP. 170~171.

229) 김성탁, 전제논문, p. 214.

230) 예를들면 자동차의 결합과 운전자의 과실, 의약품의 결합과 의사의 과실 등을 말한다.

같은 제3자의 과실에 의해 손해가 확대하고 있는 경우의 제조자 및 제3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상당인과관계에 의해 판단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없이 현행민법에 따라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복수의 책임주체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 어떤가를 묻지 않고,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자기의 책임원인과 相當因果關係에 있는 전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된다. 다만, 다른 책임주체가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배상의무를 면한다.

또한 결함이 있는 제조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여 복수의 책임주체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경우 이들 책임주체간에 있어서는 손해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되는 것으로 된다. 복수의 책임주체 중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한 자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책임주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된다.

4. 損害賠償의 對象과 範圍

결함제조물의 피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손해범위의 문제는 전술한 법적성격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소비자보호법적 성격의 입법으로서 파악하면, 손해배상의 범위가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범위내로 한정되어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합리화되고, 일반적인 손해의 전보에 관한 법으로서 파악하게 되면, 손해의 범위의 면에서는 민법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된다. 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자에게 생긴 물적손해와 순수경제손해의 취급이 될 것이다²³¹⁾. 이에 관한 입법예로서는 미국의 제2차 불법행위 Restatement 제402조 A에 의하면 「이용자 또는 소비자 혹은 그의 재산에 대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결함상태에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그것에 의해 최종이용자 또는 소비자 혹은 그 재산에 대하여 생긴 유형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고 있다. 일본의 製造物責任法에서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조·가공·수입 또는 전조의 제3항 제3호, 혹은 제3호의 성명 등의 표시를 한 제조물에 있어서 그 인도한 것의 결함에 의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231) 이치영, 전제논문, PP. 170.

재산을 침해했을 때는 그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그 손해가 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²³²⁾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1994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입법시안에서는 「제조자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당해 제조물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²³³⁾하고 있다.

(1) 人的損害

인적손해는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에 의해 생긴 손해로서 재산적손해(치료비와 사망·상해에 의한 일실회익 등) 정신적손해(위자료)로 나뉘어 진다.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에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피해의 내용정도, 피해자의 연령, 생활수준, 가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등의 통상 고려되어야 한다. EC지령²³⁴⁾에서는 慰藉料를 전보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할 것인가 아닌가의 취급을 각국의 법률에 맡기고 있다. 독일법에서는 전통적으로 無過失責任의 경우 비난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제외하고 있어, 결함요건하에서도 전보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²³⁵⁾. 한편, 일본의 製造物責任法은 위자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 제3조의 “손해”에는 위자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자료를 不法行爲에 기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위자료가 인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것도 재산적손해와 함께 손해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온당하다²³⁶⁾.

(2) 物的損害

결합제품이외의 물적손해 중 개인적인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에 생긴 물적손해가

232) 일본 제조물책임법 제3조.

233) 한국소비자보호원 입법안 1994년 제3조.

234) EC지령 제9조에서는 “본 조는 무형손해에 관한 국내법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5) 독일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8조.

236) 이치영, 전제논문, PP. 170.

배상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생긴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제조자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여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제외시키는 견해²³⁷⁾, 사업자와 소비자의 구별이 사실상 애매하고 사업자라 하더라도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굳이 구별하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의 대립이 있다²³⁸⁾. 전자는 제조물책임법의 소비자보호법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으로부터의 견해이고, 후자는 민법체계의와의 정합성을 중시하여 피해자 구체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나온 견해이다²³⁹⁾.

(3) 缺陷製造物 自體의 損害

擴大損害²⁴⁰⁾가 발생하지 않고 제품자체의 손해만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製造物責任理論이 제조물의 안전성의 결여에 의하여 제조업자와 계약당사자관계가 없는 제품의 사용자에게 생긴 확대손해에 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발전해 온 것이고, 이때 피해자는 계약책임(불완전이행·하자담보책임 등)에 기하여 대금감액청구, 대물청구, 수선청구 등을 매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고, 결함에 이르지 않는 품질상의 하자(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는 없는 하자)와 결합제품 자체의 손해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구별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구별이 사실상 미묘하고 곤란한 경우가 많아 품질상의 하자에 관한 부당한 요인이 많아질 염려가 있는 것 등의 이유에 의해,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²⁴¹⁾

237) 朝見行弘, “入門 製造物責任法4- 製造物の適用範圍”, 法學 세미나 NO.446, 1992. 2, p. 98.

238) 최병록, “제조물책임의 법리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 142;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계약책임에 기하여 배상한 결합제품 자체의 손해는 결국 제조자에게 종국적으로 추궁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로 예컨대, 휴일에 목공일을 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는 자가 사용하던 전문기술자용의 기구가 파손한 것과 같은 경우가 한계적 사예의 예가 될 것이다.

239) 이치영, 상계서, P. 171.

240) 擴大損害라고 함은 인적손해 또는 결합제품 자체의 손해 이외의 물적손해를 말한다.

241) 이치영, 전제논문, PP. 171; 그러나 확대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확대손해는 제조물책임에 의

(4) 純粹經濟損害

純粹經濟損害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상과 유체물의 물리적인 손괴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의 재산상태에 생긴 손해를 의미한다²⁴²⁾. 경제적 손실(간접손해)의 있다²⁴³⁾.

손해배상의 범위를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범위 내에 한정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은 도대체 제조물책임이 대상으로 하는 손해에는 익숙하지 않고, 이 손해는 소비자 개인보다도 기업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하면 손해의 범위가 무한정하게 확대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배상해야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²⁴⁴⁾. 그러나 일반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법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경제적 손실도 확대손해이므로 배상해 주어야 한다. 다만 손해액이 커질 염려가 있는 것은 상당인과관계의 적용에 의해 사업의 내용,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의 내용, 성질, 불법행위의 태양,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개개의 사안의 내용에 맞게 사회통념상 상식적인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손해액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²⁴⁵⁾.

(5) 懲罰的 損害賠償

懲罰的 損害賠償이라 함은 가해자의 행위가 특히 악의적이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제재와 아울러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명하여지는 손해배상이

하고 결함제품 자체의 손해는 계약책임에 의해 각각 취급하는 것으로 되면 피해자의 부담이 과대하게 되고 피해자의 구제를 저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결함제품 자체의 손해까지도 포함하여 배상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타당할 것이다.

242) 예로서, 제품의 결함에 기인한 점포의 폐쇄에 의한 휴업손해를 들수 있다.

243) 경제적 손실, 즉 간접손실의 내용은 ①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생긴 물건자체의 가치의 감소 분 ②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수리 등에 요한 비용 ③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생긴 일실이익 중 ①과 ②는 제조물 자체의 손해에서 다루었고 여기에서는 ③이 문제로 된다.

244) 미국 제2차 불법행위 Restatement 제402조 A의 '有形損害'에는 순수경제적 손해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日本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볼 수 없다. 우리나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1994년 입법시안에서도 그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순수경제적 손해가 영업용 물건에 대한 것인 때에는 그에 따른 제한을 받게된다.

245) 이치영, 전계논문, PP. 172~173.

다²⁴⁶⁾. 懲罰的 被害賠償은 영미의 보통법상 발전된 독특한 제도로 현재는 불법행위의 각 영역에 있어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폭넓게 채택되고 있다. 다만 위자료와 더불어 懲罰的 損害賠償額이 고액화됨에 따라 이의 제한을 위한 불법행위개혁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EC지령 성립시에는 전반적으로 보아 제조물책임에서의 懲罰的 損害賠償을 제조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주는 부정적 존재로 간주하여 채택되지 않았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도 懲罰的 損害賠償을 채택하고 있지 않는데, 입법시안 중 동경변호사회의 시안은 제9조에서 제조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조자에 대하여 제3조에 의한 손해금 외에, 그것의 2배를 한도로 한 부가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요망도 제8조에서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懲罰的 損害賠償은 ① 가해행위자에 대한 민사벌로서 일정한 제재의 역할을 수행하고 ② 장래에 있어서 동일 내지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억제하며 ③ 피해자에게 보다 나은 배상을 하여 줌으로써 피해자를 우대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한편 懲罰的 損害賠償에 대하여는 미국 내에서도 ① 懲罰的 損害賠償制度는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의 배상이라고 하는 민사배상제도의 목적에 반하며 제도의 목적을 가해자에 대한 제재에 둔다고 하더라도 형사법에서와 같은 보호조치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없고, ② 원고에게 실제의 피해액을 넘어 예상치 않은 부를 안겨주게 되며, ③ 책임의 유무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과할 것인가의 여부, 과하는 경우의 그 금액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자의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어 그 결과의 예측이 불가능하고, 상소심에 의한 재심이 일반적으로 곤란하고, ④ 제도의 기본목적의 하나인 유사행위의 재발억제효과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으며, ⑤ 제조물 자체의 결함의 유무에 의해 객관적으로 책임을 판단하려고 하는 嚴格責任아래에서 가해행위의 악의성이라는 주관적 요인을 근거로 懲罰的 損害賠償을 과하는 것은 일종의 이론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²⁴⁷⁾.

246) 최병록, “제조물책임의 법리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 139; 강창경,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보험개발원 제2호, 1994, P. 91.

247) 강창경, “제조물책임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보험개발원 제2호, 1994, pp. 256-257; 최병록, 전개논문, pp. 141-142.

懲罰的 損害賠償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不法行爲責任을 포함하여 懲罰的 損害賠償이 어느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에서 懲罰的 損害賠償을 인정한다면 다른 損害賠償額의 피해자 구제와 균형을 잃게 된다. 그리고 懲罰的 損害賠償이 가지는 제재적 기능이나 일반예방적 기능은 형벌이나 행정벌이 담당하여야 할 기능이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민사책임이 담당하여야 할 기능은 아니다.²⁴⁸⁾ 따라서 製造物責任에 懲罰的 損害賠償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 開發危險의 抗辯

(1) 意義와 論議의 背景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開發危險의 抗辯」이란 제조물을 유통에 놓은 시점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지식의 수준에 의해서는 제조물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했었다(개발위험)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의해 제조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²⁴⁹⁾.

과실책임주의는 결과회피의무의 전제로서 예견가능성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물이 유통과정에 놓여진 시점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수준에 의해 예견불가능했던 위험에 관하여 제조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즉, 과실책임주의 하에서는 논리필연적으로 제조물책임의 판단요소로서 제조물이 유통과정에 놓여진 시점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고려된다. 그러나 無過失責任主義 기한 製造物責任은 「缺陷」라고 하는 제조물의 객관적 평가를 책임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조물이 유통과정에 놓여진 시점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수준에 의한 제조자의 예견가능성을 판단요소로 해야 할 논리적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無過失責任主義에 기한 제조물책임의 판단요소로서 제조물이 유통과정에 놓여진 시점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수준을 고려해야 하는가 아닌가는, 이를테면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서 남겨지는 것으로 된다²⁵⁰⁾.

248) 이상경·박인섭,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보고서89-03, 1989, p. 484-485.

249) 최병록, 전제논문, p. 146.

이 문제는 미국에서는 「技術水準(state of the art)」²⁵¹⁾의 문제로서, EC지령에 있어서는 「開發危險(development risk)」의 문제로서 논해지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기술수준은 일반적으로 결함」의 판단요소로서 엄격책임이론하에 있어서도 고려되고 있으며, 제조자는 제조물이 유통과정에 놓여진 시점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수준에 의한 예견가능했던 위험에 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다가 1982년 뉴저지주대법원의 석면을 둘러싼 경고상의 결함에 관한 Beshada판결을 계기로 약간의 동요를 일으켰으나 피해자에게 극히 유리한 판결로부터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 가려는 「조용한 혁명」 현상이 진행되어 1980년대 후반 이후, 엄격책임하에서 기술수준에 관한 증거와 항변을 인정하고, 예견불가능한 위험에 관해서는 제조자에게 책임을 과하지 않는 판결과 주법이 많아져 오고 있다고 한다.

개발위험의 항변문제는 EC지령²⁵²⁾의 채택시에 가맹국이 가장 크게 대립한 문제이다. 한편, 일본의 제조물책임법²⁵³⁾은 명문규정으로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법안²⁵⁴⁾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결론은 산업계에 과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되 각 가맹국에 開發危險의 抗辯을 부정하는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2) 開發危險의 抗辯의 探否

開發危險의 抗辯의 채택여부에 관해 이의 도입을 주장하는(주로 제조자)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²⁵⁵⁾. 즉 開發危險에 대해서까지 제조업자 등이 책임

250) 김민중, 전제논문. pp. 33-34.

251) 技術水準이라고 함은 「현실적 혹은 실제적인 달성가능성, 특정업계에 있어서의 과학 및 기술적인 달성수준」으로 해석되고 있다.

252) EC지령 제15조 3항.

253) 일본 제조물책임법 제4조 1항 “당해 제조물을 그 제조업자 등이 인도한 때에 과학이나 기술상의 지식에 의해서는 당해 제조물에 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에는 동 조에 규정한 배상의 책임이 없다.

254) 제조물책임법안, 한국소비자보호원(1994), 제4조 4항.

255) 이은영,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의 필요성”, 소비자 170호, 1995. 7·8, p. 31: 에서는 製造物責任에 있어서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되, 의약품과 같이 인간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경우

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이 저해되어 기술혁신의 정체 등에 의한 불이익이 소비자에게 미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조자 등에게 그 부담능력 이상의 배상의무를 과하는 것에 의해 보험의 가입이 어려워져, 오히려 피해자가 확실한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차적인 효과로서 고도의 과학기술지식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증명책임이 제조자 등에게 귀속하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심리의 신속화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제조업자 등이 제품을 유통에 놓은 후에 과학과 기술의 진보·향상에 의해 제조물의 결함을 인식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된 경우에는 開發危險의 抗辯에 의해 제조물책임은 면책이 되지만, 그 시점 이후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의 위험성의 공표, 지시·경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정지 또는 회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책임에 의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지 않는 소비자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²⁵⁶⁾. 본래 개발위험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의 비용으로서 제조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開發危險의 抗辯에 의해 피해자의 구제가 거부된 경우 현저한 불공평이 생기게 된다. 즉 위험이 그대로 방치된 채 피해자가 속출하면 나중의 피해자에게는 개발위험의 항변을 제기할 수 없고, 기술의 개량에 의해 안전한 제품이 나와 다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결국 최초의 피해자만 희생되는 셈이다. 또한 재판에서 예견가능성을 둘러싸고 과학논쟁이 벌어지게 되어 심리의 신속화·효율화에 지장을 초래하여 재판의 장기화·복잡화를 피할 수 없어 소비자의 부담이 결코 경감되지 않으므로 무과실책임으로서의 위험책임을 인정한 의미를 반감시키게 된다.²⁵⁷⁾ 그리고 원래 開發危險의 抗辯이 상정하고 있는 科學技術知識의 수준은 매우 높은 것이어서 극히 일부의 의약품

에는 일정한 한도에서 기업이 기술·제품개발의 위험을 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 김동훈,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론적 고찰”, *고황법학* 제1권, 1994, p. 157.; 송태희, “제조물책임의 입법화와 경제적 영향”, *경영과 기술*, 1994. 9-10, p. 59.

256) 최병록, *전계논문*, p. 148; 김민중,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동향”, *저스티스* 제25권 제2호, 1992. 12, p. 34; 여기서 開發危險의 抗辯은 부인되거나 단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자고 하고 있다.

257) 이는 단지 증명책임의 전환의 의미 밖에는 없다.

이나 화학품에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것이데도, 과학기술지식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기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開發危險의 抗辯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가피한 위험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항변이 부정되지 않는다.

중간적인 입장으로서는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면 예견가능성의 거증책임을 제조자가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과실책임의 원칙과 큰 차이는 없게 될 염려가 있으나, 그래도 산업계에 무제한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는 객관적인 결합책임으로서의 전환에 의해 결합의 인정이 행위자의 심리적 비난가능성에 기초를 두는 과실책임주의보다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점을 들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결합을 판단할 때에는 과학·기술지식의 수준 등도 포함되어 종합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를 굳이 開發危險의 抗辯으로 하는 것은 결합을 판단할 때에 이것을 하회하는 과학·기술지식의 수준과 제조자 자신의 기술 수준을 판단요소로 하지 않는 것 및 開發危險에 관한 증명책임을 제조자측에서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오히려 제조자측에서 곤란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무리 과학·기술의 미발달로 인해 객관적으로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결합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손해 자체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科學技術知識」의 基準과 社會的救濟制度의 確立

책임부담이 제조자에게 있어서 경쟁조건으로 되어 開發危險의 抗辯을 채용하는 국가가 많은 세계적인 상황을 무시할 수 없어서 부득이 항변을 인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다음의 두가지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²⁵⁸⁾.

開發危險의 抗辯이 안이하게 인정되면 과실책임에 대신하여 결합책임을 도입한 의의가 감쇄되는 것으로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개발위험에 관한 예견가능성을 판단할 때의 과학·기술지식의 수준은 개개인의 제조업자 등의 수준과 업계의 평균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고, 제품의 규범적 제조자로부터 보아 입수가능

258) 이치영, 전제논문, p. 165.

한 세계최고의 과학기술지식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

개발위험과 같은 문제에 관해서는 특정 제품의 제조·판매자에게만 배상책임을 과함으로써 해결하기 보다는, 사회보장제도 등의 활용도 포함하여 사회전체가 기술 개발에 따르는 손실을 부담하여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방향일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기금에 의한 피해구제 제도에 있어서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긴 부작용에 의한 건강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제도가 있다. 이것은 의약품의 부작용에 의한 수입 판매업자로부터 기금에 대하여 거출금을 납부하게 하여, 의약품의 부작용에 의한 민사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건강피해에 관하여 이 기금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수당, 장해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6. 責任制限

(1) 責任制限限度

제조자 등이 미리 거래상대방과 제조물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약정하거나 제조물의 표시나 취급설명서 등에 일방적으로 제조물책임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기재한 경우 그 특약 내지 기재의 효력이 문제된다. 제조자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그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책임주체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risk)의 상한을 파악하여, 보험 등에 의해 위험(risk)을 효율적으로 막는 것은 가능하게 하고 막대한 損害賠償金の 담보에 의해 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독일과 같이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않고 책임을 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한도액을 설정한다고 하는 전통이 없다는 것. 둘째, 제품에 의해 생기는 피해의 내용과 정도는 제품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모든 제품의 위험(risk)에 대응할 수 있는 한도액을 통일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셋째, 배상이 책임한도액에 달한 경우에 그 후에 청구자에 대한 배상의 취급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²⁵⁹⁾ 넷째,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 모든 피해자의 청구가 다 모인 다음에 배상을 행한다고 하면 구제가 현저히 늦어지는 것. 다섯째, 피해총액이 한도액을 상회한 경우에 피해자 전원이 피해액 이하의 배상밖에 받지

259) 특히 이러한 현상은 連鎖的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현저하다.

못하므로, 별도로 과실책임에 의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책임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責任限度特約

자기의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책임한도특약을 붙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자기의 직접의 거래상대방에게만 미칠 뿐이고, 제조물의 유통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극히 한정된 범위에만 적용된다. 또한 가령 사전에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하는 취지의 기재가 제조물의 표시와 취급설명서 등에 있어, 그 효력이 거래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문제로 된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인적손해에 관한 면책특약에 대해서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²⁶⁰⁾ 이에 관한 입법예로서는 독일의 製造物責任法²⁶¹⁾에서는 본 법에 의한 제조자의 배상무는 사전에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로 한다. 한편 EC지령²⁶²⁾에서는 본 지령에 의해 발생하는 제조자의 책임은 피해자와 책임제한 또는 책임배제에 의해 제한 또는 배제되지 않는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²⁶³⁾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에 관해서는 일본 민법 제90조(우리 민법 제103조)가 적용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한국소비자보호원법안(1994)²⁶⁴⁾에서는 이 법에 의한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무효로 한다.

(3) 免責額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일정금액이하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 등의 책임을 면제할 것인가가 문제로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소액사건이 소송으로 되는 경우가 적고, 면책을 인정하면 과실책임에 의해 처리되게 되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도모되지 않게 될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책액을 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260) 民法 第103條.

261) 제14조.

262) EC指令 제12조.

263) 일본 제조물책임법 제6조.

264) 한국소비자보호원(1994)법안 제7조.

않다. 다만, EC지령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이러한 경우 우려할 바가 아니다²⁶⁵⁾.

7. 責任期間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손해가 생기는 경우에 피해자가 제조자 등을 상대로 무한한 제조물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된다. 피해자를 보호의 측면에서 본다면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상 그로 하여금 언제든지 제조자 등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오랜 기간이 경과하면 제조물개발시의 기록이나 제조 당시의 기술수준 등과 같은 제조자 등의 소송방어에 필요한 증거가 소멸되어 막상 製造物責任訴訟이 제기되더라도 제조자 등의 방어가 곤란하게 된다. 또한, 무한정 잠재적인 책임추궁이 계속되면 제조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제품개발계획이나 경영계획의 수립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이 영원히 존속하는 것을 막고 제조자 등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견지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피해자의 損害賠償請求權을 부정할 이유가 있다.

이에 대하여 입법예를 보게되면, 독일의 製造物責任法에서는 賠償請求權은 損害, 缺陷 및 賠償義務者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²⁶⁶⁾ 그리고 배상청구권은 제조자가 손해를 일으키는 제조물을 유통시키는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단, 그 기간 중 청구권에 대하여 소송절차나 독촉절차가 계속 중이면 그러하지 아니한다.²⁶⁷⁾ 일본의 製造物責任法은 損害賠償請求權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알고 있었던 때로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그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도 이와 같다.²⁶⁸⁾ 전항 후단의 기간은 신체에 축적된 경우에 신체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265) EC지령 제9조에서는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정액 즉, 500ECU를 면책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66) 독일 제조물책임법 제 12조 1항.

267) 독일 제조물책임법 제13조.

268) 일본 제조물책임법 제5조 1항.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발견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²⁶⁹⁾ 우리나라 한국소비자보호원입법안(1994)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조자를 안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²⁷⁰⁾ 이 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은 제조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신체에 축적된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²⁷¹⁾ 이러한 입법예에서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으로 파악되고 있는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는 별도의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766조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는 몇가지 불확실한 점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²⁷²⁾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766조의 1항에 있어서 가해자란, 제조물의 결함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정을 책임요건으로 하고 있는 제조물책임의 경우에는, 배상의무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에 소멸시효의 진행을 개시하는 요건으로서 결함에 의한 피해자의 인식을 필요로 하느냐 하는 점에 관하여 명백한 규정이 없어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배상의무자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에 기한 배상의무가 발생하고 있는 것, 즉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고 있는 인식이 전제로 되기 때문에, 결함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민법 제766조 2항의 장기의 기간제한에 관해서는 이를 제소기간이라고 하는 것과 기산점인 불법행위시를 손해발생시로 해석하는 것에 관하여 판례·학설상 아무 이견이 없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제조물책임의 경우, 신체에 축적한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것으로 되는 물질에 의한 손해(축적손해)나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잠복손해)의 경우에 특별히 배려할 필요는 없게 된다. 그리고 이 장기의 기간제한에 관하여 제조물의 평균적인 내용연수와 기록의

269) 일본 제조물책임법 제5조 2항.

270) 한국소비자보호원입법안(1994) 제8조 1항.

271)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입법안(1994) 제 8조 2항.

272) 이치영, 전제논문, PP. 89~90.

보관을 고려하여 EC지령에서는 「제조물이 제조자에 의해 유통과정에 놓여진 날」로부터 10년의 법정책임기간을 정하고²⁷³⁾,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당해 제조업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때」로부터 10년의 법정책임기간을 정하고 있는 바²⁷⁴⁾, 모두 민법의 기간보다 빨리 진행이 개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인도시를 배상의무자가 제조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한 때라고 해석하여 동일한 제조물이더라도 제조업자와 표시제조업자가 함께 배상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각각 배상의무자별로 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된다. 이에 대하여 EC지령의 경우에는 모든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진행을 개시하는 것이고 각각의 배상의무자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있다.

우리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또한 장기의 기간제한의 기산점을 일본의 製造物責任法 이상의 규정이 바람직할 것이다²⁷⁵⁾.

8. 過失相計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의 손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피해자의 행위가 개입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제조자 등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행위를 참작할 것인가, 만일 참작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참작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한 입법예로는 미국의 제2차 불법행위 Restatement에 의하면, 기여과실은 본 조에 있어서도 항변된다. 이용자 또는 소비자가 결함을 발견하고 위험을 알면서 부적절하게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²⁷⁶⁾ EC지령에서는 모든 상황을 고려한 결과 그 손해가 제품의 결함 및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할

273) EC指令 第11條.

274) EC지령 제5조 1항.

275) 이치영, 전제논문, PP. 192-193.

276) 미국 제2차불법행위법 Restatement 제402조 A 주석n(기여과실).

경우, 제조자의 책임은 감면될 수 있다.²⁷⁷⁾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²⁷⁸⁾ 여기서 말하는 민법의 규정은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규정인 제722조 2항이 해당한다. 우리나라 한국소비자보호원립법안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피해자가 결함을 알고 제조물을 사용한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²⁷⁹⁾. 따라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過失相計에 의해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비율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의 적용에 관해서는, 이 중 重過失의 경우에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행해지고 있다.²⁸⁰⁾ 이러한 경과실에 의한 過失相計는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그 근거로 하는 것은 피해자보호를 위해 經過失(誤用)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이 만들어지도록 촉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過失相計를 重過失의 경우에 밖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製造物責任의 경우에 過失相計를 제한하는 공평의 관점으로 부터의 근거가 타당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후자의 경우에 까지 過失相計를 제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또한 불법행위법에 있어서는 과실상계 자체가 현재의 사법제도하에서 법관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고,²⁸¹⁾ 重過失에 한한다고 하면 重過失의 유무가 새로운 쟁점으로 되어 신속한 피해자구제를 방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중과실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²⁸²⁾.

따라서 민법의 규정과 다른 過失相計의 규정을 새로 마련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여기에서의 과실의 개념에는, 제품의 사용시에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오용은

277) EC지령 제8조 2항.

278) 일본 제조물책임법 제6조.

279)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안(1994), 제9조..

280) 이는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입법안(1994) 제9조에서도 같은 취지이다.

281) 우리 민법 제396조에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763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위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일반불법행위에 관하여 과실상계가 인정됨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특수불법행위인 무과실책임을 요구하는 제조물책임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282) 이치영, “제조물책임입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 191.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결함을 인정할 때에 이미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까지 過失相計는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²⁸³⁾

9. 履行確保

제조물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의 구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배상의 이행 확보조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의 배상의 이행확보문제가 있다. 이는 주로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강제나 정부의 보장사업 등과 관련하여 문제로 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製造物責任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실제의 운용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한 예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책임보험에 가입을 강제하고, 가입을 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하므로 우리는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도 따르고 입법예도 없으므로, 제조물이나 책임주체의 범위를 한정하여 필요성이 높고 법기술적으로도 실행가능한 경우에만 가입강제를 고려할 수 있겠다.²⁸⁴⁾

10. 訴訟節次上的 立證責任

입증책임이라 함은 소송상 어느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법률을 판단하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283)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판결; “민법 제763조와 제369조에 규정되어 있는 과실상계 제도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것과는 그 취지가 달라 피해자가 사회공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의 책임 및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원리인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성립에 요구되는 엄격한 의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확대되게 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84) 김동훈, ‘제조물책임법의 입법론적 고찰’, 고헌법학 제1권, 1994.1, PP. 157-158; 이치영, 전제 논문, P. 186.

불이익을 말한다²⁸⁵).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부담시키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조물소송에서 기본적으로는 ① 결함의 존재, ②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수, ③ 결함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 ④ 책임주체, ⑤ 손해를 야기한 물건이 제조물인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立證責任의 논의는 주로 ①과 ③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입법예로는 미국에 있어서는 제품이 판매자의 손을 떠난 시점에 결함상태가 있다고 하는 입증책임은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있다. 그 시점에서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한 입증책임을 다한 것이 되지 않는다²⁸⁶). EC지령에서는 피해자는 손해, 결함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²⁸⁷ 독일도 EC지령과 같다.²⁸⁸ 우리나라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입법시안에서는 제조물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함으로 생길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²⁸⁹ 오늘날 제조물은 고도의 기술과 복잡한 공정에 의해 제조되고 있으며, 제조과정에 관한 정보는 전문가인 제조자 등에게 독점되어, 일반 소비자가 제품에 내재하는 위험성을 미리 아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거의 편재현상을 해결하여 소송당사자간의 공평(무기대 등의 원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피해자측의 증명책임을 경감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Discovery 제도와 같은 증거수집수단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증거수집수단으로서는 그나마 한정적이어서 이용하기 어려운 서제출명령²⁹⁰과 증거보전²⁹¹밖에 없으며, 또한 독일의 정보청구권과 같은 실체법상의 정보개시제도도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인 피해자측과 피고기업측의 정보·지식량의 불균형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히 강하게 요청

285)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0, P. 569.

286) 미국의 제2차 불법행위 Restatement 제402조 A 주석g(결함상태).

287) EC指令 제4조

288) 독일 제조물책임법 제1조 4항.

289) 한국소비자보호원, 제조물책임법안(1994), 제6조 제1항. 제2항.

290) 민사소송법 제315조 이하.

291) 동 제346조 이하.

되고 있다²⁹²⁾. 이러한 방법으로서²⁹³⁾, 첫번째의 방법은 실체법상 어느 정도로 추정규정을 도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두번째 방법은 피해자측의 證據蒐集手段과 情報請求權을 널리 인정하는 문제이며, 세번째는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原因究明機關과 裁判外紛爭處理制度를 정비하는 것이다²⁹⁴⁾.

(1) 推定規定의 導入 問題

제품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에 관하여 제조자 등에 대하여 배상청구하기 위한 요건사실은 첫번째, 유통개시시에 제품에 결함이 존재한 것. 두번째, 손해가 발생한 것. 세번째, 유통개시시의 결함과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사실에 관해서는,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구체적인 권리발생사실을 주장 입증하는 민사소송의 통상의 원칙에 의하면 피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제품사고 중에는 제품 자체가 멸실하여 결함의 입증이 곤란한 것, 사고발생의 메카니즘이 불명하여 결함의 존부가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것, 결함의 존재는 명확하지만 결함이 생긴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것, 결함의 존재는 명확하지만 결함이 당해 결함 이외의 원인에 의해서도 동일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것 등이 있어 소비자가 이들 요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피해자측의 입증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정규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산업계측에서는 소비자의 이용상황은 제조자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인데도 추정규정의 도입에 의해 제조자로부터 유래하고 있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도 제조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²⁹⁵⁾ 제조물책임의 경우에는 첫번째, 결함의 존재. 두번째,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존재. 세번째, 결함의 존재시기의 세가지의 추정규정이 생긴다.

1) 缺陷의 存在의 推定

결함의 존재의 추정은 제조물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손해가

292) 이를 정보·증거의 구조적 편제의 구체수단이라고 한다.

293) 小林秀之, “訴訟手續上の問題點とは”, 法學 세미나, (NO. 478), 1994. 10, P. 27.

294) 이치영, 전계논문, p. 178.

295) 그러나, 학계나 법조계·소비자단체에서는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물에는 결함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제로 되는 사실 자체가 추상적·주관적인 사실이어서 그것을 기초로 규범적 평가로서의 법률적 요건사실을 법률상 추정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또한 전제사실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결함의 전제를 입증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게 되므로 추정규정을 두는 의미가 별로 없다. 오히려 결함의 주장입증의 정도에 관하여 지금까지의 결함 부위의 구체적 특징까지 요구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결함이란 제품에 대한 안전성 기대의 시점으로부터의 전체적인 평가라 할 수 있으므로, 그 특징의 정도를 제품의 특성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결함의 존재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주장입증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증명부담이 상당히 가벼워지게 될 것이다.²⁹⁶⁾

2) 因果關係의 推定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추정이란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사용한 경우에 그 결함에 의해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와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와 제조물의 결함과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과관계가 추정되면 인과관계의 가능성이 없는데도 제조자 등에게 책임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다양한 잠재적인 원인을 생각할 수 있는 생화학적 인체피해의 경우에는 제조자 등의 반증이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추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량피해를 발생시키는 약해·결함식품사례의 경우에는 현재의 이론하에서도 경험측에 의한 역학적·통계적 인과관계의 인정 등에 의해 적절히 해결되고 있으므로 굳이 추정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생기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결함의 존재와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해서는 굳이 법률상의 추정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른 적절한 사실인정과 사실상의 추정의 유연한 활용에 의해 적절하고 공평한 입증부담의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진위불명의 사례의 실증적인 검증의 결과 전제사실을 적절하게 구체화하거나 판례를 통해 유형화하여 법기술적으로 기준을 명확화 할 수 있다면 사안에 따라 결론이 각각

296) 예를들면, TV를 보통으로 사용하다 불이 난 경우라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엑셀을 밟지 않았는데도 급가속되었거나 한 경우에도 결함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을 피할 수 있으므로 추정규정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²⁹⁷⁾.

3) 缺陷의 存在時期의 確定

제조물책임의 출발은 제조자가 결함제품을 제조·출하한 것에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유통개시시의 결함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유통개시시의 제품의 상황에 관해서는 각종 데이터나 설계도, 제품검사의 기록 등 아무런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자기 수증의 제품 이외에는 아무런 입증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은 피해자에게 유통개시시의 결함의 존재를 입증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공평성을 잃은 것이다.²⁹⁸⁾ 이러한 경향은 제조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특히 현저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손해발생시의 결함의 존재와 그 인과관계를 증명한 때에는, 그 결함이 제품의 유통개시시에 존재한 것으로 추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제품이 피해자의 관리하에 있고, 또 제3자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제조자에게 자신이 제품을 유통시키지 않았던 것이나, 유통개시시에 결함이 없었던 것, 또는 유통개시후에 결함이 생긴 것과 같은 면책사유의 입증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면 입증책임의 현실적인 분배라는 방법으로 양자의 이익이 적절하게 조정되는 것으로 될 것이다. EC지령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여 소비자가 손해발생시의 결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자는 그 손해를 생기게 한 결함이 제조자가 그 제품을 유통에 놓은 때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그 후에 생겼을 개연성이 있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⁹⁹⁾ EC지령에서는 「추정」이라고는 명언되어 있지 않지만 제조자의 면책의 근거로서 피해자가 손해발생시에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그 결함을 제조자가 생기게 했다고 추정된다고 설명되고 있다(Dies wird vermutet). EC지령과 같은 내용의 입법을 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이미 입법되기 이전부터 판례에 의해 제품이 유통되기

297) 이정세, 전계논문, PP. 110-112.

298) 최병록, “제조물책임의법리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P. 133-134.

299) EC指令 第7條(b).

이전에 제품을 검사하여 결과를 보존할 실체법상의 의무로서 현상보존의무(검사보존의무·기록보존의무)를 인정하여 결함의 유통시 존재의 개연적 추정을 이로부터 도출하고 있었던 것이 주목할 만 하다. 그 추정의 근거는 소비자의 보호이며, 구체적으로는 첫째, 제조자가 피해자보다 결함에 근접한 입장에 있다는 것. 둘째, 제조자는 출하할 때에는 검사를 하여 그 검사자료를 보존할 수 있는 것. 셋째,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종류의 증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지적되고 있다. EC지령에서는 이때의 면책증명의 정도를 영미법상의 증거우월의 원칙에 의한 개연성의 증명으로 족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민사소송법의 완전증명의 원칙³⁰⁰⁾과 맞지 않아 문제기 될 수 있으나, 양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정한다는 의미에서는 증명의 경감조치를 채용할 것이 요망된다.

한편 이 「결함의 존재시기의 확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추정이라고 명언하고 있지 않더라도 증명의 규정이 존재하는 것의 전제로서 혹은 이러한 규정의 반대해석으로서 피해자가 손해발생시의 결함을 증명한 이상은 유통개시시에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추정된다고 해석하여, 그 시점에서 결함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던 것에 관해서는 제조업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EC지령의 규정은 면책사유라 해도 그 증명의 정도가 개연성의 증명으로 족하다고 하고 있고 또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이 제조물이 유통에 놓여진 때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 요건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므로 추정이라고는 할 수 없지는 않느냐는 성질에 관한 반론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제조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조물이 유통에 놓여진 때에 결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므로, 피해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된다.

이 입장에 있어서는 제조업자 등은 EC지령 제7조 (b)호 소정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의해 결함의 증명을 반복하거나 증명을 동요시키는 것으로 되어 어쨌든 결함의 증명불충분의 상황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반증의 이론으로서 실무상으로도 일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법으로서 특히 명문의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b)호는 결함의 존재시기에 관한 추정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결한 것이다. (b)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종래와 마찬가지로 제조물의 성질, 제품사고의 태양, 증거의 내용, 증거의 제출상황 등의 사정에 의해

300) 객관적으로는 고도의 개연성을,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법관의 확신을 요구한다.

개개의 사안별로 결함의 유무가 판단될 수 있다. 제품의 제조·인도시의 결함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직접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사실에 의해 추인하는 것에 의해 족한 것이고, 실제로도 이러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증명이 일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제품사고의 발생시에 결함이 존재한 것이 유력한 간접사실로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제출법안도 결함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그 존재를 추정케 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별개의 규정을 두는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기업측으로서는 극히 엄격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³⁰¹⁾

(2) 證據蒐集手段·情報請求權

실체법에 속하는 추정규정은, 증명책임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필요사실이 진위불명인 경우 어느 한쪽에 불이익을 부담시켜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진위불명 및 증명책임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안해명을 시도하는 방법으로서, 소송법에 있어서는 증거개시의 일종인 證據提出命令 및 그 거절에 대한 제재가 실체법의 영역에서는 정보청구권을 製造物責任法에 규정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 證據蒐集手段

우리나라에서는 文書提出義務와 檢證物提出義務는 극히 한정되어³⁰²⁾ 있고 그 위반한 경우의 규제도 약하다³⁰³⁾. 證據保全³⁰⁴⁾을 증거개시적으로 정보와 증거의 수집을 위해 이용하는 것에는 비판도 있고 한계가 있어 부정적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규정의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법원의 文書提出命令은 이를 거절할 경우의 효과와의 관계에서 부득이 소송당사자에 한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법률관계가 형성되어야

301) 최병록, 전제논문, P. 134.

302) 民事訴訟法 第315條이하, 第338條.

303) 민사소송법 제320조, 제338조에서는 第三者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당사자도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데에 불과하다.

304) 民事訴訟法 第346條 이하.

비로소 가능하게 되어 제조전에는 證據提出命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범위가 좁은 단점이 있다. 일본의 PL입법연구회의 입법제안·제조물책임법³⁰⁵⁾이 있다. 동 제안 제13조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조자 기타 결함발생에 관여한 자로서 당해 소송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결함 또는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특정된 문서 기타의 증거 또는 당해 제품사고에 관하여 당연히 수집해 두어야 할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결함 또는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³⁰⁶⁾. 이 규정은 특정된 증거에 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개시를 인정한다고 하여, 요건을 좁혀 개시의 남용에 대처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우리 민사소송법에는 상대방이 소지한 증거의 포괄적 개시를 목적으로 한 공판전개시제도는 없지만, 文書提出命令制度를 잘 활용하면,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증거의 편재현상에서 오는, 당사자간의 실질적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다.³⁰⁷⁾

2) 情報請求權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더라도 그는 적어도 추정사실의 전제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조자 등은 피해자의 전제사실의 입증에 대응하여 그 반대사실의 입증이나 전제사실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에게 製造物責任訴訟과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는 것이 요청된다.

제조물책임을 추궁하려고 하는 피해자로서는 오히려 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관련하는 다수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송전, 소송외에서 증거의 제출을 강제하는 수단으로서 실제법상의 정보청구권에 의거한다고 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다. 정보청구권은 우리 민법의 위임계약에 있어서의 전말보고의무³⁰⁸⁾나 위임과 유사한 법구조인 組合³⁰⁹⁾, 事務管理³¹⁰⁾등에서 겨우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단지

305) 加藤雅信, “製造物責任法案とその問題”, 判例タイムズ, (NO. 842), 1994. 6. 15, P. 34.

306) 日本の PL立法研究會의 立法提案. 製造物責任法 제5조

307)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0, p. 609.

308) 民法 第683條.

309) 民法 第710條.

310) 民法 第738條.

정보의무의 이면의 정도로서만 존재할 뿐 실무상으로는 거의 대두되지 않지만, 독일에서는 情報請求權과 관계있는 실체법상의 조문이나 信義誠實의 原則을 정한 독일 민법 제242조에 의하여 확실, 판례상 정보청구권의 적용범위가 확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바이오기술의 제조물책임에 관해서는 명문으로 피해자측이 情報請求權이 인정된 바 있고³¹¹⁾, 또한 환경책임법에서도 피해자의 시설보유자나 관청에 대한 정보청구권을 널리 인정하고 있다³¹²⁾, 損害賠償請求權의 요건사실의 해명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기대되는 것으로서, 최근 긍정적으로 논해지고 있는 소송상의 事案解明義務³¹³⁾와 함께 장래의 연구·검토과제로 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事案解明義務의 법리는 고도기술사회에 내재하는 위험에 기인하여, 사안해명자료·사안해명능력의 편재가 인정되는 각종 제조물소송 등에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情報請求權의 이론이 그다지 발달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본안소송에서의 수단적인 권리로서 신속히 실현되지 않으면 의의를 상실하게 될 민법상의 정보청구권을 소송에서 당사자가 독립적으로 행사하기가 어려워 文書提出命令이나 증거보전과 같은 절차법상의 간이절차를 소송에 첨부하여 情報請求를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stufenklage, zpo § 254)에 의해 정보청구소송과 본래의 소송을 결합할 수 있으므로 본래 소송청구상 불특정한 부분을 정보청구소송에 의해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적용범위도 ZPO § 254가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실체법상의 각종의 정보청구권에까지 인정되고 있다. 증명방해가 있는 것으로서 불리하게 평가되므로,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정보청구권을 실효성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단계소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證明妨害理論도 최근에 와서야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情報提供義務違反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그다지 행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변해 각종 정보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해 가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행법하에서도 情報請求權의 행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단계소송에 의해 운용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316조 제2호를 경유한 문서제출명령이나 의무위반에 대한 증명방해

311) 獨逸遺傳子工學法 第35條

312) 獨逸遺傳子工學法 第8條.

313) 이치영, 전제논문, P.185.

에 의한 간접적인 강제방법³¹⁴⁾ 이외에 증거보전이나 만족적 가처분의 활용에 의해 情報請求權의 규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原因究明機關· 裁判外的 紛爭處理制度의 整備

1) 原因究明機關의 整備

제조물책임소송에서는 무엇보다도 제조물의 결함의 존재와 그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중요하다. 제품기관분쟁에 있어서는 결함의 유무와 인과관계가 쟁점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 데, 원고인 피해자측에게는 정보접근과 지식의 점에서 사고원인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공평한 원인구명기관을 정비하여 재판상이 이용할 수 있게 하면, 피해자의 입증부담의 경감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사고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주어 사후 사고의 재발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³¹⁵⁾ 또한 근거없는 청구의 다발에 의한 남소의 폐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으로 주목을 모은 대규모사건의 경우에는 공적 내지 제3자적인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연구가 활발히 행해질 수 있어 피해자의 증명부담이 경감되고 인과관계의 해명도 이루어져 피해자 구제가 가능하지만, 단발적 내지 소규모의 사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사고의 대부분이 소액피해인 것을 생각할 때, 중립적이고 염가로 이용할 수 있는 원인구명기관을 정비하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제조물책임법 중에 제3자적인 전문기관에 의한 감정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³¹⁶⁾

2) 裁判外紛爭處理制度

제조물책임사고의 상당수가 소액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재판에 의해 처

314) 민사소송법 제316조 1,3호; 문서제출의무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소지한 때와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의 소지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에도 인정된다.

315) 김동훈, 전계논문, pp. 157-158; 이치영, 전계논문, p. 186.

316) 이치영, 전계논문, pp. 186-187.

리하면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소송지연을 초래하는 등 사법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일반으로서도 재판외 분쟁처리의 정비와 활용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製造物責任制度가 도입되는 경우,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부담은 경감될 것이 기대되지만, 소비자측에서 보는 경우, 소송에 요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생각하면 재판에 익숙하기 어려운 비교적 소액의 피해와 상대교섭에 의해 해결이 되지 않는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는다. 제조자측에서 보아도 製造物責任制度의 도입을 계기로 하여, 이것을 어떻게 신속하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생기는 것으로 된다. 상대교섭에는 소비자측에게는 공정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사업자측도 여러 문제의 대응에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³¹⁷⁾

그래서 당사자 쌍방에게 있어서 심리적으로 만족하는 해결결과를 얻는 무대를 설정하여, 공정·중립적인 제3자가 사안에 관하여 중립적인 의견과 판단을 제시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면, 상대교섭과 비교하여 불투명성·불공정성을 상당 정도 불식하게 될 것이다³¹⁸⁾.

(4) 集團訴訟制度 및 團體訴訟制度의 導入

오늘날 제조물책임소송의 경우 상품의 대량생산·대량판매에 의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 지고, 거래되는 액수는 소액이지만 공통의 원인에 의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제대로 수행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피해자 전원을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해 피해자 중의 1인이나 수인이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자가 대표당사자가 되거나 또는 단체가 정관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소비자보호 등 공익의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의 지역적 활동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걸치고, 법인의 인적 구성 및 활동실정으로 보아 소비자보호 등 공익적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

317) 제조물결함으로 인한 피해구제제도는 화해, 조정, 중재 등의 분쟁의 자율적 구제제도와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처리 및 소비자보상기구설치지정제도 등에 관해서는 한삼인·김상찬, 전계는 문, pp. 147-151.

318) 이에 관하여서는 ombudsman제도의 도입하여 활용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실제법적 규범은 분쟁을 처리할 때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핵심으로 되는 것으로서, 재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재판외의 분쟁처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된다.

고, 법인의 목적을 지지하는 모든 이에게 가입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에 대표단체가 되어 소를 제기하고, 그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원에게 미치게 하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오늘날의 소비자분쟁은, ① 원고가 다수라는 점, ② 원고 1인의 청구금액은 비교적 소액이지만 이를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며, ③ 다수원고의 청구원인이 공통된 것이며, ④ 청구금액도 다과를 불문하고 정형화된다는 것이 특색이다. 이러한 종류의 청구를 대표자나 단체가 소송을 수행하여 피해구제를 하는 제도로서는 미국의 集團訴訟과 독일의 團體訴訟이 있다.

集團訴訟(class action)은 피해자집단의 개인 또는 수인에게 전원을 대표하여 소송수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미국연방민사소송법 규칙 제23조³¹⁹⁾에 제기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團體訴訟(Verbandsklage)은 다수고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단체가 개별적 이익의 대표자로서 가해자에 대하여 不作為請求權과 損害賠償請求權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319) 미국연방소송법 규칙 제23조의 제기요건으로서 ① 제소시부터 개별구성원까지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다수(최소한 30~40명)의 공동이해관계의 집단이 존재하고 그 집단의 전원을 당사자로 병합하여 진행하기가 곤란할 것, ② 그 집단에 공통되는 법률문제 또는 사실문제가 존재할 것, ③ 소송을 제기·유지하는 대표당사자의 청구나 공격·방어방법이 집단구성원의 그것과 같이 전형적일 것, ④ 판결은 결석구성원에게도 영향을 주므로 대표자가 그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보호할 수 있을 것 등이다.

第 5 章 結 論

제조물책임은 결합제조물에 의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 등에 생긴 손해를 최종소비자나 제3자에 대하여 배상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에서는 불법행위법상 엄격책임법리를 적용하였으나, 한때 製造物責任法の 폐지 또는 개편논의가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EU회원국 등은 거의 無過失責任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開發危險의 抗辯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제조물책임의 입법시에 있어서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리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製造物責任의 立法化를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으나 결합제조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현행법의 책임법리만으로는 그 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제조물의 유통이 국제적으로 거래·유통되고 있어 제조물책임이라는 국제적인 조류와 조화를 고려해 볼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製造物責任의 立法化는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製造物責任의 立法化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제고 및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세계각국의 제조물책임의 입법동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미국의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보험위기문제, 독일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법에 의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판외의 분쟁제도가, EC지령에 의한 EU회원국의 option조항에 관하여 각국의 사회·경제상황에 맞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입법은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 다소 미흡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책임을 둘러싼 문제는, 특수불법행위의 법리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여 왔으나, 여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제조물책임의 문제는 '입법화'의 방법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러한 필요성과 외국의 입법동향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製造物責任의 立法化 方向을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고 본다.

① 우선 모든 제조물책임의 입법은 제조물을 망라하는 포괄입법과 독립한 특별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 보호법의 하나로

보되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를 포함한 피해자 일반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과의 整合性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③ 그리고 제조물책임은 불법행위법상 無過失責任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④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모든 動産을 포함하며, 미가공 토지를 제외한 모든 不動産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의약품에 대하여는 독일의 개별법에서 본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특별한 규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⑤ 책임주체로는 제1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제조자와 표시제조자, 그리고 수입자를 규정하되 판매자를 비롯한 공급자는 제2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⑥ 제조물의 결함은 통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로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⑦ 제조물책임의 효과로서 위자료를 포함한 인적손해와 결함제조물 자체에 대한 손해를 제외한 모든 물적손해를 인정하나 懲罰的 損害賠償은 제외되어야 하겠다. ⑧ 복수의 책임주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인정하여야 하겠다. ⑨ 책임주체의 면책사유로 開發危險의 抗辯은 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⑩ 製造物責任에 있어서도 過失相計를 인정할 필요 있다. ⑪ 책임주체의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은 인적손해 및 개인용 물건에 대한 물적손해에 한하여 무효로 하여야 할 것이다. ⑫ 消滅時效期間과 除斥期間을 모두 인정하되 기산점에 있어서 민법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⑬ 그리고 결함의 존재 및 존재시기, 그리고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법률상의 추정규정을 두어야 한다. ⑭ 단체소송 및 집단소송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⑮ Recall규정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여야 하겠다.

지금까지 製造物責任의 立法化 方向에 관하여 논하여 보았는데, 본 논문을 종결 지으면서 다소 다음과 같은 점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므로 이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첫째, 제조물책임의 입법이 우리나라의 산업 및 경제에 미칠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에 관하여 실증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제조물책임의 입법이 우리나라 산업에 일시적 내지 부분적으로 미칠 영향을 내세워 제조물책임의 입법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판단이다.

둘째, 배상책임의 문제로서 책임보험의 확보방안 및 운영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이는 제조물책임의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간략히 언급하는 수준에 한정했다.

셋째, 피해자가 제조자 등에게 소송외적 절차에 의하여 제조물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할 필요도 있다. 다만 제조물책임소송 전반에 공통된 것이므로 소비자관련소송 전반과 관련하여 깊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관하여 간략히 언급하는 수준에 한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미국·독일·일본·EC회원국 등의 세계 각 나라의 製造物責任法을 거울삼아 우리 사회·경제적 여건에 보다 합리적이며, 우리나라의 기업이 받아들일 수 있고, 소비자보호에 보다 더 유익한 입법이 되어야 하겠다.



參 考 文 獻

I. 國內文獻

【單行本】

1.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2.
2.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3.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1994.
4. 권영준, 「결합제조물의 민사책임연구-지시·경고의무를 중심으로」, 형설출판사, 1987.
5. 김명화, 「제조물책임소송에 관한 연구- 당사자와 입증책임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1995.
6. 강창경·최병록·박희주,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7. 김준호, 「민법연구」,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박영사, 1994-1996.
_____, 「민법판례100선」, 법문사, 1996.
8. 박세일, 「법경제학」, 박영사, 1994.
9. 정책세미나자료, 「제조물책임의 입법방향」,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10. 조문부의 공저, 「자치의식과 개발 및 환경정책」, 법률행정연구원, 1997.
11. 임정현, 「제조물책임의 입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1995.
12. 엘빈토플러, 이계행 감역, 「권력이동」, 한국경제신문사, 1993.
_____, 「제3의 물결」, 한국경제신문사, 1993.
13. 오석락, 「입증책임론」, 일신사, 1991.
14.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15. 정동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3.
16. 한국법제연구원, 「제조물책임의 법제화」, 1994.

17. 한봉희, 「제조물책임법론」, 대왕사, 1997.
18. 한국법제연구원, 「제조물책임의 법제화」, 1994.
19. 황적인·이상정, 「소비자보호법」, 대학출판사, 1993.

【論文】

1. 김성탁, “제조물책임의 비교법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1992.
2. 김민중, “제조물책임의 입법화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동향”, 저스티스 제25권 제2호, 1992.
3. 김동훈, “제조물책임의 입법론적 고찰”, 고향법학 제1권, 1994.
4. 강창경, “제조물배상책임의 범위와 배상제도 정착 방안”, 대한손해보험협회, 제329호, 1996. 3.
5. 김상용,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 인권과 정의, 제217호, 1994.
6. 김형배,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합의 개념과 책임귀속”, 「손해배상법의 제문제」, 황적인박사 화갑기념, 박영사, 1990.
7.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필요성 및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996. 8. 31, 제96-15(통권 제43호)
8. 加藤雅信, 이치영역, “민법의 관점에서 본 제조물책임의 현상과 과제”, 소비생활연구 제5호, 1990.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9. 남효순, “프랑스법상 전매수인의 직접소권—최초매도인의 제조물하자에 대한 직접계약 책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5, 제37권 1호.
10. David Debusschere, Rober Heft, 양창수 역, “미국의 제조물책임법”, 저스티스 제27권 제1호, 1994.
11. 문기호·김재국, “리스계약과 제조물책임”, 목포대학교 논문집 제13집 제2호, 1992.
12. 박기동, “미국의 제조물책임소송 — 불법행위법상의 엄격책임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1994.
13. 飯塚和之, 김윤구역, “일본에 있어서의 제조물책임의 현상”, 충북대학교법학연구 제5권, 1989.

14. 송태희, “제조물책임원칙의 법경제학적 분석”,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15. 이진용, “제조물책임의 비교법적 고찰”, 영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16. 이현종, “제조물책임의 입법에 있어서 제조물의 범위와 책임의 주체”, 공군법률논집, 1996.5.
17. 이치영, “일본의 제조물책임”, 한국재산법학회, 제12권 1호, 1995. 12. .
 _____, “제조물책임입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18. 임정현, “제조물책임의 입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19. 어인의, “일반불법행위로서의 제조물책임의 문제점”, 청주대학교 법학논집 제8집, 1994.
20. 이상정, “제조물책임법 제정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한국재산법학회, 제12권1호, 1995. 12.,
21. 원상희, “제조물책임제도의 도입과 기업의 대응전략”, 기업경제 제23호, 1995.
22. 이운조, “항공기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23. 이정세, “제조물책임소송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24. 이정식,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과 입법론”,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24. 윤선희, “기술발전과 제조물책임”, 1. 2. 3., 한국발명특허협회, 제235. 236. 237호, 1995,
25. Erwin Deutsch, 김민중 역, “독일법에 의한 생산물책임과 유럽공동체지침”, 동아법학 제9호, 1989.
26. 연기영, “생산물손해배상책임의 입법론적 과제”, 장경학박사 고회기념논문집, 1987.
 _____, “생산물책임의 생성과 입법동향”, 소비자문제연구, 제14호, 1994.
27. 전광백, “소비자신용정보와 소비자보호”, 「현대민법의 전망」, 범주서영배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1995,

28. 최병록, “제조물책임의법리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29. 차일권·이준섭·지연구, “외국의 제조물책임 동향과 우리나라의 실태” 보험개발원, 1995.
30. 황적인, “제조물책임의 방향과 문제점”,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4. 9.
 _____, “제조물책임의 방향과 문제점”,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4. 10.
 _____, “제조물책임의 입법방향과 그 적용법리(상)”, 고시연구, 1990. 6
 _____, “제조물책임의 입법방향과 그 적용법리(하)”, 고시연구, 1990. 7
 _____, “제조물책임의 접근원리— 미국법을 중심으로”, 고시연구, 1993.7.
31. 한삼인, “설명의무의 판단기준”,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5. 2, 제222호.
32. 한삼인·김상찬,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 「환경연구 논문집」, 제2권 제1호 1994. 12, 제주대학교 환경연구소.
 _____, “소비자 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사회발전연구」, 제10집 1994,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II. 外國文獻



【日本】

1. 加藤雅信 編著, 「造物責任法總覽」, 商事法務研究會, 1994.
 _____, “製造物責任法案とその問題”, 判例タイムス, (NO. 842), 1994. 6.
 15.
2. 加藤一郎·中村雅人, 「わかりやすい製造物責任法」, 有斐閣, 1995.
3. 長 二三男, 「製造物責任法の解説」, 一橋出版, 1997.
4. 小林秀之, 「製造物責任法」, 新世社, 1995.
 _____, “實現が迫られる製造物責任制度【上】【下】”, 法學せみめ No. 470, 471, 1992. 2·3.
 _____, “訴訟手續上の問題點とは”, 法學 セミナ, (NO. 478), 1994. 10,

5. 淡路剛久, 「自動車の製造物責任」, 1988.
6. 日本經濟企劃廳編, 「製造物責任制度の中心とした総合的な消費者被害防止・救済の在り方について」, 第13次國民生活審査消費者政策部會報告とその資料, 1993, pp. 22~23.
7. 安田總合研究所, 「製造物責任-國際化する企業の課題」, 有斐閣, 1989.
8. 通商産業性産業政策局消費經濟課 編, 「製造物責任法の解説」, 1994.

【歐・美諸國】

1.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 1976.
2. Patrick Kelly, Rebecca Attree, European Product Liability(London: Butterworths, 1992)
3. W. Page Keeton, David G. Owen, John E. Montgomery, Michael D. green, Case and Statuary Supplement to Products Liability and Safety(Case and Materials, 2nd), The Foundation Press, Inc. 1993.
4. W. Page Keeton, David G. Owen, John E. Montgomery, Michael D. Green, Products Liability and Safety: Case and Materials (2nd ed), 1993. Case and Statutory Supplement.
5. James A. Hendson Jr, Jaron D. Twerski, A Proposed Revision of Section 402A of the Restatement(Second) of Torts, Cornell Law Review, vol. 77, Number 6, September 1992.